

한국 사회

2024년 제25집 1호

일반논문

-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통제 저항 담론 : KTX 승무원 복직운동 사례 분석
| 이지연 · 전세훈 · 최윤재
- 한국 사회적기업 유형의 재구성에 관한 연구 : 국가·시장·시민사회를 중심으로
| 박정민 · 조대엽
- 한국 언론의 권력화와 위기에 대한 재검토
: 언론·정치 병행성의 구조적 진화와 언론 자율성의 후퇴, 1987~2022
| 박진우 · 김설아
- 장애인의 가족 내 주변화 경험에 대한 연구
| 정지연 · 김정석 · 허준기

한국사회는 고려대학교 부설 한국사회연구소가 발행하는 사회과학 분야 전문학술지로
서 연2회 발간된다. 한국사회연구소는 급변하는 현대 한국사회와 국제지역사회의 제
반 현상을 거시적·미시적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현대사회구조와 변동에 대한 설명
과 전망을 제시하기 위한 각종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1996년 8월 22일 설립되었다.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우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Tel: 02) 3290-1651 / Fax: 02) 924-4365

E-mail: lab050korea.ac.kr

Homepage: <https://socialresearch.korea.ac.kr/>

한국사회 투고: socialresearchku@gmail.com

2024년도 한국사회연구소 임원

소장

김원섭(고려대 사회학과)

부소장

송효중(고려대 사회학과)

센터장

사회트렌드 센터장: 임인숙(고려대 사회학과)

지역사회개발교육 센터장: 김수한(고려대 사회학과)

데이터분석 센터장: 김선엽(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자문위원

노익상(한국리서치)

염재호(고려대)

장하성(고려대)

(이상 가나다순)

운영위원

김수한 김진영 김철규 김형찬 마동훈 박길성 신은경 신현석

윤인진 이명진 임인숙 정일준 조대엽

(이상 가나다순)

한국 사회

2024년 제25집 1호

차례

〈일반논문〉

- | | |
|---|-----|
| ■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통제 저항 담론 : KTX 승무원 복직운동 사례 분석
 이지연 · 전세훈 · 최윤재 | 3 |
| ■ 한국 사회적기업 유형의 재구성에 관한 연구 : 국가·시장·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박정민 · 조대엽 | 47 |
| ■ 한국 언론의 권력화와 위기에 대한 재검토
: 언론·정치 병행성의 구조적 진화와 언론 자율성의 후퇴, 1987~2022
 박진우 · 김설아 | 77 |
| ■ 장애인의 가족 내 주변화 경험에 대한 연구
 정지연 · 김정석 · 허준기 | 109 |

- | | |
|----------------|-----|
| ■ 한국사회 연구윤리규정 | 151 |
| ■ 원고제출 및 작성 요강 | 157 |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통제 저항 담론 : KTX 승무원 복직운동 사례 분석

이 지 연* · 전 세 훈** · 최 윤 재***

요 약

이 연구는 담론분석을 통해 신자유주의 노동정책과 노동통제에 저항하는 노동운동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KTX 해고 승무원들의 복직운동을 사례로 관련 성명서를 수집하고 담론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키워드를 조사했다. 구체적으로 복직운동 과정에서 담론을 구성하는 세부 주제를 노사관계의 사법화, 시장경제적 억압에 저항, 노동 분절화, 사회조합주의적 노동운동으로 분류해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해고 노동자는 기존 노동자와는 다르게 노사 간의 협의를 하기 어려운 현실이 드러났다. 둘째, 노동통제에 대한 저항방식에서 정권별 차이가 발생했다. 민주당계 정부에서는 노동시장 지위와 분절화를 강조했으며, 보수정부에서는 법치주의에 대한 저항을 강조했다. 셋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치사회적 이슈와 노동운동을 결합해 새로운 연대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운동을 지속했다. 연구는 비정규직·해고자를 분석해 이들의 저항방식이 기존의 정규직 노동자들과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제어: KTX 승무원, 신자유주의, 노동운동, 토픽모델링, 담론분석

* 제1저자,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 jgolee7@gmail.com

** 공동저자,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 vision7025@naver.com

*** 교신저자,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cyj135@naver.com

I. 서론

모든 시민들이 속았던 것이다. KTX승무원이나, 항공사냐를 고민하던 승무원들은 항공사 면접을 포기하고 철도청 교수들과 모든 철도청 관계자들이 하는 말을 모두 믿었다...(중략)... 항공사면접 1차에 합격하고 2차 면접을 앞둔 승무원들도 포기했었다.¹⁾

KTX 해고승무원들의 위장도급 문제와 이들의 복직운동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직시하는 사건이었다. 철도청은 2004년 3월, KTX 개통과 함께 열차 승무원을 사내 하도급 방식으로 신규 채용했다. 쟁점은 실질적 사용자를 원청회사로 위장도급 방식으로 채용한 것이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정규직 전환 등의 조건을 믿고 입사했지만 초창기와 계약조건은 달랐고, KTX 해고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가 하청업체라는 이유로 정규직 채용은 무산됐다. KTX 해고 승무원들의 파업, 진정제기, 법적 소송으로 이루어진 투쟁은 13여 년간 지속됐다. 기나긴 투쟁 끝에 2019년 12월 31일, 마침내 해고 승무원 138명은 한국철도공사에 복직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복직운동 기간 동안 노동자로 여겨지지 않았다. 기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해고자를 노동자로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있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²⁾ 연구는 이들의 투쟁방식을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자들은 KTX 해고 승무원 문제를 신자유주의적 노동통제 레짐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승무원들의 억압 극복·대처 방식을 보여주고자 한다.

1) 일다. 2007.04.02. “KTX승무원, 희망의 끈 놓지 않는다”. <https://www.ildaro.com/3720> 검색일: 2023년 6월 30일

2) 노동조합은 노동 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 쟁의행위에서 헌법상 권한을 부여받는 주체이다. 노동자 개인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에 적합한 주체가 될 수가 없고, 개별 노동자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노조법상의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종속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해고자는 노조법상의 근로자에서 배제된다(김형배, 2018: 908-909; 917). KTX 여성 승무원을 역시도 해고자 신분으로서 노조법상 배제된 노동자들이었다.

신자유주의에서 자유화는 노사관계 영역에서 사용자의 재량권 확대와 고용 관계의 자유화(Baccaro and Howell, 2011), 불안정노동의 증가(Kalleberg, 2011) 등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 레짐에서는 노동운동의 파편화가 더 극대화 되고, 국가 억압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노중기, 2007; 조순경, 2007). 그러나 이 연구의 대상인 KTX 승무원의 복직운동은 노동시장 구조에서 취약한 비정형노동자들이 파편화되지 않은 채 끝까지 저항을 이어갔다. 특히 장기적으로 이어진 KTX 해고 승무원들의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 개혁이 시작된 시점에서 비정형 노동자들의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자본과 국가의 억압을 대처하는 노동운동을 분석한 연구들은 노동운동 과정, 노동조합의 설립 등을 세밀하게 관찰해 노동운동의 전략과 특징 등을 드러내는 데 기여했다(조순경, 2007). 그럼에도 거시적 구조와 미시적 구조와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적합한 방식은 담론을 분석하는 것이다. 담론은 사회 지배구조와 사회갈등 간의 구조를 드러낼 수 있어 노동통제에 대한 거시적 구조와 갈등 양상을 드러내는 데 적합한 방식이다(Fairclough, 2013).

연구는 비정규직·해고자 중심의 노동자 연대운동인 KTX 해고 승무원의 해고 사태 사례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존 민주노조운동이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제조업 중심 노조에 비해 조직력이 약한 노동자들이 어떻게 신자유주의에 대항했는지 살피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신자유주의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 연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이다(윤애림, 2016). 이 사례의 저항담론 분석은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구조가 어떻게 비정규직 및 해고자를 억압하는지 분석할 뿐 아니라, 여기에 노동자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설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연구는 KTX 해고 승무원의 복직 운동 저항 담론을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과 담론네트워크(Discourse Network Analysis) 모델을 통해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등장 이후, 국가의 노동통제에 대해

KTX 해고 노동자들이 어떻게 대항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 연구는 ‘신자유주의적 노동통제’라는 거시 담론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떤 담론을 통해 저항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II. KTX 해고 승무원 복직운동 전개 과정

한국철도공사는 2004년 4월 1일 KTX를 개통하면서 351명의 KTX 승무원을 신규 채용했다. KTX 승무원은 철도청의 자회사인 흥익회(이후, 철도유통으로 사명 변경)와 계약을 하는 ‘위장도급’ 방식으로 채용되었다. 신규 채용된 KTX 승무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당시 사회초년생이었던 이들은 흥익회의 주요 임원이 철도공사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믿고 채용에 응했다. 철도청은 채용 당시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될 경우 승무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박미경, 2018).

2004년 12월 흥익회는 철도유통에 유통 업무를 위탁했고 승무원들도 철도유통에 1년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었다. 즉 철도청은 채용 당시 승무원들에게 제시했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KTX 승무원들은 철도청에 채용일이 1년이 지난 이후 직접 고용을 요구했지만 철도공사는 2005년 11월 승무원에게 KTX 관광레저 소속으로 이적을 통보했다. 승무원들은 선별 재계약, 해고 통보에 반발했다. KTX 승무원들은 이를 거부하고 “철도노조 강령”에 따라 2006년 2월 사복근무 투쟁을 시작으로 파업농성 투쟁을 시작했다. 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 점거농성, 국회 헌정기념과 점거농성(2006년 4월) 등을 벌였고 철도공사는 KTX 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은 280명의 승무원에게 사실상의 해고인 ‘승무정지’를 명령했다. 결국 KTX 승무원들은 2006년 9월 식발·단식농성을 시작으로 쇠사슬 농성, 천막농성 등을 벌였다.

KTX 승무원들은 기존 철도유통 노조가 사측에게 호의적인 노동조합이라고 판단해 2005년 10월 민주노총으로 상급 노조를 변경했다. 민주노총 산하

철도노조는 초창기 비정규직의 해고 승무원들을 조합원으로 수용했고, ‘여성승무원들의 정규직화’를 5대 요구안 중 하나로 꼽았다. 하지만 사측은 전략을 변경해 KTX 승무원 문제를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결정적인 문제로 논했다. 이에 대해 해고 승무원 중 하나인 윤선옥은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KTX 승무원 문제가 거론됐고, 정규직 노동조합원의 암묵적 묵시와 적대시적 행위가 공공연하게 일어났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 합의는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철도공사와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자, KTX 해고 승무원들의 투쟁은 대(對)정권 투쟁으로 성격이 변화했다. 투쟁의 방식으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여권 서울시장 후보였던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 앞 농성, 국가인권위원회 앞 농성, 한명숙 국무총리 면담 요구 국회 농성 등을 했다. 이러한 농성의 결과는 주요 핵심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지도부 고소·고발 등으로 이어졌다.

KTX 해고 승무원의 운동방식은 2008년 서울역 철탑 고공농성을 기점으로 제도권 안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2008년 11월, 해고 승무원들은 철도공사를 대상으로 “근로자 지위 보전과 임금지급”에 관한 1차와 2차에 걸쳐 소송을 제기했다. KTX 승무원들의 소송취지는 철도공사 자회사의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 철도공사의 업무지시를 받기 때문에 철도공사와 해고 승무원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었다. 해고 승무원들이 제기한 소송인 2010년 8월 26일 1심 판결(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은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철도공사에서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급여와 승무원들을 채용할 때까지의 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³⁾. 2차 소송에서도 1심법원은 철도공사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판단해 KTX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1심판결에 불복한 철도공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1차 소송 2심은 철도공사와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8.26. 선고 2008가합118219 판결

코레일유통(전 철도유통) 간에 위탁협약을 맺어 KTX 승무원들이 승객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코레일유통은 사업경영의 독립성이 없는 노무대행 기관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1년 8월에 열린 2차 소송의 2심 판결은 1심 판단과는 달리, 철도공사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면서 패소 판결을 했다.⁴⁾ 결국 1차와 2차 모두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이승길·김준근, 20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018).

2015년 11월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에 대해 “근로자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패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에서 “철도공사와 승무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기존 판결에 대한 파기환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KTX 여성 승무원들에게 지급됐던 임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⁵⁾ 당시 KTX 승무원들은 1심과 2심 소송의 승소 판결로 인해서 4년간 철도공사에 고용된 것으로 보고, 임금과 소송비용을 지급받았다. 대법원 판결로 KTX 해고 승무원들은 그동안 지급받은 임금과 소송 비용을 포함해 평균 1인당 8640만원 가량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⁶⁾

대법원 판결 이후, 서울대책위와 부산대책위가 출범했고 재판부는 KTX 환수금 반환에 대한 조정권고를 받아들였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종교계, 사회단체 등과 2017년 5월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발족해 투쟁을 이어 나가며 환수금 문제는 일정 부분 해결됐다. 그리고 이때부터 다른 사회운동과의 연대가 공고해지며 이들의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민주당계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직후에도 복직문제는 한동안 해결되지 못했다. 대책위는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에게 KTX 해고 승무원의 복직과

4) 서울고등법원 2012. 10. 5. 선고 2011나78974 판결

5) 대법원 2015.2.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6) 노컷뉴스. 2015.12.01. “KTX 여성승무원 “7년소송에 남은건 8640만원 폭탄””.
<https://www.nocutnews.co.kr/news/4511749> 검색일: 2024년 1월 30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이를 계기로 대책위와 문재인 후보 간에는 철도노조와 KTX 승무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한다는 정책 협약을 맺었음에도 진척은 없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드러나며 KTX 해고 승무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상고법원에 대해 박근혜 정권의 동의를 얻기 위해 KTX 승무원 해고 판결을 포함한 여러 판결 결과를 맞바꾸려 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⁷⁾. 이를 계기로 KTX 해고 승무원의 복직 운동이 다시 힘을 얻게 되었고, 철도노조와 철도공사는 2018년 7월 21일 KTX 해고 승무원들의 복직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철도공사 자회사에 취업한 경력이 있는 승무원을 제외하고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승무원들을 경력직 특별채용을 하기로 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철도공사에 복직했으며, 2019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모든 승무원이 복직했다.⁸⁾

III. 이론적 논의

1. 신자유주의 체제에서의 노동정책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체제는 글로벌화를 기제로 확산됐으며, 기존 금융, 고용관계에서의 규제완화를 추동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금융시장 규제완화와 기업 비효율성 및 노동시장 경직성 개선을 요구했다. 외환위기 직후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정책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을 도입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법제화

7)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2018.05.25. 「조사보고서」 p.173

8) 매일노동신문. 2018.06.05. “KTX 해고승무원 “철도공사도 사법부도 믿을 수 없어” 대통령께 호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919> 검색일: 2023년 6월 30일

했다(이종선, 2002). 신자유주의 개혁이 본격화되면서 기업은 인건비를 줄이는데 박차를 가했고 노동자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는 결과를 낳았다(Lee, 2015). 이외에도 무기계약과 직무급제, 고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등은 이중노동시장을 강화하고 노동자를 노동시장과 단절, 배제하는 양상이 띄게 되었다(장귀연, 2011).

신자유주의 체제의 노동정책은 KTX 승무원 해고 사태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정부의 공공개혁은 정부조직의 슬림화, 규제완화 등을 목표로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민영화 계획 등을 수립·실행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효율성을 추구하는 신공공경영 방식을 채택하면서 민영화를 시도했다(심용보, 2010). 이들은 사업 서비스는 확대하지만 인력은 줄이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증대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승무업을 (주)한국철도유통으로 외주화했다.

철도공사의 외주화와 위장도급 사실은 여러 정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업무의 연계성이다. 조순경(2007)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업무는 철도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열차팀장 1명과 승무원 2-3명이 팀을 이룬다. 열차팀장은 승무원들에게 무전기를 통해 업무를 지시하고, 승무원들은 열차팀장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업무시스템은 철도공사의 업무와 승무원들의 업무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로 철도공사가 승무원의 채용과 교육과정에 개입했다는 점이다. 철도공사는 승무원의 업무가 안전과 관련 없는 업무라고 설명하지만 승무원이 받은 신입교육과 매뉴얼 등에서 승무원의 주요 업무가 안전을 책임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승무원 신입사원 교육에는 고속철도 안전 실무, 고속열차 제어 안전 장치 실무 등을 교육했으며, 업무 수행시에는 철도 안전 관리규정 및 철도 사상 사고처리 규정 등의 내용이 담긴 ‘고속열차 승무원 업무 자료집’에 따라야 했다. 마지막으로 승무원 대상의 업무 평가 및 관리감독이 철도공사를 통해 이뤄진다는 것이다. 열차팀장은 승무원의 상사 역할을 수행하며 실질적으로 이들을 평가하고 감독한다(정형욱, 2006). 이러한 정황을 살펴봤을 때, 철도공사는 철도공사 소속 근로자와 철도유통 소속 승무원의 업무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승무원의 업무를 단순 서비스업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의 업무를 평가절하했다.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의 확산은 철도승무 업무를 핵심업무와 주변업무로 구분해 임금격차 등의 고용 차별문제를 야기했다. 직무평가는 이윤창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업무임에도 승무업을 저평가하며, 간접고용이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장귀연, 2011). 이러한 정황을 살펴봤을 때,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은 공공기관 효율성 증대라는 이름으로 KTX 승무업을 차별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신자유주의 체제에서의 노동통제 방식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의 기초는 노동통제 전략으로도 이어진다. 노동통제는 '노동의 역량을 약화시키기 위한 국가 혹은 자본의 전략'으로 정의할 수 있다(노중기, 2007: 50). 한국사회에서 노동통제를 설명하는 학술적 개념들은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국가가 공식 노조를 후원하고, 노조활동의 이익표출을 제한하는 국가 조합주의(최장집, 1997; 김순양, 2015), 개별화와 원자화를 통해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는 시장경제적 억압(송호근, 1991), 국가주의와 시장억압적 기제의 혼합형(김용철, 2011), 전략적 선택성(노중기, 2007; 2016; 2020) 등으로 설명되어 왔다.

KTX 해고 사태에 관한 정부의 노동통제 전략은 시장경제적 억압전략과 노사관계의 사법화다. 시장경제적 억압전략은 불리한 노동시간 조건이 노동을 규율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송호근, 1991; Anner, 2015). 노동자들은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높은 실업률과 낮은 임금 등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다른 인력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노동자들의 교섭력이 약해진다. 노사관계의 사법화는 노동측과 사측이 직접적으로 고용권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사법시스템을 통해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Bondy and Preminger, 2022). 노사관계의 사법화는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의 확산으로 기존 노동조합에 여성, 비정규직 등의 불안정 노동자를 포함되지 못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즉 중앙국가가 단체 교섭의 규범을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KTX 해고 승무원의 복직 운동 시 시민사회와 오랜 시간 동안 연대해 온 두 명의 민주당계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이 역시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었다. 민주당계 정부에서는 친노동정책을 표방하고 관련 법안을 추진했지만 ‘법치주의’라는 이름으로 노동통제 전략이 합법화된 상황에서 노사관계의 사법화는 복직 운동 기간 내내 이어졌다(이병훈, 2019). 외환위기 이후 노동운동에 대한 민사 손해소와 형사처벌로서 노동운동을 통제하고자 하는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노중기, 2007; 2016). 중요한 것은 신자유주의 체제에서의 법치주의는 선택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법과 제도는 계급 간의 힘에 의해 변동을 반영해 불안정하다. 법은 권력관계에서 편향성을 띠 수 있으며, 부당한 노동운동 억압을 정당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자원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인 KTX 해고 승무원 판결, 쌍용자동차 노동자 해고 사건 등은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법의 편향성을 보여준다(노중기, 2016).⁹⁾ 이러한 통제전략은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에도 기조가 이어지게 됐다. 특별히 국가와 사용자의 반노동공세가 강해졌다(조효래, 2018).

한편 저항세력인 노동운동은 구조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외환위기 이후에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도 점차적으로 침체됐다. 또한 증가하는 비정규직은 노동운동으로의 힘을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자격은 ‘사업장 내의 정규직’에게 제한이 되어 있었다. 신자유주의의 정책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정규직 노동자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나누어 노동자를 더욱 파편화, 계층화시켰으며, 무력화시켰다(Lee, 2015; 권혜령, 2020). 노동운동의 분절화는 주로 고용지위, 성별 등의 계층 간의 격차를 심화시킨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겪은 후 노동정책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노-노(勞-勞) 갈등이 강화

9) 쌍용자동차 측의 정리해고는 2014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합법화 됐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2다14517 판결 및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다 20875, 20882 판결). 또한 쌍용자동차는 노조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게 100억대의 손해배상을 2013년에 청구했고, 법원에서 1심(2013.11)과 2심(2019.11)은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정리해고제와 같은 노동유연화는 여성과 비정규직 등 주변부 계층에게 취약하게 나타났다(신경아, 2017).

KTX 해고 사태에서는 시장경제적 억압과 노사관계의 사법화라는 두 가지 노동통제 전략이 함께 나타난다. 철도공사 민영화는 승무원의 업무를 외주화하며 이들을 불안정 노동에 놓이게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개별화, 원자화되어 교섭력이 약화된 것은 시장경제적 억압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직운동 초기(2004~2007년)에는 철도공사를 대상으로 복직을 요구했지만 2008년 11월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과정은 노사관계를 해결하는데 사법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노사관계의 사법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신자유주의 이후 노동운동 양상

선행연구들은 제조업 중심의 노동운동이 기존 ‘전투적 노동조합’ 운동을 일정 부분 유지한다고 보고 있다(조효래, 2005; 손영우, 2012). 하지만 노동운동의 양태는 신자유주의적 노동레짐에 맞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주목할만한 점은 노동운동이 국가와 사용자의 노동통제 정책에 대항해 새로운 형태, 즉 제도권 밖의 연대를 추진한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직과 미조직 간의 노동자를 분열시켰으며, 그 결과 노조의 힘이 약해졌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고 교섭·파업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사측과 직접적으로 교섭하기 어려워 노동권에 제약이 있다(장귀연, 2011). 직접 교섭이 어려워짐에 따라 비정규직 보호에 대한 입법 사례(윤애림, 2016)와 같이 시민사회와의 연대가 이뤄지기도 한다. 윤애림(2016)은 신자유주의 체제가 확산된 이후 노동의제를 놓고서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신자유주의 개혁을 막거나, 비정규직 보호 정치를 수행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4. 사회운동에서의 담론정치

담론은 사회적 실천의 한 형태로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의 이데올로기와 권력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Fairclough, 2013). 담론은 사회적 구조이자 과정이며, 사회 정치적 실천으로 규정할 수 있다(신진옥, 2011). 또한 이러한 담론분석을 통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발화객체의 숨겨진 쟁점이나 사안들에 대한 관찰도 용이하다. 즉 담론 분석은 담론에 내재되어 있는 이데올로기나 권력구조를 밝히기 요긴하다.

사회운동론에서의 담론은 사회운동론에서 구성주의적 입장을 가진 연구들과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 구성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참여자들의 불만, 연대성, 의미, 이념 등이 사회적인 자원들과 합쳐질 때 운동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들은 사회운동에서 특정 운동 동학을 집합행동의 의미 틀, 집합적 정체성, 정치적 의식 등으로 보았다(임희섭, 1999: 128-129). 구성주의론 사회운동 연구는 주로 정치적 기회구조론에 대한 시각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정치적 기회구조는 프레임(frame)을 중심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특정한 상황을 공유하는 의미로 정치적 기회와 운동조직의 행동을 매개한다(이성철·백운순, 2002). 프레임을 중심으로 사회운동의 의미를 정립하고 사회운동 참여자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운동의 프레임은 집합행동의 기준이 되며 대중 및 시민사회와 연대할 경우 공공담론을 형성할 수 있다.

그동안 사회운동에서의 담론 연구는 미디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유용민·김성해, 2007; 허윤철·강승화·박효주·채백, 2012). 유용민과 김성해는 1993년부터 2006년까지 노동운동에 대한 담론의 변화 양상을 미디어를 통해 분석했다. 이들은 노동운동 담론이 언론사의 이념과 외부환경 등에 영향을 받아 노동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담론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허윤철과 동료들도 사회운동 담론이 정치사회적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허윤철 외, 2012).

IV.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1. 연구자료

연구는 특정 쟁점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이용해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 및 노동통제에 대한 저항 담론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KTX 승무원 해고 사태가 발생한 2006년 3월부터 공식적으로 해고 승무원들이 전원 복직하는 시점인 2019년 5월까지의 성명서 담론을 분석 및 해석했다. 또한 복직운동이 있었던 기간에 집권한 4개 정권(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으로 시기를 구분해 기간별 특성을 확인하고, 성명서 간의 상관성 여부를 확인했다. 이를 위해 한국여성민우회,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하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KTX열차승무지부,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분석의 주요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생산된 22건의 KTX 해고 승무원 관련 성명서를 수집했다.¹⁰⁾ 연구가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22개의 성명서에는 개별 단체가 단독으로 발표한 성명서부터 수십개의 단체가 공동으로 발의한 성명서가 포함되어 있다. 성명에 참여한 단체들은 총 103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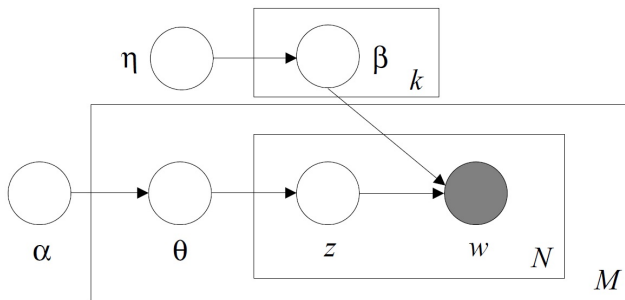
2. 연구방법

연구는 토픽모델링과 의미 의미연결망 분석을 적용해 KTX 해고 승무원들의 복직운동 과정을 분석했다. 통상 토픽모델링은 대규모의 문서 집합을 분석할 때 사용된다. 문서 집합 내에 존재하는 단어들의 출현빈도와 단어들 간의 관계에 가중치를 적용한 방법을 활용한다. 중요도가 높은 주제단어를 추출하는 토픽모델링은 발달된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법을 활용해 한번 모델 수식을 구축하면 어느 문서이건 적용 및 분석이 가능하다. 즉, 연구자가 모든

10) 성명서를 수집한 단체는 <부록 1>을 참조

문서를 개별적으로 읽으며 주제를 추출하지 않아도 준비된 토픽모델링 코드를 활용해 입력하는 만큼의 문서를 단시간 내에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방법의 핵심은 단순히 대규모의 문서 집합을 분석하는 것에만 적용하지 않는다. 토픽모델링이 내포한 수학적 방법론은 연구자 독해력, 배경 지식, 연구 관점 및 방향성들의 영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수식을 활용하는 장점을 통해 어떤 연구자가 분석을 수행하더라도 보다 향상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Blei, Ng and Jordan, 2003).

연구가 분석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한 토픽모델링은 문서에서 숨겨진 주제를 찾아주는 분석 방법이다. <그림 1>에서 나타나는 요소들은 각각 주제의 단어를 의미하는 β , 문서의 주제 알고리즘 함수의 분포를 나타내는 θ , 그리고 단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의 분포 관계를 나타내는 디리클레 분포 하이퍼 파라미터 값, 즉 모델링에서 연구자가 분석 모델링에서 직접 지정해야 하는 모든 내부의 결정 변수 값 α, η, κ 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앞선 모델링을 구성하는 M은 대상 문서, N은 문서에 속한 단어 개수, Z는 해당 단어가 속한 주제번호, W는 실제 관측 가능한 값을 의미한다(Blei, Ng and Jordan, 2003).



출처: Blei, Ng and Jordan, 2003:1006.

<그림 1> LDA모델을 통한 주제추출 개요

연구는 대표적인 토픽모델링 방법 중 한 가지인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토픽모델링을 활용해 KTX 해고 승무원 관련 성명서에 적용하고 각 성명서의 핵심 주제들을 정권별로 분류해 분석했다. 확보한 성명서의 분석 엄밀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처리 작업을 통해 특수문자 및 기호 등을 불용어로 지정해 제거했다.

토픽모델링을 위한 첫 단계로 분석 기간에 나타난 전체 성명서를 통합하고 파이썬(python)의 젠심(gensim)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형태소 분석으로 명사추출 및 출현 빈도를 확인했다. 이후 문서집합에서 최적의 주제개수를 추출하기 위해 주제빈도(perplexity score) 검토를 수행했고, 주제가 22개로 나타날 때 전체 주제의 혼잡도가 안정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혼잡도 추출의 범위를 보다 증가시킬수록 안정화되는 주제개수의 변동결과도 상이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는 주제 분석단위를 1개에서 100개까지로 측정하고 가장 최적화된 주제를 확인한 후, 중복되는 주제를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높은 가능성의 최적의 주제를 산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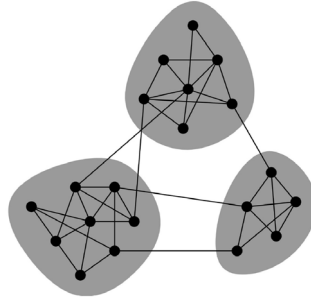
구체적으로는 LDA 모델링을 통해 주요 주제들을 추출한 후 파이썬 튜플(tuple) 기능을 활용해 각 문서에서 등장 확률이 가장 높은 주제를 정의하는 함수로 구성된 리스트를 생성했고, 이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구성했다. 생성한 데이터 프레임에 문서 담론의 생성일자를 기반으로 하는 리스트를 병합해 일자별로 가장 높은 등장 확률의 주제 목록—토픽모델링으로 추출한 주제 단어 집합—을 생성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토픽모델링을 통해 확보한 등장 단어빈도 기반 주제 명사들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각 주제 단어의 집합이 다른 주제들에 비해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등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주제빈도 검토로 추출한 주제에서, 4개 정권에서 상위 60% 비중으로 등장하는 주제 단어들의 집합을 3개씩 확보했으며 주제의 등장 빈도 우선순위를 No.1, No.2, No.3로 표시했다.

두 번째로 분석한 담론 주제들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주제 간의 관계성을 확인하는 네트워크 구조를 생성해 분석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KTX 해고 승무원들의 담론 가독성을 향상해 구조 관찰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자 했다.

의미관계망 분석은 자연과학을 비롯한 인문학과 사회과학 전반에서 활용되는 연구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에 속한 객체들의 관계성과 구조를 확인하기에 요긴한 방법이다(Newman 2004; 2006).

연구는 네트워크 구조생성을 위해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생성된 KTX 승무원 해고사태 관련 성명서들에 대한 토픽모델링 분석을 선행했다. 답론을 파악하는 과정은 문서에서 중요성을 나타내는 단어들로 구성되는 주제를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토픽모델링을 통해 추출한 단어들은 단순한 명사집합을 넘어 전체 성명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키워드의 지위를 갖고 있다. 그렇기에 토픽모델링을 통해 주제 단어들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답론을 파악한 후 주제 단어 간의 관계—주제 단어가 다른 주제 단어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해 연구 목적의 답을 찾기 위한 자원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구조 분석을 위해 유사한 속성의 집합으로 형성된 군집을 확인하는 모듈성(modularity) 분석과 구조 내에서 나타나는 핵심 노드의 위세력을 측정하는 위세중앙성(Eigenvector centrality) 분석을 수행했다. 우선 네트워크의 군집분석을 위해 대표적인 군집분석 모듈인 거반-뉴만 알고리즘(Girvan-Newman algorithm)을 활용했다. 거반-뉴만 알고리즘의 핵심은,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특정 지점 k 가 등장하는 빈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임의의 지점으로 설정한 i 와 j 를 연결하는 가장 짧은 경로의 루트 값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때 나타나는 상대적으로 연결 수가 적은 노드들을 구분하면 <그림 2>와 같은 일정한 노드 집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Girvan and Newman, 2002).



출처: Newman, 2006:8577

〈그림 2〉 Network communities

특정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집합들을 확인하는 네트워크 모듈성 측정은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엣지(Edge)의 수에 무작위로 배치된 엣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연결성이 가장 높은 엣지를 하나씩 끊어낼수록 나타나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집의 네트워크 군집을 관찰하는 방식이다 (Newman and Girvan, 2004). 해당 내용에 대한 수식은 다음과 같다.

$$Q = \frac{1}{4m} \sum_{ij} (A_{ij} - \frac{k_i k_j}{2m}) (s_i s_j + 1) = \frac{1}{4m} \sum_{ij} (A_{ij} - \frac{k_i k_j}{2m}) s_i s_j$$

(출처: Newman, 2006:5879)

거반-뉴만 알고리즘의 컴퓨팅 패키지를 활용해 저항담론의 주제들로 구성되는 정권별 담론 네트워크 구조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군집성을 확인했다. 해당 과정에는 네트워크 프로그램 게피(Gephi)를 활용했다. 이를 위해 전체 성명서에 등장하는 단어에서 형태소 분석을 통해 추출한 명사들을 자료로 토픽모델링을 수행해 주제 단어들을 추출했다. 그리고 그렇게 확보한 총 616개의 명사를 노드(node)로 취하고 정권별로 추출된 주제 단어들을 배열하는 엣지를 통해 네트워크 구조를 생성했다.

네트워크 구조에서 나타나는 노드들은 기본적으로 등장 빈도 이외에 가중치를

중심으로 그 영향력을 나타낸다. 또한 주제분석을 위해 계산한 가중치 역시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노드들의 가중치에도 적용 가능하다. 단순히 다른 노드에 연결이 많이 된 것으로만 영향력을 확인하지 않고 각 노드의 가중치에 따른 연결성을 확인하는 고유벡터 중앙성(Eigenvector centrality) 활용, 위세중앙성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의 목적은 정권별로 어떠한 주제가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이다.

분석에서 성명서가 생성된 기간 동안 나타는 주제 단어들을 위세중앙성 분석을 통해 각 정권에 맞게 분류하면 KTX 승무원 해고 사태에서 나타난 주요 주제들이 어느 정부에서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라는 주제 단어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4개 정부 모든 기간 여러 성명서에서 등장했던 주제 단어였다. 하지만 '정부'라는 단어 노드의 위세 중앙성이 타 정권보다 박근혜 정권 노드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면, '정부'라는 주제가 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생성된 성명서에서 타 정권기간보다 훨씬 높은 영향력과 중요성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는 군집분석과 더불어 위세중앙성 분석을 적용해 어느 주제가 어느 정권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위세중앙성의 핵심은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각 노드의 고유 벡터값이 높을수록 위세력이 높은 노드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원리를 활용하는 네트워크 분석방법이다. 특히 이는 노드 간에 이루어지는 정보의 전송차와 할당된 가중치에 대한 산술적 계산을 용이하게 하며, 네트워크에 나타나는 각 노드의 비대칭성이나 상수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고유벡터 중앙성을 활용한 대표적인 위세중앙성 분석은 보나치치의 연구를 통해 상당 부분 검증되었는데, 위세중앙성을 산출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sum_{k=1}^{\infty} \beta^{k-1} R^k \mathbf{1} = \sum_{k=0}^{\infty} \beta^k R^{k+1} \mathbf{1} = c(1, \beta)$$

(출처: Bonacich, 1987:1174)

보나치치의 위세 중앙성 분석 역시 앞선 거반-뉴만 모듈성 분석과 동일하게 발달한 데이터 사이언스 기법을 통해 패키지화되었고, 주어진 수식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생성 프로그램인 게피(Gephi)를 활용해 해당 패키지를 적용 후 저항 담론 네트워크의 위세중앙성 계수 값을 측정했다. 연구는 최종적으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별로 나타나는 모듈성과 위세중앙성 수치를 고려해 103개 노드와 134개 엣지로 구성되는 정권별 주제집합을 산출했다. 이는 정권별로 나타나는 위세중앙성과 모듈성 계수값의 상대적 차이를 고려하고 이를 차등화해 노드 크기와 군집 색상 및 위치로 구분했다.

V. 분석결과

1. KTX 해고 승무원 복직 운동의 담론빈도

먼저 성명서 22건에서 명사의 단순 빈도분석으로 확인한 쟁점 단어는 <표 1>과 같다. 성명서의 전체 출현 빈도로는 승무원, 철도, 코레일, 해고, 서울, 정규직, 대법원, 대법원장, 공사, 노동자 순이었다.

<표 1> KTX 해고 승무원 관련 성명서 빈도 분석(1~50위)

순위	명사	빈도	순위	명사	빈도	순위	명사	빈도
1	승무원	1042	16	김승하	123	31	중앙	61
2	철도	398	17	청와대	119	32	피해자	60
3	KTX	356	18	사법부	118	32	김명수	60
4	정리해고	298	19	자회사	115	34	사람	57
5	서울	235	20	노조	101	34	근로	57
6	정규직	231	21	회견	96	36	재판부	55
6	대법원	231	21	유통	96	37	재판	53
8	대법원장	192	23	서울역	92	38	판결	50

순위	명사	빈도	순위	명사	빈도	순위	명사	빈도
9	공사	190	24	고용	83	39	복직	48
10	노동자	186	25	기자	80	39	소송	48
11	행정처	159	26	박근혜	78	39	관광	48
12	법원	143	27	조사단	77	42	지법	47
13	근로자	140	28	계약	68	42	열차	47
14	한국	130	29	농성	63	44	직접	46
15	부장	123	30	판사	62	44	해고자	46

최빈출 단어는 ‘승무원’으로, KTX 해고 승무원의 복직운동 주체가 승무원이고 이들이 주도적으로 정권 정책에 저항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사용자인 철도와 코레일이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승무원, 철도공사(당시 철도청), 코레일이 해당 사안의 주체임을 알 수 있다.

정리하고, 정규직 등의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이 문제가 고용의 형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KTX 해고 승무원의 복직운동이 정권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의 특징인 노동시장 유연화, 무기계약과 직무급제, 고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등이 KTX 해고사태의 중요한 키워드이고, 해고 승무원 역시 이에 저항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뒤이어 대법원, 대법원장, 공사 등의 단어가 출현한다. 이는 해당 문제가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갔음을 나타낸다. 특히 11위~20위 출현 단어에서도 (법원) 행정처, 법원, 부장(판사)이 출현해 사법 영역이 주요한 문제로 설명될 수 있다.

2. 주요어 비교 분석

첫 번째 주제는 노사관계의 사법화에 대한 저항이다. 해당 주제는 노사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 단체교섭을 사내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제한하고, 노동운동을 파편화하는 상황에서 노사관계는 편향된 법에 집중되어 있다. 철도공사는 업무방해 형사사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노사관계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이에 KTX 승무원의 저항방식도 노사관계의 사법화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노사분규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건수와 액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2023). 여기에 대한 키워드는 판결, 대법원, 원고, 판사, 법원행정처 등의 사법 관련 키워드로 엮여 있다. 이는 사측과 노측 모두 해결점 모색을 위해 사법부 의존경향이 높았음을 나타낸다.

두 번째 주제는 시장경제적 억압에 대한 저항이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정부의 시장경제적 통제에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민영화’,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추구했으며, KTX 승무원의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철도 요금 인하를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KTX 해고 승무원들은 철도요금의 인하와 민영화는 명분일 뿐이며,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담론을 만들어낸다. 즉 정부의 노동정책, 노동통제 방식에 정면으로 저항하며, 이들의 논의가 틀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 주제는 분절화다. 노동문제의 신자유주의화에 따라 정규직-비정규직 관계와 성별 간 분절화 등이 나타난다.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서 분절화가 더 급속도로 진행되는 점을 통해 주요어를 ‘분절화’로 명명했다. 분절화는 노동통제 상황에서 노동운동이 더욱 파편화된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KTX 해고 승무원들의 진정제기에 따라 이 문제를 성차별적 고용으로 판단했다.

네 번째 주제는 사회조합주의적 노동운동이다. 신자유주의적 노동통제에 대해 노측은 사회조합주의적 노동운동으로 저항했다. 민영화, 인권, 민주노총, 요구, 해결 등의 키워드는 다른 집단과의 연대를 의미한다. KTX 승무원의 복직운동을 하나의 사례로 여기지 않고, 다른 사회정치적 문제와 결합해 논의를 확장하고 국제기구와의 연대도 추진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논의는 정권이 시장경제적 억압을 통해 노동시장을 분절화 했지만 노동운동은 또다른 연대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2〉 KTX 복직운동의 주요 토픽

주제	키워드
노사관계의 사법화	판결, 대법원, 원고, 판사, 법원행정처
시장기제적 억압에 저항	민영화, 요금 인하
분절화	노동자, 근로자, 정규직, 파견, 여성, 불법
사회조합주의적 노동운동	노동자, 사회, 인권, 해결, 복직

3. 정권별 비교 분석

집권 정권별 성명서 생성 기간을 전체 모수로 하고 해당 모수에 단위를 하루로 설정한 변수를 적용하면 날짜 변수 변화에 따른 주제 빈도의 증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즉, 특정 날짜에 특정 주제의 등장 빈도를 확인할 수 있어 KTX 승무원 해고 관련 성명서 담론의 등장 지형도를 확인할 수 있다.

1) 노동분절화에 대한 저항 담론: 노무현 정권(2006.03.~2008.02.)

노무현 정권 시기 KTX 승무원 해고와 관련한 성명서는 총 8건이다. 여성 민우회를 중심으로 40개의 시민 결사체가 KTX 승무원 해고사태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 기간 성명서에서 나타나는 1,833개의 단어에 등장 빈도 서열 정렬과 시계열에 따른 주제 추출을 적용했다. 또한 10회 이상 임의 추출 방식과 시계열 분석을 통해 등장 빈도 상위 60% 핵심 주제 단어 집합 3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노무현 정권 KTX 승무원 해고 관련 성명서 담론 분석

No1.	공사	고용	한국	사용자	지위	직접	요구	근로	노동	판결
No2.	공사	고용	문제	한국	정규직	해결	성차별	요구	합의	구성
No3.	노동부	공사	한국	결과	파견	업무	불법	재조사	인권	국가

노무현 정권에서 KTX 승무원 해고와 관련한 성명서의 주요 담론은 노동

본절화에 대한 저항이다. KTX 해고 승무원 역시 해고 문제를 신자유주의에 의한 결과로 보고, 이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심화시켰다. 이로 인해 같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노동자들의 소속과 고용형태에 따른 불평등 문제가 드러났고, 이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저항 운동을 펼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고용’, ‘지위’, ‘직접’, ‘정규직’이 주요한 키워드인데, ‘공공기관 효율화’를 정책 기조로 삼으며 노동의 외주화를 추진한 것이 KTX 해고 승무원의 저항방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 정책에 따라 KTX 해고 승무원 역시 해고 문제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로 보고 이를 중심으로 주요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시장경제적 압박에 대한 저항 담론: 이명박 정권(2008.9~2012.5)

이명박 정권에서 확인한 KTX 승무원 해고와 관련 성명서는 2008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나타난 4건이다. 이 기간에는 여성민우회를 중심으로 67개의 시민 결사체가 KTX 여성 승무원 해고 사태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기간 성명서에서 나타나는 1,115개의 단어에 등장 빈도 서열 정렬과 시계열에 따른 주제추출을 수행했다. 또한 10회 이상 임의추출 방식과 시계열 분석을 통해 등장 빈도 상위 핵심 주제 단어 집합 3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와 같다.

〈표 4〉 이명박 정권 KTX 승무원 해고 관련 성명서 담론 분석

No1.	공사	한국	판결	민영화	사용자	서민	주장	요금	확인	노동자
No2.	민영화	요금	서민	국민	공사	판결	인하	정부	한국	인상
No3.	공사	투쟁	새마을	노동자	판결	약속	시간	문제	신청인	운수

이명박 정권 시기는 소위 민영화가 훨씬 더 급속하게 추진됐던 시기였다. 이에 KTX 해고 승무원들은 시장경제적 압박에 저항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이 시기에는 작은 정권 큰 시장, 국민편익 증대,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이유로 공공기관의 관리 개선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를 중점에 두었다(기획재정부,

2011: 130). 이명박 정권은 2016년 개통 예정이었던 수서발 KTX를 코레일이 아닌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하게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철도 민영화를 추진했다. 정부는 철도공사에 2010년까지 영업수지 적자(2007년 대비 6,414억 원 증가)를 50% 수준 축소하고, 2012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외부 위탁·구조조정 등 추진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를 위해 공기업 인력 감축을 추진했다. 이명박 정권은 공기업 인력 과다를 이유로 15.9%로 인원을 감축할 것을 계획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이명박 정권의 효율성, 요금인하 등과 관련한 정책에 저항하며, 시장경제적 노동통제에 반기를 들고 해당 담론을 강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노사관계 사법화에 대한 저항 담론: 박근혜 정권(2013.12~2015.02.)

박근혜 정권 기간에 확인한 KTX 승무원 해고와 관련 성명서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나타난 3건이다. 해당 기간 여성민우회를 중심으로 19개의 시민 결사체가 KTX 승무원 해고 사태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 기간 성명서에서 나타나는 1,113개의 단어에 등장 빈도 서열 정렬과 시계열에 따른 주제 추출을 수행했다. 10회 이상 임의 추출방식과 시계열 분석을 통해 등장 빈도 상위 핵심 주제 단어 집합 3개를 확인했다.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박근혜 정권 KTX 승무원 해고 관련 성명서 담론 분석

No1.	판결	대법원	원고	유통	노동자	근로자	정규직	파견	여성	불법
No2.	정부	민영화	박근혜	민주	경찰	노총	폭력	파업	노조	탄압
No3.	정부	민영화	노조	박근혜	폭력	노총	민주	국민	탄압	경찰

박근혜 정권에서 KTX 승무원 해고와 관련한 성명서의 주요 담론은 노사관계 사법화에 대한 저항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보다도 노동에 강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노정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 특히나 KTX 승무원 해고 사태가 사법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공권력을 바탕으로 KTX 해고 승무원의 복직운동을 억압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는 ‘경찰’, ‘폭력’,

‘탄압’ 등의 키워드를 통해 알 수 있는데, 박근혜 정권이 KTX 승무원 복직 운동을 포함한 노동운동을 ‘폭력’으로 판단하고, 경찰력을 동원했음을 알 수 있다. 승무원들은 자신들의 노동시장 지위 개선을 위한 요구였으나, 이를 폭력 사태로 진압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문제들은 매우 중요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사법부의 판단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기 때문이다(박미경, 2018). 그러나 2015년 3심 대법원 판결에서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KTX 해고 승무원들에 대한 패소 판정이 내려졌다. 해고 승무원들의 성명서도 사법체제와 사법화에 대해 저항하는 방식으로 담론을 구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사법농단에 의한 대법원 판결에 저항하며, 이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4) 노동지위 정상화 담론: 문재인 정권(2017.06~2019.05)

문재인 정권에서 확인한 KTX 승무원 해고 관련 성명서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나타난 3건이다. 해당 기간 여성민우회를 중심으로 85개의 시민 결사체가 KTX 승무원 해고 사태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 기간 성명서에서 나타나는 1,113개의 단어에 등장 빈도 서열 정렬과 시계열에 따른 주제추출을 수행했다. 임의 추출방식을 통해 10개의 주제 단어 집합을 추출했으며, 시계열 분석을 통해 등장 빈도 상위 핵심 주제 단어 집합 3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 문재인 정권 KTX 승무원 해고 관련 성명서 담론 분석

No1.	인권	사법	사법부	독립	재판	변호사	농단	특별	문건	피해자
No2.	인권	복직	노동자	정규직	대법관	변호사	농성	고용	공사	승리
No3.	공사	문제	해결	정규직	농성	대통령	정책	노동자	관광	사회

문재인 정권에서 KTX 해고 승무원의 주요 담론은 노동지위의 정상화다.

문재인 정권은 이전 정권들과 달리 보다 적극적으로 KTX 승무원의 복직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사범농단의 피해자로, 복직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들을 제자리로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담론을 구성했다. 이는 ‘인권’, ‘피해자’, ‘해결’, ‘정규직’ 등의 키워드로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일 때부터 KTX 해고 승무원의 복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했고 철도노조와 KTX 승무원 해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했다. 이 시기에는 해고 승무원들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담론을 구성한다. 또한 이 시기에는 KTX 승무원 고용차별에 대해 UN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추진해 이를 해소하고자 했다.

5) 정권별 담론분석 비교 분석

〈표 7〉 KTX 승무원 해고 관련 주제별 담론 분석

정권성향	정권	항목	내용
보수	이명박 정권	추출한 주제 단어	공사, 한국, 판결, 민영화, 사용자, 서민, 주장, 요금, 확인, 노동자
		핵심토픽	노사관계의 사법화, 노동통제
	박근혜 정권	추출한 주제 단어	판결, 대법원, 원고, 유통, 노동자, 근로자, 정규직, 파견, 여성, 불법
		핵심토픽	노사관계의 사법화, 노동통제
진보 (민주당계)	노무현 정권	추출한 주제 단어	공사, 고용, 한국, 사용자, 지위, 직접, 요구, 근로, 노동, 성차별
		핵심 토픽	노동조합 전략
	문재인 정권	추출한 주제 단어	인권, 사법, 사법부, 독립, 재판, 변호사, 농단, 특별, 문건, 피해자
		핵심 토픽	노동조합 전략, 노사관계 사법화

분석 결과 보수 정권 시기에는 ‘공사’, ‘민영화’, ‘사용자’, ‘요금’ 등의 축소 정치 담론이 적용됐다. 축소의 정치는 주로 보수 정권이 경제위기라는 프레임을

통해 공공부문을 감축하는 정치과정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축소의 정치는 주로 보수정권의 집권, 노동운동 여부 등에 따라 변화 속도가 다르다(Iversen and Wren, 1998). 반면 민주당계 정권에서는 인권과 노동 중심으로 운동 전략이 변화한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인권’, ‘복직’, ‘정규직’ 등 신자유주의적 축소정치가 다소 감소한 형태에서 움직였다. 이점은 노무현 정권에서 노사정합의를 통해 이러한 점을 해결하고, 비교적 민영화 추진이 약했던 점을 이유로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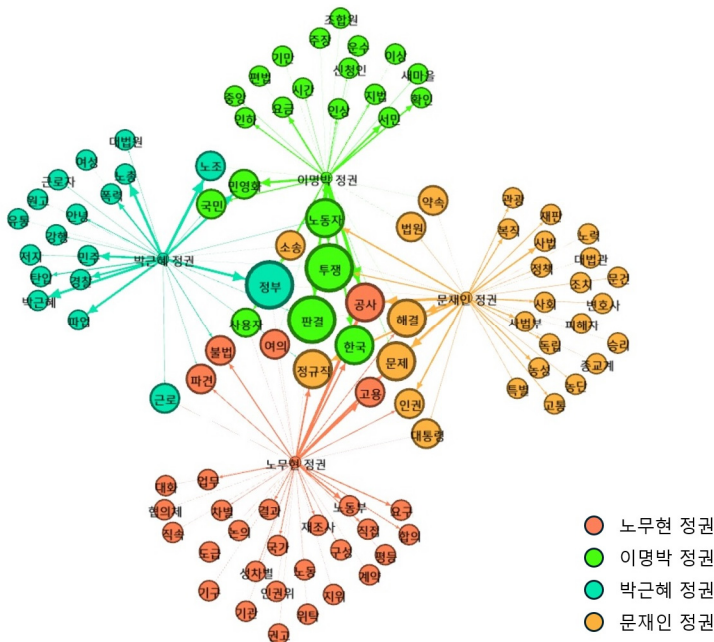
KTX 복직 운동은 보수 정권과의 협상이 되지 않은 이후에 사법부 영향이 커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일반적인 노사관계는 노사정 간의 관계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한국의 노사관계와 단체교섭은 후발자본주의 국가로서 안정화되지 못했고, 30여 년간 군부 권위주의 국가의 통제로 인해 노동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로 인해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처럼 노사 간의 힘에 의한 노사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신자유주의 국가는 노동조합의 쟁의활동을 사법부로 통제하고자 한다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노중기, 2016).

KTX 복직운동이 주로 펼쳐졌던 시기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노동운동을 통제했던 방식이 담론분석에서 잘 드러난다. 보수성향 정권인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KTX 복직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탄압했다. KTX 복직 운동의 담론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판결’, ‘지법’ 등의 법을 지칭하는 담론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박근혜 정권에 이르러서도 ‘판결’, ‘대법원’, ‘불법’, ‘원고’ 등 법원 등에 대한 법치주의적 담론 키워드가 증가했다. 2018년 박근혜 정권 시기 사법농단으로 인한 판결이었음이 밝혀진 것은 보수성향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노동통제 전략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노사관계의 사법화는 민주당계 정권에서는 비교적 약하게 나타났다. 노무현 정권 시기의 주요 담론은 ‘공사’, ‘고용’, ‘지위’, ‘정규직’ 등 노동 분절화 문제에 대한 담론이 분석됐다. 이점에서는 문재인 정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 시기에는 보수 정권에서 주도됐던 사법에 대한 담론이 축소되고,

다시 '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시장 지위 획득을 위한 담론들이 재등장했다.

13년간 정부의 노동통제 방식과 노동정책의 기조 시장경제적 억압, 노사관계의 사법화가 계속 이어졌지만, KTX 해고 승무원들의 저항방식은 정권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다. 민주당계 정부는 정권 초기 친노동정책을 표방하고 노조친화적인 정책 수립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경기 불황과 이해관계자의 개입으로 보수정권과 유사한 노동정책과 노동통제 전략을 사용했다(이병훈, 2019). 이러한 영향으로 KTX 해고 승무원들은 민주당계 정부에서는 노동권 보장을 기반으로 한 담론을 만들어 내고, 보수정권에서는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한 담론을 저항방식으로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 KTX 복직운동의 담론 네트워크 분석

〈표 8〉 의미 연결망의 위세중앙성

No.	label	Eigenvector Centrality	No.
1	정권	1	27
2	투쟁	1	28
3	판결	1	29
4	공사	0.75	30
5	노동자	0.75	31
6	한국	0.75	32
7	문제	0.75	33
8	정규직	0.75	34
9	해결	0.75	35
10	근로	0.5	36
11	노조	0.5	37
12	고용	0.5	38
13	불법	0.5	39
14	여의도	0.5	40
15	파견	0.5	41
16	국민	0.5	42
17	민영화	0.5	43
18	사용자	0.5	44
19	대통령	0.5	45
20	법원	0.5	46
21	소송	0.5	47
22	약속	0.5	48
23	인권	0.5	49
24	강행	0.25	50
25	경찰	0.25	51
26	근로자	0.25	52

마지막으로 정권별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위세중앙성과 담론의 네트워크를 확인한 결과는 <그림 3>과 <표 8>과 같이 관찰됐다. 정권별로는 노사관계보다 KTX 복직 운동에서 사법부의 담론을 의미하는 판결, 투쟁, 한국 등의 위세중앙성이 높게 나타났다. 노사관계의 사법화 영역에 속한 판결이 높은 수준이었다. 그 외 순위에서는 ‘분절화’를 의미하는 정규직, 노동자, 파견 등이 관찰됐다. 위세중앙성 수준에 따르면 복직 운동의 담론이 주로 분절화에 따른 투쟁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VI. 결론

신자유주의 체제는 노동 유연화 정책, 효율성 증대 추구 등으로 노동의 분절화, 노사관계의 사법화 등을 야기했다. 특히나 노동시장의 분절화, 즉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격차는 노-노 갈등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의 방식을 변화시켰다. 한국 사회는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체제가 공고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 변화와 제약을 고려해 노동자들의 저항을 분석해야 한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기존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비정규직 및 해고자 조직화와 노동운동 양상을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해고자 등의 저항 방식이 기존 노동운동과 무엇이 다른지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구는 KTX 해고 사태를 사례로 비정규직 해고자의 저항방식에 대한 담론분석을 시도했다.

분석 결과 KTX 승무원 해고 사태는 노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이 드러났다. 이는 정부의 시장경제적 억압과 노사관계의 사법화라는 노동 통제 방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정규직 및 해고자인 상황에서는 단체 교섭과 쟁의행위가 제한된다. 2020년 개정 이전에 종전 노조법은 해고자의 노조가입이 제한되어 있던 시기였다(노조법 2조). 이러한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노사 간의 문제가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담론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KTX 해고승무원들의 요구와 협상이 결렬되면서 사법기관 소송, 국제기구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회운동과의 연대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했다.

둘째, KTX 해고 승무원의 노동저항 담론은 민주당계 정권과 보수 정권에서 차이를 보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보수 정권과 민주당계 정권이, 차이 없이 정책을 집행했다는 연구가 주류였다(노중기, 2016; 노중기, 2020). 그러나 분석결과 노동통제와 여기에 맞서는 노동조합 전략에 정권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KTX 복직운동은 ‘민영화’, ‘폭력’, ‘사법부’ 등의 법치주의, 극대화된 노동통제에 대한 저항 담론을 보이는 반면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은 ‘정규직’, ‘노동자’, ‘파견’, ‘불법’ 등의 노동시장 지위와 분절화를 강조하는 저항 담론이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노동운동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통치가 보수 정권에서 강화됐지만, 민주당계 정권에서는 다른 담론을 통해 저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KTX 승무원 복직 사례에서는 분절화 과정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사회연합이 형성됐다. 비정규직 혹은 해고자 등 외부 노동시장에 속한 노동자들은 노동시장 분절화 상황에서 연대 혹은 연합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초창기의 KTX 해고 승무원들 역시 철도노조 소속 노동자들로부터 암묵적인 차별을 받아왔지만 시간이 지나며, 다른 정치사회적 이슈와 복직운동을 연결해 새로운 연대를 만들어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신자유주의 저항 담론을 단일 사례로 분석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운동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며,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비정규직·해고 노동자들의 노동운동 사례를 통해 이들의 저항방식을 면밀히 분석하고, 공통적인 특징을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023년 9월 11일 접수
2024년 2월 21일 수정 완료
2024년 1월 11일 게재 확정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23. 「2009~2014년 8월까지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 및 해외사례」.
- 권혜령. 2020. “신자유주의 시대 구조적 폭력의 한 양상 - 2000년대 이후 노동법제의 변화와 노동기본권의 위기를 중심으로 -.” 「사회법연구」. 41: 71-110
- 기획재정부. 2011. 「공공기관 선진화 백서」.
- 김순양. 2015. “발전국가의 이원적(二元的) 노동통제정책 분석: 1961-1987년.” 「지방정부연구」. 18(4): 23-50.
- 김용철. 2011. “박정희 정권의 노동통제전략: 형성과 진화.” 「한국경제지리 학회지」. 14(2): 192-210.
- 김형배. 2018. 「노동법」. 박영사.
- 노중기. 2007. “노동체제 전환기의 노동운동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사회운동 노동조합주의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90-121.
- 노중기. 2016. “노동운동의 법적 통제와 법치주의 국가전략: 희망의 법? 절망의 법?”. 「산업노동연구」. 22(3): 113-138.
- 노중기. 2020. “한국 사회의 종속신자유주의 노동체제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95-133.
- 매일노동신문. 2018.06.05. “KTX 해고승무원 “철도공사도 사법부도 믿을 수 없어” 대통령께 호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919>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018.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백서」.
- 박미경. 2018. “다시 빛날 우리는 KTX 승무원입니다.” 「정세와노동」. 144: 49-54
- 손영우. 2012. “왜 노동조합이 전투적이고 갈등적인 전략을 선택하는가?: 한국 노조운동의 정치적 기회구조의 한계와 이중구조의 출현.” 「사회과학

연구」 20(1): 40-74.

송호근, 1991, 한국의 노동정치와 시장, 서울: 나남..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2018.05.25. 「조사보고서」

신경아. 2017.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교차적 차별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 여성학」. 33(4): 77-118.

신진옥. 2011. “비판적 담론 분석과 비판적·해방적 학문.” 「경제와사회」. 10-45.

심용보. 2010. “철도산업에서의 신공공경영전략과 노사관계.” 「경제와사회」. 266-304.

유용민·김성해. 2007. “노동운동의 담론적 위기: 신자유주의담론과 미디어 노동담론의 역사적 접합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1(4): 226-251.

윤선옥. 2006. “KTX승무원, 희망을 부른다.” 「뉴 래디컬 리뷰」 28: 162

윤애림. 2016. “2000년대 비정규직 연대운동과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 전국 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의 권리입법 투쟁을 중심으로.” 「한국산업노동 학회」. 22(1):187-230

이병훈. 2019.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26(4): 101-130.

이성철·백운순. 2002. “한국시민사회운동의 정치기회구조에 관한 비교연구: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과 노사모 운동을 중심으로.” 「지역발전 연구」. 2(2): 277-293.

이승길·김준근. 2015. “업종별 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담론 -KTX 여승무원에 관련한 업무도급의 적격성 여부 및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산업관계연구」. 25(4):27-58.

이종선. 2002. “한국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변화: 유연화의 패러독스.” 「한국사회학」. 36(3): 25-45.

임희섭. 1999.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이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일다. 2007.04.02. “KTX승무원, 희망의 끈 놓지 않는다”. <https://www.ildaro.com/3720> 검색일: 2023년 6월 30일.

- 장귀연. 2011. “비정규직과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노동운동의 전략.” 「마르크스주의 연구」, 8(4): 296-316.
- 정형욱. 2006. “노동법 적용대상의 성별 효과: 남성우선보호와 여성적용배제.” 「여성학논집」, 23(1): 109-139.
- 조순경. 2007. “여성직종의 외주화와 간접차별: KTX 승무원 간접고용을 통해 본 철도공사의 체계적 성차별.” 「한국여성학」, 23(2): 143-176.
- 조효래. 2005. “대기업 노사관계와 노동조합 정치.” 「산업노동연구」, 11(2): 229-260.
- 조효래. 2018. “19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동학.” 「산업노동연구」24(1): 29-64
- 최장집, 1997,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서울: 나남.
- 허윤철·강승화·박효주·채백. 2012. “한국 언론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담론: [동아일보] 의 보도 기사와 사설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30-153.
- Anner, M. 2015. “Labor control regimes and worker resistance in global supply chains.” *Labor History*, 56(3): 292-307.
- Baccaro, L., & Howell, C. (2011). A common neoliberal trajectory: The transformation of industrial relations in advanced capitalism. *Politics & Society*, 39(4), 521-563.
- Blei, D. M., Ng, A. Y., & Jordan, M. I.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Jan): 993-1022.
- Bonacich, P. 1987. “Power and centrality: A family of measur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5): 1170-1182.
- Bondy, A. S., & Preminger, J. 2022. “Collective labor relations and juridification: A marriage proposal”. *Economic and Industrial Democracy*, 43(3), 1260-1280. <https://doi.org/10.1177/0143831X20983593>.

- Fairclough, N. 2013. *Language and power*. Routledge.
- Girvan, M., & Newman, M. E. 2002. "Community structure in social and biological network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99(12): 7821-7826.
- Iversen, T., & Wren, A. 1998. "Equality, employment, and budgetary restraint: the trilemma of the service economy." *World politics* 50(4): 507-546.
- Kalleberg, A. L. 2011. *Good jobs, bad jobs: The rise of polarized and precarious employment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1970s-2000s*. Russell Sage Foundation.
- Lee, Y. 2015. "Labor after neoliberalism: The birth of the insecure class in South Korea." *Globalizations*, 12(2): 184-202.
- Newman, M. E. 2004. "Fast algorithm for detecting community structure in networks." *Physical review E*, 69(6): 066133.
- Newman, M. E. 2006. "Modularity and community structure in network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3(23): 8577-8582.
- Newman, M. E., & Girvan, M. 2004. "Finding and evaluating community structure in networks." *Physical review E*, 69(2): 026113.

〈부록〉 KTX 성명서 추출 단체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여성사업팀, 노동자연대다함께 여성위원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반성매매 인권행동 이룸, 사회진보연대, 생생여성 노동행동, 성노동자권리모임지지, 언니네트워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여성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노총,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4.9 통일평화재단, KTX 열차승무지부,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KTX 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고난함께,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국제민주연대, 기독여민회, 노동자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더불어삶,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부산여성단체연합,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영등포산업선교회,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열차승무지부,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조계종 노동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계인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정규직 대책 한국교회연대,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번호	일자	단체	공동	제목
1	2006.03.28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대화와 교섭에 적극 나서라!
2	2006.05.19	한국여성민우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에 대한 부당해고 통보를 철회하고, 정부는 성차별적인 비정규직화 해결에 적극 나서라!
3	2006.09.29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전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서울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성매매 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KTX 불법파견을 부정 한 노동부를 규탄한다
4	2007.10.02	한국여성민우회		투쟁 당사자 합의 없는 협의체 구성 파기하고 합의문 전면 재검토하라

번호	일자	단체	공동	제목
5	2007.12.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KTX승무원의 실질 사용자 철도공사는 승무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6	2007.12.27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철도공사는 KTX 새마을호 여승무원을 직접 고용하라!
7	2008.01.24	한국여성민우회	한국 여성노동자회, 한국 성폭력상담소, 한국 여성의 전화연합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화, 절대 안된다
8	2008.09.02	화물연대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철도공사는 지금 당장 성실교섭에 나서라! - 철도공사는KTX·새마을승무원 즉각 직접고용하라!
9	2008.12.03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에 대한 해고는 무효다’라고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결정을 환영한다
10	2010.08.26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여승무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승소 관련
11	2012.05.08	한국여성민우회	건설산업연맹여성위원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공공운수노조연맹여성위원회, 공무원노조성평등위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금속노조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노총인천본부여성위원회, 민주노총제주본부, 보건의료노조여성위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 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사무금융연맹 여성위원회, 서귀포6월	철도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

번호	일자	단체	공동	제목
			사업회, 서비스연맹여성위원회, 서울 여성노동자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여성생활문화공간,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의정부여성회,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노동자회, 전국 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 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국여성노조, 전국여성연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 여성인권지원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 여신학자협의회	
12	2013.12.22	한국여성민우회		철도민영화 반대! 민주노총·철도노조 폭력 탄압을 규탄한다!
13	2013.12.23	한국여성민우회	노동자계급 정당추진위원회 여성사업팀, 반성매매인권행동이름, 사회진보연대, 성노동자권리모임지, 언니네트워크,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생생여성노동행동(한국노총,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한국 여성단체연합, 한국 여성민우회, 한국 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연대, 전국 여성노동조합,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노동자연대 다함께 여성위원회)	민주노총과 철도노조에 대한 폭력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
14	2015.02.27	한국여성민우회	전국 여성노동조합, 한국 여성노동자회, 한국 여성민우회, 한국 여성단체연합	KTX 여승무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원고 패소 판결, 대법원을 규탄한다
15	2017.06.15	한국여성민우회	4.9통일평화재단,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름,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인권	김영혜 변호사의 대법관 임명제청 반대한다.

번호	일자	단체	공동	제목
			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울산 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인천 인권영화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 개인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 여성민우회,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16	2017.09.20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열차승무지부,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조계종 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정규직 대책 한국 교회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고난함께,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사회변혁노동자당, 노동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더불어살, 손잡고	철도공사는 KTX 해고승무원 복직교섭을 즉각 시작하라.
17	2018.01.16	KTX 열차승무지부		'다시 빛날 우리'를 꿈꾸며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18	2018.06.08	한국여성민우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 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 성인지예산 네트워크, 한국 성폭력상담소 한국 여성노동자회, 한국 여성	사법농단 관련자들에게 대한 철저한 수사과 처벌, 피해자 구제 및 재판 독립과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번호	일자	단체	공동	제목
			연구소, 한국 여성의전화, 한국 여성 장애인연합, 한국 여신학자협의회, 한국 이주여성 인권센터, 한국 한부모연합, 함께하는 주부모임	
19	2018.06.18	한국여성민우회	KTX 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노동사목위원회, 조계종노동위원회,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고난함께, 대한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정의 평화사제단, 사회변혁노동자당, 노동자연대, 전국 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 여성단체연합, 한국 여성노동자회, 민변 노동위원회)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문제인 대동령은 해고승무원을 만나 해결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20	2018.07.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KTX 해고승무원의 승리를 해고노동자 모두의 승리로 만들자.
21	2019.05.29	한국여성민우회	KTX 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노동사목위원회, 조계종노동위원회,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고난함께, 대한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정의 평화사제단, 사회변혁노동자당, 노동자연대, 전국 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 여성단체연합, 한국 여성노동자회, 민변 노동위원회)	철도공사 사장은 해고된 KTX 승무원을 즉각 복직시켜라.정부는 신속하게 KTX 승무원 관련 정책협약을 이행하라.
22	2019.05.29	한국여성민우회	KTX해고승무원문제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조계종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고난함께, 대한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정의 평화사제단, 사회변혁 노동자당 노동자연대, 전국 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 여성단체연합, 한국 여성노동자회, 민변 노동위원회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The Discourse of Labor Control Resistance
of Non-Regular Workers: The Discourse of
Labor Control Resistance of Non-Regular
Workers: Analysis of KTX crew
reinstatement movement cases

Jiyeon Lee
Korea University

Sehoon Jeon
Korea University

Yoon Jae Choi
Hallym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labor movement that resisted neoliberal labor policy and labor control through discourse analysis. We selected the reinstatement campaign of KTX fired crew members as an example to analyze related statements and analyze detailed keywords that constitute the discourse. The detailed topics that constitute discourse in the process of reinstatement were classified into judicialization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resistance to market mechanism strategy, segmented labor, and social unionist labor movement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it was difficult for non-regular workers and dismissed workers to consul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unlike existing workers. Second, unlike previous studies,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governments in the method of resistance to labor control. The Democratic government emphasized labor market status and segmentation, and the conservative government emphasized resistance to the rule of law. Third,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show that workers will be segmented by the neoliberal system and weakened in the way of labor movement and resistance, non-regular workers combine political and social issues and labor movements to

create new solidarity. The study analyzes non-regular workers and laid-off workers and shows that their resistance methods were different from those of existing regular workers.

Key Words: KTX Crew, Neoliberalism, Labor movement, Discourse Network analysis

한국 사회적기업 유형의 재구성에 관한 연구 : 국가·시장·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박 정 민* · 조 대 엽**

요 약

이 연구는 사회적기업을 구분하는 새로운 유형론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주로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등 다섯 가지로 유형으로 구분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이해하고자 할 때 현재의 유형 구분은 분석적 도구로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일자리제공형이 전체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 6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네 가지의 유형은 각각 10% 내외의 비중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의 유형 구분이 국가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목적이나 기능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우리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유형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의 모든 영역, 즉, 국가·시장·시민사회의 사회적 목적과 작동 원리를 파악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공공성의 재구성’, ‘자기조정적 시장’과 ‘사회의 자기보호’의 ‘이중운동’ 등의 관점을 활용하여 각 영역의 사회적 목적인 ‘재분배’, ‘이윤추구’, ‘연대’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각 영역에서 이러한 사회적 목적이 서로 중첩되어 작동되는 원리를 ‘고용’, ‘호혜’, ‘복지’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것들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과 관계 맺는 과정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회적기업의 유형을 제안한다. 새로운 유형론을 통해 입체적이고 관계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사회적기업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에 풍부한 이론적 도구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주제어: 국가, 시장, 시민사회, 재분배, 이윤추구, 연대, 고용, 호혜, 복지, 사회적기업, 유형

* 제1저자, 고려대학교 인문융합연구원 연구교수, parkjm524@gmail.com

**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dycho@korea.ac.kr

I. 서론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육성법)」이 시행된 지 16년이 지났다. 육성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리고 이 법 제정의 목적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유형을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은 육성법이 시행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크게 성장하였다. 육성법 시행 첫해인 2007년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55개에 불과했으나, 매년 평균 200여 개 정도씩 늘어나 2023년 12월 현재까지 3,733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다.¹⁾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 9월에 발표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2년 사이에 사회적기업의 수는 1,877개에서 3,534개로 약 1.9배 증가하였고,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한 취약계층의 수도 25,529명에서 39,966명으로 약 1.6배 증가하였다. 이렇게 사회적기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며 취약계층 고용 등 일정 부분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제공형에 편중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고용노동부, 2023). 실제로 일자리제공형은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사회적기업의 66.4%(2,349개)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밖에 다른 유형의 비중은 사회서비스제공형 7.7%(271개), 지역사회공헌형 8.7%(309개), 혼합형 5.9%(207개), 기타(창의·혁신)형 11.3%(398개)로 일자리제공형이 차지하는 비중과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자리제공형의 인증조건(3명 이상 고용, 고용인원 중 취약계층 30% 이상 등)이 다른 유형에 비해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²⁾ 실

1) 사회적기업 포털 홈페이지 - 사회적기업 조회

(<https://www.seis.or.kr/home/sub.do?menukey=7127> / 2023.12.31. 확인)

제로 기존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던 고용주가 인건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추가로 고용하여 사회적기업 인증받는 경우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경비나 미화 등 실제 고령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일반 중소기업과 큰 차이가 없으며,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해결하기 힘든 사회문제를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기업에게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육성법의 취지도 퇴색하게 만든다.

이는 현재 육성법의 제정 목적에 기반을 둔 사회적기업의 유형 구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육성법이 제도적으로 자리잡은 최근의 연구는 주로 성과관리나 정책 및 제도적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윤숙희 외, 2023: 73). 현재 사회적기업의 유형은 육성법의 제정 목적, 즉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 등 국가 영역에서 바라는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에서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은 특정 영역에서 요구하는 역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적기업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이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영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각 영역에서 사회적기업에게 어떤 역할을 요청 혹은 기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청이나 기대를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나아가 사회적기업은 해당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국가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이 관계를 맺고 있는 시장 영역과 시민사회 영역에서 사회적기업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회적기업의 유형을 재구성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해외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한국의 사회적기업 유형에 대한 기존 연구를 분석한다. 3장에서는 공공성의 관점과 이중운동의 흐름에서 국가·시장·시민사회의 사회적

2)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이 30% 이상이어야 하는 사회서비스제공형,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사회공헌형, 일자리제공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이 혼합된 혼합형,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기타(창의·혁신)형에 비해, 고용 조건만 맞추면 되는 일자리제공형이 상대적으로 인증받기 쉽다고 할 수 있다.

목적을 확인한다. 그리고 4장에서 국가·시장·시민사회의 주요 행위자와 사회적기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국가·시장·시민사회의 사회적 목적이 사회적기업과 만나는 지점을 파악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회적기업의 유형론을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고 연구의 의의와 후속 연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사회적기업의 형태와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

사회적기업은 각 국가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과 형태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사회적기업은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과 같은 조합주의적 특성이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복지 과정에서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과정을 통해 중간적이고 다원적인 특성을 보인다(엄형식, 2008; 신명호, 2009). 반면에 미국의 사회적기업은 국가와 시장의 실패로 인해 등장한 비영리단체, 비정부단체 등 제3섹터라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원보다는 시민사회의 후원 또는 자체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특성이 있다(노대명, 2007; 남승연 외, 2010). 즉, 유럽과 미국의 사회적기업은 국가·시장·시민사회 각 영역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

1. 유럽의 조합주의적 사회적기업

유럽의 사회적기업은 조합주의적 특성을 갖는다(엄형식, 2005; 김경휘·반정호, 2006; 심창학, 2007; 신명호, 2009; 남승연 외, 2010; 성연옥, 2013). 프랑스 소비협동조합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경제사상가 샤를 지드(Charles Gide, 1847-1932)는 시장 경제가 유발하게 되는 많은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를 이야기하며, 그 목적을 노동조건 개선, 주류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 다양한 위기에 대한 안전보장, 경제적 자립의 보장 등으로 설정하였다(신명호, 2009).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유럽에서 사회적기업은 협동조합(cooperative), 상호공제조합(mutual), 민간단체(association), 재단(foundation)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적인 경제조직 부문을 일컫는다. 여기서 비영리라는 의미는 아예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경제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긴 하지만 그 이익을 자본의 소유자나 투자자에게 배타적으로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재투자하거나 공익적인 목적에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엄형식, 2005). 따라서 유럽의 사회적기업에서는 협동조합 방식의 집합적인 이윤추구를 당연하게 생각한다.

유럽의 사회적기업은 국가의 공공서비스가 확대되는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신명호, 2009). 초창기 사회적기업은 시장 경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기존 제도에 대한 대립적 또는 대안적 특성이 있었지만, 20세기 국가 차원의 제도화 및 통합의 과정을 거치며 중간적(intermediary)이고 다원적(pluralistic)인 특성을 갖게 된 것이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재건 및 복지국가 건설의 과정에서 많은 민간단체가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되면서 정부 부처 및 공공정책 등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물론 유럽 내에서도 각 국가의 정치·경제·사회 시스템, 복지제도에 대한 관점, 법과 제도의 발전 정도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경로를 거치기 때문에, 유럽의 사회적기업을 한 가지 형태로 단언하기에는 어렵지만(남승연 외, 2010), 유럽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운영의 자율성, 의사결정구조, 이윤 배분의 제한 등 조직의 사회적 규범과 공익성을 강조하며, 취약계층의 노동통합, 사회서비스 전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등의 영역에서 법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적 이익을 확대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유럽에서 사회적기업은 유럽 각국의 다양한 역사적 맥락, 특히 복지국가의 위기 속에서 자조적인 조합이나 민간단체들이 사회서비스 전달에 참여하고, 시민사회

가 주도하여 일자리를 만들면서 나타난 현상들을 전체적으로 개념화한 개념이다. 유럽에서 사회적기업은 각 정부나 유럽연합의 법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복지 확대에 중점을 두고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발달하였다(유효선·김생수, 2012). 이는 유럽의 많은 사회적기업이 협동조합의 형태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유럽의 사회적기업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와 조직의 민주적 운영을 강조한다(남승연 외, 2010).

2. 미국의 비영리적 사회적기업

미국에서 사회적기업은 비영리부문(Non-profit sector)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김경휘·반정호, 2006; 노대명, 2007; 신명호, 2009; 남승연 외, 2010; 성연옥, 2013). 미국에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국가와 시장이라는 양대 축 사이에 제3섹터(the third sector)가 존재한다고 본다. 경제사회학적 관점에서 정보의 불균형을 극복하지 못한 시장의 실패, 그리고 소수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의 실패 등으로 인하여, 국가 및 시장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제3섹터는 영리를 추구하는 시장과 구별된다는 점에서 비영리부문으로 규정된다. 비영리부문은 이윤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자발적 조직들로 구성되며,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특성을 지닌다(신명호, 2009).

이러한 미국의 비영리부문은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원래는 주로 민간의 기부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활동하였으나, 1970년대 경기침체 시기에 비영리부문에 대한 민간과 정부의 지원이 감소하고, 이어서 1980년대 레이저노믹스(Reaganomics)를 실시함에 따라 자율성이 강화되는 대신, 국가의 간섭과 정부의 재정지원이 축소되면서 운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비영리부문에서 활동하던 단체들은 재정적 불확실성을 타개하기 위하여 수익창출 사업에 진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회적기업 형태의 조직들이 주목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사회적기업은 비영리부문의 활발한 기부문화와 자원

봉사라는 배경을 갖는다. 미국의 기부문화는 자선행위를 시혜가 아닌 일종의 투자로 인식하는 민간단체들에 의해 활성화되었다. 이런 전통에서 미국의 사회적기업은 민간단체나 재단으로부터 받는 기부를 일종의 투자 유치로 여긴다. 이러한 벤처 자선(Venture Philanthropy) 덕분에 미국의 사회적기업은 크게 성장할 수 있었으나(Moody, 2008; 유효선·김생수, 2012), 유럽의 사례와는 다르게, 사회적기업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제도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책적 지원을 위한 명문화된 제도가 없는 만큼, 미국의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개념적인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 초창기 미국의 사회적기업은 주로 비영리조직의 별도 영리사업 법인이었으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영리와 비영리 간 구분이 모호해졌다. 결국, 미국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영리활동을 하는 모든 일반 기업들까지 사회적기업으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의 사회적기업이 민주적 운영을 강조하는 것과는 달리, 미국의 사회적기업은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에 의한 경영에 중점을 둔다(남승연 외, 2010).

3. 사회적기업의 유형에 관한 연구

앞서 유럽과 미국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은 국가, 시장, 시민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각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혹은 요청받는지 등에 따라서 서로 유형과 형태로 발전한다. 이처럼 국가나 사회마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경험적인 분석을 통해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제연구네트워킹인 EMES에 의해 2013년 7월부터 시작되었다. Defourny and Nyssens가 주축이 되어 실시한 ICSEM(International Comparative Social Enterprise Models) Project는 국가마다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공통된 정의나 학술적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조직의 설립자, 조직 형태, 공인 및 인증 여부, 모기관, 유급 노동자 및 자원봉사자 비율 등에 관한 기업

일반정보, 생산물(서비스) 유형과 사회적 임무, 소유 및 지배구조, 재정구조 등 5개 영역 70여 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의 네 가지 유형의 사회적기업 모델을 구분하였다(Defourny & Nyssens, 2017).

첫째, 기업가적 비영리 모델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의 유형이다. 비영리단체가 그들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영리활동을 하거나 노동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둘째,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은 공동체의 이익이나 상호이익에 중점을 둔 사회적기업의 유형이다. 앞의 유형이 사회 일반적인 공익에 중점을 둔 것에 비해, 이 유형은 협동조합적 전통에 기반하여 해당 지역이나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둔다. 셋째, 사회적 비즈니스 모델은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활동을 하며, 동시에 공익 증진이나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의 유형이다. 경영대학원, 컨설팅회사, 대기업 CSR 관련 부서 등에서 주로 가지고 있는 관점에 기반한다. 조직지배구조나 재정구조는 영리기업에 해당하지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넷째, 공적 사회적기업 모델은 지역개발, 사회 서비스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등 정부의 공공사업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의 유형이다. 이 유형의 사회적기업은 점점 더 늘어나는 공공정책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하며, 정부의 통제나 규제 등 영향력을 받는다.

국내에서도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ICSEM 프로젝트의 연구방법과 설문지를 활용하여 사회적 목적을 중심으로 국내 사회적기업의 유형을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황덕순 외, 2014). 첫째,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은 노동 시장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직업적 통합이 주요 목적인 사회적기업이다. 세부적으로는 노동경험을 쌓거나 현장직업훈련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진입을 돕는 ‘경과적 일자리제공 유형’, 초기의 낮은 생산력을 보완하기 위해 보조금을 받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자립 재정을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일자리제공 유형’,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사회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에 목적을 두는 ‘직업통합 유형’, 사회문제를

가진 집단이나 중증장애인 등에게 생산 활동을 경험하게 하는 ‘사회화 유형’ 등이 있다. 둘째,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사회서비스 확대가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설정되며 늘어난 유형으로, 자활사업이나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부터 발전하여 초기에는 일자리 창출에 주목적을 두었다가 공공사회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며 나타난 사회적기업을 의미한다. 셋째, 지역재생형 사회적기업은 지역적 수준에서 독특한 사회적 필요, 활동 주제, 발전의 맥락 등을 공유하며, 지역의 현안이나 요소 자원 등을 배경으로 설립하여, 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을 의미한다. 이들은 주로 특정 공동체나 마을, 중·소도시 등을 기반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지역사회와 밀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적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대안경제형 사회적기업은 시민단체와 사회운동의 이슈들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서비스 제공 등 노동과 복지영역에서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목표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사회문제와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한 사회적기업이다. 예를 들어, 적정기술, 대안에너지개발, 로컬푸드, 친환경, 소액금융, 주거안정, 인권, 대안화폐 등을 이슈로 하는 사회적기업들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유형에 대한 국내 연구를 정리해보면, 첫째, 사회적기업의 명시적인 목적에 따라, 일자리 제공에 중점을 둔 노동통합형 또는 노동시장 통합형,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제공형 또는 사회통합형, 앞의 두 목적이 모두 포함된 혼합형 등으로 구분한 유형이다(임혁백 외, 2007; 박찬임, 2008). 이런 방식의 유형 구분은 현실에서 혼합형이나 기타형 사회적기업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둘째, 사회적기업이 포괄하고 있는 대상과 성격에 따라, 정부에 의해 보호된 시장을 형성하고 종교적이고 박애주의적 성격을 갖는 공공부조형(Public Assistance Type),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발생한 이익은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지역사회 친화형(Local Friendly Type),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개인 및 조직의

이윤창출에 주목적을 두는 시장친화형(Market Friendly Type) 등으로 구분한 유형이다(김경휘·반정호, 2006). 이는 뚜렷한 분류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다양하게 등장하고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지점이 있다. 셋째,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의 주요 요소에 따라, 유형 분류의 기준을 민주성, 경제성, 사회성으로 설정한 연구(김의영 외, 2016), 조직설립의 목적성, 조직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수혜범위, 시장성의 세 가지로 설정한 연구(이은선·석호원, 2017) 등이 있다. 이런 연구들은 사회적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을 분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지만, 사회적경제의 내부 특성을 분류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주변 영역과 다양한 형태로 상호작용하며 등장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유형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2007년 육성법에서 사회적기업의 유형을 명시하여 규정함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유형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범위적·시각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영역을 국가·시장·시민사회로 구분하고, 각 영역의 행위자들이 사회적기업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사회적 목적에 주목한다. 이러한 사회적 목적과 각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의 목적과 행위를 결합한 관계적 관점으로 한국 사회적기업의 분석에 적합한 새로운 유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Ⅲ. 국가·시장·시민사회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1.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과 공공성의 재구성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제조직이다. 여기서 '사회적 목적'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경제적 목적'인 사적 이윤추구와 대비되는 개념인 '공공성'으로 해석할 때 국가·시장·시민

사회 각 영역에서 사회적기업이 갖는 사회적 목적을 서로 비교하며 분석할 수 있다. 공공성(公共性, Publicness)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사적 이혜를 넘어 형성되는 국가 혹은 사회공유의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구성에 포괄적으로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거시적 구조변동과 사회구조의 재구성을 설명하는 데에 핵심적인 개념 도구가 될 수 있다(조대엽, 2007; 조대엽 외, 2019: 12-15).

국가는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법과 제도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공권력에 기반을 둔 강제의 영역이며 권력을 매개로 작동하는 지배와 복종의 정치적 질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그 자체가 공공성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공공성은 공공관리(Public Administration), 공공정책(Public Policy) 등으로 불리는 정부의 행정기능과 함께, 공공지출을 통한 재분배의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사회구성의 공동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공공성이다. 시장은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며, 노동과 화폐를 매개로 형성된 질서이다. 따라서 시장의 질서는 본질적으로 이윤의 추구하고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역사를 가지는 기업의 기부행위와 기업출연의 공익재단 등을 시장이 갖는 공공성의 지표로 이해하기도 한다.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영역으로 가족과 같은 친밀성의 영역, 결사체 영역, 사회운동, 공적 의사소통의 형태들로 구성된다. 시민사회는 공적 담론의 생산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영역일 뿐만 아니라 결사와 연대를 기반으로 국가 및 시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갖는 영역이다. 따라서 이 영역의 공공성은 여론, 공중, 공개성 등과 관련되어 있는 공론장(Public Sphere)이 강조된다.

1970년대 들어 서구 중심부 사회에 불어닥친 이른바 케인즈주의 복지국가의 위기는 1980년대 이후 크게 확산이 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경향으로 이어졌고,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와 같은 원형적 자본주의가 가속화됨으로써, 철저하게 이익만이 추구되는 적자생존 방식의 시장주의가 지구화되며 사회의 시장화 경향을 팽창시켰다. 지구적 수준에서 전개된 시장

화의 거대한 경향은 어느 사회든 경쟁과 해체의 경향을 보편화했을 뿐만 아니라, 근대 자본주의 사회구성의 핵심적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시장·시민사회의 질서를 재편시켰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사유화가 동반적으로 확장되었고 시민사회의 개인화 경향이 가속되었다. 이는 국가, 시민사회, 시장 영역이 재구성되는 구조적 전환기이며, 이 같은 구조적 전환을 ‘공공성의 재구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도 이러한 전지구적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전환 속에서 IMF 외환위기를 맞이하였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2. 자기조정적 시장과 사회의 자기보호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 살펴볼 두 번째 이론적 배경은 칼 폴라니(Karl Polanyi, 1886~1964)의 자기조정적 시장과 사회의 자기보호 개념이다. 폴라니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장이라는 제도는 매우 일반화되었지만, 경제적인 활동에서 시장이 부수적인 역할 이상을 차지한 적은 없었으며, 심지어 시장에 의해 통제되는 경제라는 것은 우리 시대 이전의 그 어떤 때에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폴라니, 2009: 181). 원래 인간은 물질적인 동기에 의해서만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집단의 일원으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하였다. 예컨대, 물질적 재화를 소유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자신의 사회적 지위, 사회적 권리, 사회적 자산 등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즉, 인간의 경제행위는 비경제적 목표들을 포함한 넓은 범위의 사회적 관계에 배태되어 있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경제활동은 점차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특히, 노동, 토지, 화폐가 상품화되면서 경제는 스스로 존립 근거를 갖게 되었고, 시장에서는 자체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소위 자기조정(Self-Regulation)이라는 관념이 출현하였다. 자기조정이라는 개념은 모든 생산은 시장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소득은 그렇게 생산물을 시장에서 판매함으로써 나온다는 것을 함축한다

(플라니, 2009: 238). 이렇게 만들어진 시장 경제는 노동, 토지, 화폐를 포함한 산업의 모든 요소를 포괄한다. 하지만 노동이란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과 구분할 수 없는 것이며, 토지는 그 안에 사회가 존재하는 자연환경 그 자체이다. 이것들을 시장 메커니즘에 포함한다는 것은 사회의 실체 자체를 시장의 법칙 아래 종속시킨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노동, 토지, 화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반적인 상품과 다르다. 노동이란 인간 활동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인간 활동은 인간의 생명과 함께 붙어 있는 것이며, 판매를 위해 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유에서 생산되는 것이다. 게다가 그 활동은 생명의 다른 영역과 분리할 수 없으며, 비축할 수도, 사람 자신과 분리하여 동원할 수도 없다. 그리고 토지란 단지 자연의 다른 이름일 뿐인데, 자연은 인간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의 화폐는 그저 구매력의 징표일 뿐이다. 여기서 구매력이란 은행업이나 국가 금융의 메커니즘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이들 어떤 것도 판매를 위해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플라니, 2009: 243). 자기조정적인 시장 경제 시스템 안에서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으로 거래된다면, 노동력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사람’이라는 육체적, 심리적, 도덕적 실체도 소유자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토지는 거래되면서 훼손되고 오염되어 오히려 인간의 삶을 위협하기도 한다. 플라니는 이렇게 상품이 될 수 없는 인간과 자연의 일부 혹은 그 자체, 즉 허구의 상품이 자기조정적 시장 경제 안에서 거래되며 인간의 삶과 가치가 분쇄되는 현상을 ‘사탄의 맷돌(Satanic Mills)’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런 시장의 파괴적인 속성에 직면하여 그에 대한 통제의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를 사회의 자기보호(Self-Protection of Society)라고 한다. 이는 노동시장, 토지시장, 그리고 화폐시장에 대한 개입의 방식으로 나타났으며, 시장 경제가 파괴하는 인간의 삶과 환경을 회복하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삼았다. 플라니에 의하면, 이러한 자기보호적 반작용은 자기조정적 시장의 형성과 거의 시간적인 간격 없이 나타났다(김영진, 2016).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시장체제가 작동하게 되자,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컸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강력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대표

적으로 노동과 관련한 사회의 보호 운동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흐름을 볼 수 있다. 하나는 공장법 등 사회입법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계급 운동이다. 19세기 중반 선거권 개정 운동과 더불어 시장의 불안정성에서 인간을 보호하려고 하는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노동조합이 합법화되면서 노조와 노동자 정당이 사회적 보호 운동을 이끌었다. 이렇게 19세기 사회의 역사는 자기조정시장과 사회의 자기보호라는 이중운동(Double Movement)의 결과이다. 즉, 이중운동은 시장이 전 지구에 퍼져나갔고 시장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양은 매우 크게 늘어났지만, 한 편에서는 일련의 법률과 정책의 연결망이 노동, 토지, 화폐에 관한 시장 활동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들로 통합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플라니의 이중운동적 관점은 여전히 현재에도 유용하다. 특히, 한국의 사회적기업이 등장하게 된 과정을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 생활 구석 구석까지 침투하여 인간적 삶의 가치를 파괴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에 대한 사회의 자기보호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플라니의 이중운동 관점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을 분석하고자 할 때 더욱 풍부한 이론적 자원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공한다.

3. 경제유형 분석모델과 사회적 목적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횡적으로는 국가·시장·시민사회 각 영역에서 재구성되는 공공성과 결합하고, 종적으로는 자기조정적 시장과 사회의 자기보호라는 이중운동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구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시장·시민사회 영역 안에서 공공성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 파악하고, 동시에 그 내부의 역학관계 안에서 이중운동의 흐름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거시적이고 비교사회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핵심행위자로서 사회적기업이 어떤 사회적 목적을 갖게 되는지, 국가·시장·시민사회 영역의 행위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밝히고,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유형 구분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분석적 도구로 라이트(2012)의 경제유형 분석모델을 사용한다. 라이트는 여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경제의 유형을 설명하면서, 국가 권력, 시장 권력, 시민사회 권력이 경제에 대하여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주목하였다. 첫 번째, 국가 권력이란 한 영토에 대해 규칙을 부과하고 사회관계를 규제할 수 있는 효과적 능력으로 정의된다. 이 능력은 강제의 정당한 사용에 대한 독점에 좌우될 뿐만 아니라 정보 및 통신 인프라, 규칙과 명령을 따르는 시민들의 이데올로기적 헌신, 행정 관료들의 규율 수준,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실제적 효과성에도 좌우된다. 두 번째, 경제 권력은 여러 경제 주체들이 상호작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사회활동 속에서 이를 통제하고 동원하는 경제적 자원에 기초해있다. 세 번째, 시민사회 권력은 자발적 결사체를 통한 집합행위의 능력에 좌우되며 결사체적 권력 또는 사회 권력으로 부를 수 있다. 라이트는 여러 형태의 경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가 권력, 시장 권력, 시민사회 권력을 삼각형의 각 꼭짓점에 두고 경제를 그 중앙에 위치시킴으로써 분석모델을 구성한다. 이와 같은 분석모델을 통해 경제의 자원 배분, 생산, 분배 등에 대한 통제를 어떤 권력이 주도하느냐에 따라 경제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이 점에 주목하여 사회적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영역을 국가·시장·시민사회로 구분하고, 각 영역을 대표하는 행위자들은 자신이 속한 영역의 권력을 행사하며 목적과 전략에 따라 행위하는 주체로 설정한다. 이러한 분석적 구조를 통해 국가·시장·시민사회의 주요 행위자인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이 사회적기업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회적기업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확인한다.

IV. 한국 사회적기업 유형의 재구성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은 국가·시장·시민사회에서 어떤 행위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기 때문에, 각 영역이 추구하는 목적과 사회적기업의 목적이 만나는 지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시장·시민사회의 주요 행위자인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이 사회적기업과 어떤 사회적·역사적 맥락을 맺고 있는지, 자신의 목적을 어떻게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에 투영하고 달성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작동하는 원리는 무엇인지 파악한다. 이를 통해 확인한 각 영역의 목적과 작동 원리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을 더욱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론을 구성할 수 있다.

1. 국가·시민·시민사회의 정치·경제적 배경과 주요 행위자

국가 영역의 대표적인 행위자인 정부는 한국사회의 근대화와 산업화의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을 주도하였다. 특히, 1962년부터 매 5년 간격으로 시행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기업, 자본, 노동 등 시장의 모든 요소를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 국가의 경제 주도성은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를 관통하는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 경험이 여전히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으며, 국가뿐만 아니라 시장 및 시민사회에도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윤상우, 2016).

한국사회에서 시장 영역의 대표적인 행위자는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제발전을 주도하였지만, 실제 시장 영역에서 자본주의 체계를 공고히 하며 경제를 발전시킨 행위자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다. 국가는 기업들에 대한 통제, 선별적 기업 대출, 목표 달성 기업들에 대한 보상 등의 방식을 활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민선두기업’으로 선발된 기업들은 대기업으로 성장하며 국가의 경제 정책에 부응하였다. 1980년대가 되면서 국가의 개입과 통제가 약해짐에 따라 대기업들은 상당한 자율성을 갖게 되었고, 이후 한국경제가 점차 세계시장 경제에 편입되어감에 따라 국제적 시장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들은 정부와 대등한 경제성장 파트너의 위치를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대기업은 경제 영역에서 상당한 시장 권력을 차지하며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김철규, 2003).

반면, 한국의 시민사회는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박탈당하는 악조건에 처해있었다. 국가는 한국전쟁과 남북분단을 겪으며 철저한 반(反)공산주의 및 반(反)사회주의 이데올로기로 무장하여, 시민사회 내 노동자, 농민, 학생 등 모든 사회운동을 감시하고 통제하였다. 또한, 외환유치와 수출 중심의 강력한 경제발전 계획을 추진하며, 외적으로 보았을 때 투자 심리를 해치지 않는 안정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과 값싼 노동력 유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 활동했던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철저하게 억압되었다. 이 때문에 비교적 정치적 탄압에서 자유로운 종교 기반의 시민단체나 중앙의 감시에서 벗어난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시민사회의 명맥을 지키고 있었다. 물론, 1987년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는 국가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며 팽창하였지만, 강력한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제와 대기업 중심의 성장우선주의 경제 정책 등으로 인해 시민단체의 성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조대엽, 1999).

2. IMF 외환위기와 사회적기업의 등장

한국사회의 국가·시장·시민사회라는 사회구조 전체에 충격을 주며, 결정적으로 근대적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태동하게 계기를 제공한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1997년 외환위기 사태이다. 1997년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외국 투자자들은 동아시아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도 갑자기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였고, 동시에 국가의 외환보유액도 급감하였다. 결국, 국가부도사태를 맞은 정부는 IMF에 긴급자금을 요청했고 19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그 이후 한국사회는 IMF가 요구하는 시장 시스템을 수용하며 대대적인 경제 체제 개편이 시작되었다. 기업의 구조조정, 공기업의 민영화, 자본시장의 개방, 기업의 인수합병 및 노동자 정리해고 간편화 등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이는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분야,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삶 자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IMF 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 확산에 대응(對應) 또는 대항(對抗)하는 행위로서 시장 영역에서의 공공성 확대와 사회의 자기보호가 나타났다. 우선 주목해야 할 점은 보통 신자유주의 경제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실상 국가의 개입은 후퇴가 아니라 그 형태를 변화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윤상우, 2009). 한국사회에서 정부는 IMF와 합의한 이행사항을 추진하며 공공과 민간기업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해고된 실업자와 무너진 가정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공공근로 및 사회적 일자리 정책 등 고용·복지정책을 시행하며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시장은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살아남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생태계가 재편되며, 기존의 대기업 중심 경제 체제가 더욱 공고화되었다. IMF 외환위기를 통해 세계시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대기업들은 경영투명성이 결여된 한국식 기업경영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강제적으로 갖게 되었다. 이에 한국사회가 1999년 OECD 뇌물방지협약에 참여하면서 기업의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기 시작했다(양만식, 2010).

시민사회에서는 민주화 이후 기존의 노동 및 정치적 이슈뿐만 아니라 환경, 인권, 여성, 먹거리 등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시민운동단체들이 등장하였다. 또한,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국가와 시장을 견제하는 동시에 연대와 참여를 통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그 속에서 실업극복국민운동 등 IMF 외환위기 사태로 박탈당한 노동과 무너진 가정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사회운동이 활발해졌다.

이러한 사회변화 속에서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사회적경제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이었다. 2007년 육성법이 제정되며 한국사회에서는 정부의 인증을 통과한 단체나 조직만이 배타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사회적기업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제도적 혜택을 받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야 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은 조직구성에서부터 사업운영까지 모두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맞추며 정책 지향적인 특성을 갖게 되었다. 시장의 주요 행위자인 대기업들은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기존의 사회공헌활동을 사회적기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에 참여하여 고용 창출에 이바지함으로써 국가와 대중 모두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사회운동의 형태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참여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최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동시에 공동체를 중심으로 연대하여 생존하기 위한 생산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등의 사회운동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시도되었다.

3. 국가·시장·시민사회 기반의 사회적기업 유형

국가는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법과 제도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그 자체가 공공성의 영역이다. 국가는 공공관리, 공공정책 등으로 불리는 정부의 행정 역할, 그중에서도 공공지출을 통한 재분배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자기조정적 시장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유지시킨다(조대엽, 2007; 폴라니, 2009; 조대엽 외, 2019). 시장은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따라서 시장의 질서는 본질적으로 경쟁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영역으로 친밀성의 영역이자 결사체의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참여와 연대를 통해 공동체를 구성하여 국가 및 시장 영역을 견제 또는 보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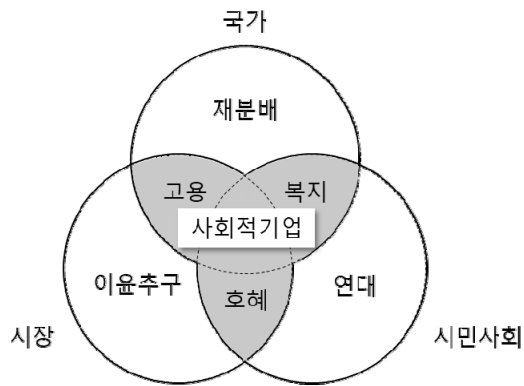
이러한 국가·시장·시민사회 각 영역의 목적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과 만나는 지점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 및 지역사회가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사회적 부를 ‘재분배’한다. 시장은 산업화 및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구조적인 자기성찰 또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 등에 따라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며 본질적으로 ‘이윤추구’를 기반으로 한다. 시민사회는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배제당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연대’를 통해 보호하고 삶을 모색한다.

국가의 ‘재분배’, 시장의 ‘이윤추구’, 시민사회의 ‘연대’는 서로 중첩되는 영역에서 결합하여 또 다른 작동 원리로 재구성된다. 국가의 ‘재분배’와 시장의 ‘이윤추구’가 중첩되는 영역에서 결합하여 작동하는 원리는 ‘고용’이다. 이는 국가적 관점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며, 시장적 관점에서는 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는 직접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기업이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장의 기업도 이윤추구를 위한 경제활동에 필요한 노동력을 유지 및 확충하기 위해 인력을 채용한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경제적 책임에 해당하기도 한다.

시장의 ‘이윤추구’와 시민사회의 ‘연대’가 중첩되는 영역에서 결합하여 작동하는 원리는 ‘호혜’이다. 폴라니(2009)는 시장이라는 제도가 사회에서 분리되기 전, 사회에 존재하던 생산과 분배의 원리 중 하나로 ‘호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현대사회의 경제조직인 기업의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동시에, 자선이나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기업시민성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호혜’의 대표적인 사례는 연대를 통해 생산과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는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단체의 영리사업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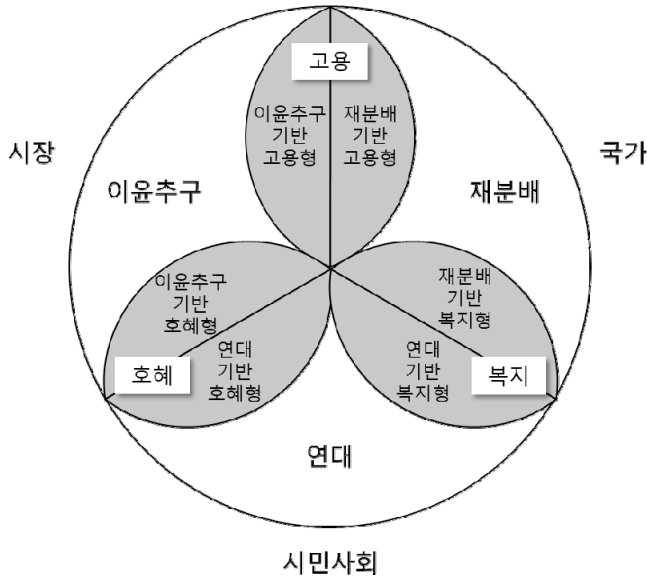
시민사회의 ‘연대’와 국가의 ‘재분배’가 중첩되는 영역에서 결합하여 작동

하는 원리는 ‘복지’이다. 국가는 ‘복지’를 통해 사회의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헌법에 명시하여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시민사회의 궁극적인 목표도 각자도생(各自圖生)이 아닌, 서로 연대하고 협력함으로써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구성원 모두가 인간답게 생활하는 ‘복지’인 것이다.



〈그림 1〉 국가·시장·시민사회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과 작동 원리

위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 ‘호혜’, ‘복지’가 서로 중첩되는 영역이 바로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존재하는 영역이며, 동시에 이것 자체가 바로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아래 〈그림 2〉와 같이, 다시 국가·시장·시민사회의 영역이라는 토대 위에 각 영역의 사회적 목적인 ‘재분배’, ‘이윤추구’, ‘연대’에 기반을 둔 입체적 분석도구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즉, 우선 고용형 사회적기업, 호혜형 사회적기업, 복지형 사회적기업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 후, 분석적 정교함을 위해 이를 다시 재분배 기반 고용형 사회적기업, 이윤추구 기반 고용형 사회적기업, 이윤추구 기반 호혜형 사회적기업, 연대 기반 호혜형 사회적기업, 연대 기반 복지형 사회적기업, 재분배 기반 복지형 사회적기업, 총 여섯 가지의 분석유형으로 구분한다.



〈그림 2〉 새로운 사회적기업의 유형 구분

1) 고용형 사회적기업의 두 가지 유형

국가는 고용정책을 통해 공공의 부를 재분배하고 시장은 노동자를 고용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이윤을 추구한다. 이렇게 국가의 재분배 목적과 시장의 이윤추구 목적이 중첩되는 영역에서 고용형 사회적기업이 활동한다. 이러한 고용형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주요 사회적 목적은 일자리 창출 및 유지이다. 고용형 사회적기업 중 사회적기업이 설립되는 과정이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고용정책이 가장 큰 기반을 제공한 사회적기업을 ‘재분배 기반 고용형 사회적기업’으로 설정한다. 반면, 사회적기업이 설립되는 과정이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이윤추구 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회공헌활동’에 기반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이윤추구 기반 고용형 사회적기업’으로 설정한다.

2) 호혜형 사회적기업의 두 가지 유형

시장은 시민사회와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할 수 있고, 시민사회는 시장과 연대함으로써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의 이윤추구 목적과 시민사회의 연대 목적이 중첩되는 영역에서 호혜형 사회적기업이 활동한다. 이러한 호혜형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주요 사회적 목적은 특정 계층 및 단체 간 상호이익이다. 호혜형 사회적기업 중 사회적기업이 설립되는 과정이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이윤추구 활동'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회공헌활동'에 기반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이윤추구 기반 호혜형 사회적기업'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설립되는 과정이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연대를 위한 사회운동에 기반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연대 기반 호혜형 사회적기업'으로 설정한다. 여기서 '이윤추구 기반 호혜형 사회적기업'은 관련 기업과 지원받는 계층 및 단체의 상호이익에 기여한다면, '연대 기반 호혜형 사회적기업'은 사회운동을 통해 연대하는 계층 및 단체의 상호이익에 기여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3) 복지형 사회적기업의 두 가지 유형

시민사회는 연대활동을 통해 취약계층 및 소외지역을 지원하며, 국가는 취약계층 및 소외지역에 대한 복지정책을 통해 공공의 부를 재분배한다. 이렇게 시민사회의 연대 목적과 국가의 재분배 목적이 중첩되는 영역에서 복지형 사회적기업이 활동한다. 이러한 복지형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주요 사회적 목적은 취약계층 및 소외지역의 안정적인 삶 또는 생계유지이다. 복지형 사회적기업 중 사회적기업이 설립되는 과정이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빈민운동, 자활운동, 협동조합운동, 대안경제운동 등 취약계층이나 소외지역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운동에 기반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연대 기반 복지형 사회적기업'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설립되는 과정이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취약계층 및 소외지역을 위한 복지정책에 기반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재분배 기반 복지형 사회적기업'으로 설정한다.

V. 결론

이 연구를 통해 현재의 육성법 제정 목적에 따른 사회적기업 유형 구분의 한계를 지적하는 동시에, 사회적기업이 활동하는 영역이자 사회적기업과 함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시장·시민사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현재 지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을 제안한다.

실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유형 구분은 다섯 개의 유형 중 특정 한 유형(일자리제공형)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사회적기업 유형 구분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현재의 사회적기업 구조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이러한 유형 구분이 육성법이 제정되던 2007년 당시 상황에서는 적절한 방법이었던더라도 이미 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훌쩍 넘은 2024년의 사회현상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베버(Max Weber)가 사회를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유형론을 제시할 때, 유형이란 복잡한 사회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순수한 분석적 구성물으로써 각 유형은 분석이 되는 사회현상이나 사회적 행위의 전체를 포괄하는 동시에 서로 배타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사회적기업 유형 구분은 전체를 포괄하지도 못하고 서로 배타적이지도 않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이 정부에 의해 정책적으로 도입되며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정부의 목적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사실 사회적기업은 대단히 복잡하고 혼종적인 성격을 지닌 조직이다(김의영 외, 2016). 유럽이나 미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국가가 제공해야 할 사회 서비스를 대신 또는 위탁받아 전달하기도 하고, 아예 국가와 무관하게 시민 사회 영역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같은 맥락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시민단체가 조직의 운영을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렇게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존재하는 국가나 사회가 어떤 정치·경제·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시장·시민사회 영역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서로 다

르게 존재한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시장·시민사회를 ‘공공성의 재구성’이라는 관점, 그리고 ‘자기조정적 시장’과 ‘사회의 자기보호’라는 이중운동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을 공공성의 개념으로 해석했을 때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이 각 영역의 공공성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에 대한 풍부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자본주의가 심화되며 만들어 내는 부작용 등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자기조정과 사회의 자기보호라는 이중운동적 관점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에 대한 구체적 분석력을 제공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라이트(Erik Olin Wright)가 「리얼 유토피아」에서 국가 권력, 시장 권력, 시민사회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고 서로 관계 맺는지에 따라 경제유형을 분석한 모델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사회적기업을 분석하고 유형을 구분한다.

사회적기업이 활동하는 영역인 국가·시장·시민사회에서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사회적 목적을 각각 ‘재분배’, ‘이윤추구’, ‘연대’로 도출하였고, 각 영역이 서로 중첩되는 영역에서 작동되는 원리를 ‘고용’, ‘호혜’, ‘복지’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작동 원리가 사회적기업을 통해 사회적 목적으로 작동하게 되며, 이러한 사회적 목적과 작동 원리를 기준으로 아래 <표 1>과 같이. 다음의 여섯 가지 사회적기업의 분석유형을 제안한다.

<표 1> 사회적기업의 여섯 가지 분석유형

대유형	분석유형
고용형	재분배 기반 고용형
	이윤추구 기반 고용형
호혜형	이윤추구 기반 호혜형
	연대 기반 호혜형
복지형	연대 기반 복지형
	재분배 기반 복지형

이는 국가·시장·시민사회 각 영역이 사회적기업과 관계 맺고 있는 사회적 목적을 기반으로 하며, 각 영역이 서로 중첩되는 영역에서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지는 과정, 즉 사회적기업이 각 영역과 관계 맺으며 구성되는 과정에 중점을 둔 유형 구분이다. 이런 유형 구분은 관계적이고 입체적인 관점에서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나아가 다른 국가나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기업의 지형을 연구할 수 있는 분석모델로써 비교사회학적인 이해와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추후 이 분석모델을 활용한 실제 사회적기업의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모델의 연구적 효용성을 증명하고, 그 과정에서 이론적 결함이나 부족한 점이 발생한다면, 이를 보완해 나가는 작업이 계속되어야 한다.

2024년 2월 8일 접수
2024년 2월 23일 수정 완료
2024년 2월 19일 게재 확정

참고문헌

- Defourny, Jacques. and Marthe Nyssens. 2017. "Fundamentals for an international typology of social enterprise models." *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28(6):2469-2497.
- Moody, Michael. 2007. "Building A Culture: The Construction and Evolution of Venture Philanthropy as A New Organizational Field."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7(2):324-352.
- 고용노동부. 2023.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 김경휘·반정호. 2006. "한국 상황에서의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소고" 「노동정책연구」 6(4): 31-54.
- 김영진. 2016. 「시장자유주의를 넘어서: 칼 폴라니의 사회경제론」. 경기: 한울 앰플러스.
- 김의영·구양미·권혁익·안도경·안상훈·이옥연·이준웅·최인철·한신갑. 2016. 「사회적경제의 혼종성과 다양성」. 서울: 푸른길.
- 김철규. 2003.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과 사회변동」.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남승연·조창현·정무권. 2010. "사회적기업의 개념화와 유형화 논쟁" 「창조와 혁신」 3(2): 129-173.
- 노대명. 2007. "한국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의 현황과 과제" 「시민사회와 NGO」 5(2): 35-73.
- 라이트(Erik Olin Wright). 2012. 「리얼 유토피아」. 권화현 옮김. 파주: 들녘.
- 박찬임. 2008.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쟁점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144: 21-33.
- 성연옥. 2013. "비교론적 관점에서 사회적기업 특성 연구: 영국, 이탈리아 및 미국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3(3): 101-140.
- 신명호. 2009. "한국의 '사회적 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동향과 전망」 75: 11-46.

- 심창학. 2007. “사회적 기업의 개념 정의 및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社會保障研究』 23(2): 61-85.
- 양만식. 2010. “기업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기업법연구』 24(1): 245-275.
- 엄형식. 2005. “유럽적 의미의 사회적기업 개념과 시사점” 『도시와 빈곤』 76: 78-117.
- _____. 2008. 『한국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서울: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 일하는 사회 정책연구원.
- 유효선·김생수. 2012.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고찰”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10(1): 23-45.
- 윤상우. 2009.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경제와 사회』 83: 40-68.
- _____. 2016.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한국 사회』 17(1): 3-38.
- 윤숙희·이상훈·박성순·안정아·오춘희·주가연·허광진·최우석·박상선·송재민.
2023. “국내 사회적경제 연구 동향 분석: 2012~2021년 KCI 등재논문을 중심으로” 『한국협동조합연구』 41(3): 57-96.
- 이은선·이현지. 2017.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발전, 제도화” 『한국사회와 행정 연구』 28(1): 109-138.
- 임혁백·김윤태·김철주·박찬웅·고형면. 2007.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한국형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모색』. 서울: 송정문화사.
- 조대엽·이명진·김수한·김원섭·김철규·김태완·김홍주·남윤철·박정민·박혜린·
심재만·이해진·진정란·천희주. 2019. 『시장과 협력: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의 탐색』. 파주: 나남.
- 조대엽. 1999. 『한국의 시민운동』. 서울: 나남출판.
- _____. 2007. 『한국의 사회운동과 NGO』. 서울: 아르케.
- 폴라니(Karl Polanyi). 2009. 『거대한 전환』. 홍기빈 옮김. 서울: 도서출판 길.
- 황덕순·박준식·장원봉·김신양. 2014. 『사회적기업의 유형별 심층사례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A study on the reconstruction of social enterprise types in Korea : focusing on state-market-civil society

Park, Jungmin
Research Professor, Korea University

Cho, Dae-Yop
Prof. Dept. of Sociology, Kore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new typology to categorize social enterprises. Currently, social enterprises are mainly categorized into five types as defined by the 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Act: social service-providing, job-providing, community contribution, mixed, and other. Over the 16 years that the law has been in effect, this type of classification has been institutionalized not only in administrative reports but also in academic research. However, when it comes to understanding social enterprises on the ground, the current typology is not a useful analytical tool. This is because the job-providing type accounts for more than 60% of all five types, while the other four types account for less than 10% in most cases. This is because the current typology is based only on the purpose or function required by the state. Therefore, a new typology is needed to better understand the social enterprises that are actually operating in our society. To do this,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e social purpose and workings of all the spheres of society in which social enterprises are engaged: the state, the market, and civil society. Using perspectives such as the 'reconstruction of publicness' and the 'dual movement' of 'self-regulating markets' and 'self-protection of society', we have identified the social purpose of each sphere: 'redistribution', 'profit-seeking', and 'solidarity'. The principles by which these social purposes overlap and operate in each area are summarized as 'employment,' 'reciprocity,' and 'welfare'. We then propose a new typology of social enterprises based on how they

relate to the social purpose of social enterprises. Although there is still work to be done to prove the usefulness of the new typology through research on actual case analyses, it is expected that it can be used to analyze social enterprises in Korean society from a three-dimensional and relational perspective.

Key Words: state, market, civil society, redistribution, profit-seeking, solidarity, employment, reciprocity, welfare, social enterprise, types

한국 언론의 권력화와 위기에 대한 재검토 : 언론·정치 병행성의 구조적 진화와 언론 자율성의 후퇴, 1987~2022*

박진우** · 김설아***

요약

이 연구는 1987년 이후의 민주화 국면에서 한국의 정치와 언론 장(field)의 내적 진화 및 재구조화 과정을 검토한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언론을 둘러싼 위기의 국면에 대하여 이를 장기적인 한국 정치와 미디어 환경 전반의 내적 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부르디외의 장 개념, 즉 구조화된 사회 공간에서 작동하는 권력과 불평등 관계의 변화에 대한 관점을 바탕으로 한국 언론의 제도적 장의 변화 및 단절의 양상들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첫째, 언론과 정치를 둘러싼 제도적 장에 대한 시민들의 총체적인 불신의 표출을 통해 해당 제도적 장이 근본적인 진화의 단계에 돌입하였음을 주장한다. 둘째, 이러한 단절의 양상은 언론·정치 병행성 및 언론의 권력화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틀로부터의 단절 역시 요구하고 있다. 셋째, 이 연구는 오늘날 언론 장의 존재 양식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전환이 가중되는 가운데 언론을 둘러싼 규범적 질서 및 장의 경계가 새롭게 구축되기 시작하였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는 ‘저널리즘 없는 민주주의’라는 포스트 저널리즘 시대의 새로운 제도적 구조의 정착을 예비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향후 언론과 정치의 재구조화된 관계에 대응할 수 있는 대중들의 보다 현실적인 행위 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주제어: 언론·정치 병행성, 미디어 권력, 언론 장, 포퓰리즘, 포스트 저널리즘

* 이 논문은 2021년도 건국대학교 KU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

** 제1저자,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jinwoo421@gmail.com

*** 교신저자, 홍익대학교 불어불문학과, soelah@hongik.ac.kr.

I. 들어가며 : 민주화 30년의 한국 언론에 대한 성찰과 극복

1987년 이후, 30년을 훌쩍 넘기는 기간에 한국에서는 한국 사회와 언론, 정치와 민주주의의 문제를 다룬 설명들이 무수히 많이 소개되고 논의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질문과 논의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또 같은 문제점을 논쟁의 중심으로 끌고 들어가려 한다. 왜인가?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 동안 암암리에 ‘해결 불가능한’ 쟁점으로 내버려 둔 몇 가지 문제들을 찬찬히 되짚어 보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이에 발맞춰 빠르게 진화하는 정치적·사회적 환경 속에서 문제 자체의 위상과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의 탄핵과 정권 교체, 글로벌 포퓰리즘의 부상, 가짜뉴스와 ‘탈진실’의 시대, 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논쟁, 팬데믹의 국면, 그리고 2022년의 정권 교체 이후, 한국 사회는 모든 변화와 진보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경험하고 있다. 이는 언론과 정치(혹은 저널리즘과 민주주의), 그리고 이를 둘러싼 주체들인 저널리스트와 시민들의 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성찰을 요구한다. 이는 우리가 이 문제를 과거와는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차원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뜻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 즉 한국 사회의 정치와 민주주의의 변화를 언론과 정치를 둘러싼 ‘장(field)’의 내적 진화 및 재구조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특히 21세기 디지털·모바일 시대, 글로벌 포퓰리즘 시대, 그리고 유례없는 정치적 양극화 시대에 대응하는 한국 언론의 ‘위기’ 국면에 대해 찬찬히 검토하면서, 정치와 미디어 관계의 내적 진화 및 변화 과정을 핵심적인 연구 대상으로 설정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큰 틀에서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주장한 ‘장(field)’의 개념, 즉 구조화된 사회 공간에서 작동하는 권력과 불평등 관계의 변화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따른다. 장이란 서로 다른 주체들의 불

평등한 힘의 관계가 배치되는 곳이자, 동시에 그 속에서 권력을 향한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경쟁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공간적인 유비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는 특정 행위자들에게 불평등하게 또는 유리하게 구조화되고 그것을 둘러싼 외부와의 경계가 구축되는 공간이라는 개념적 층위를 가진다(Bourdieu, 1998; Benson, 1999; Couldry, 2003). 다만 이 연구는 직접적으로 한국의 ‘언론 장(journalistic field)’의 내재적 구조 그 자체를 독립적인 분석 대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지난 30여 년 동안, 언론 장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내외부 주요 행위자들과의 관계맺음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거나 독점하는 행위 전략을 채택하였던 과정,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언론 장과 언론 장 외부의 영역(정치, 시장, 시민사회 등)과의 관계 배치 변화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현재 한국 언론이 정치와 시민사회 영역과 맺고 있는 변화한 내적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즉 민주화 이후 주류적인 시장 행위자로 자리 잡은 ‘제도 언론(institutional press)’(Reese, 2021)이 언론 장 내에서의 권력을 확립하기 위해 정치권력과 시장, 기술과 문화 영역에서 어떤 전략을 설정해왔고, 또한 지금은 어떤 한계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데 논의를 집중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을 통해 본 연구는 1987년 이후 한국 언론이 처해 있는 제도적 장의 작동 방식의 단절 양상을 검토한다. 우선, 본 논문은 한국 언론과 정치의 관계가 1987년 이후 근본적인 진화를 이루어 왔고, 현 한국 사회에서 이 관계는 기존의 관계와 단절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단절의 양상은 언론과 정치를 둘러싼 제도적 장에 대한 시민들의 총체적인 불신을 통해 표출된다. 두 번째로, 이러한 단절 양상에 대한 고찰을 통해 본 연구는 언론과 정치의 맞물림, 언론의 권력화라는 관점(최장집, 1994, 2010; 조항제, 2020)을 통해 접근하였던 기존 이론들과의 단절 필요성을 검토한다. 즉 기존의 논의들이 근본적으로 언론을 바라보는 규범적 논의에 집중할 경우, 그것이 언론과 정치의 현재 관계 인식에 있어 그 중요한 현실적 단절을 파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마지

막으로 언론 장 전체의 존재 방식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기존의 언론장의 존재 방식을 송두리째 뒤흔들면서 장의 경계를 새롭게 구축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검토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이 연구는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 언론의 작동을 구조화하는 오랜 이론적 전제의 해체 혹은 소멸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현재 한국 언론에 나타나는 구조적 변동의 양상이 큰 틀에서 포스트 저널리즘 시대의 가치와 현실 간의 동요라 요약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동 또는 동요는 ‘저널리즘 없는 민주주의’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그 속에서 언론과 권력의 재구조화된 관계에 필요한 현실적인 행위 전략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II. 언론과 정치의 맞물림, 그리고 위기의 상황

이 장에서는 우선 2024년의 시점에서, 1987년 이후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전환과 그 과정에서 형성되었던 언론과 정치의 맞물림의 양상이 역사적으로 변화해 왔던 경과들에 대해 간략히 검토한다. 이는 대중들이 양자 관계에 대해 보여주는 인식과 불신의 태도라는 측면에서 도출할 수 있는 그것의 사회적인 정당성 상실이라는 결과, 곧 ‘규범적 원칙의 붕괴’라는 위기 상황이라는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대상이다.

1. 언론/정치 관계의 위기 징후와 진단 : 언론의 자유의 위기?

2024년 현재 한국 언론과 정치가 보여주고 있는 위기의 징후들은 꽤 심각한 편이다. 여기에는 오랫동안 누적되었던 언론의 경제적 위기, 신뢰도 위기와 더불어 정치 영역의 내재적인 위기가 함께 결부되어 있다(한국언론정보학회, 2020; 2022).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현실은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언론 자유를 둘러싼 오랜 논란이 다시금, 하지만 새로운 형태로

되살아난 점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대하는 태도는 한마디로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억압적이라 할 수 있다. 정치권력이 다양한 방식으로 언론 활동에 대한 억압과 위협, 보도 개입과 통제를 행하던 과거의 모습이 표면적으로는 되살아나고 있다(최승영, 2023. 3. 7). 이는 21세기의 민주주의의 국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BS와 MBC, TBS와 YTN, 뉴스타파와 많은 (진보) 유튜버들이 이러한 갈등의 최전선에 서 있다.

문제가 제기되는 과정,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 모두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rule of law)’가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Przeworski & Maravall, 2008)로 대체되는 모습이다. 검찰을 필두로 경찰, 감사원, 국정원을 포함한 공권력이 언론의 자유를 직접 위협하는 현실에서, 이를 지지하는 우익 행동주의 시민사회가 동원되고, 주류 보수 언론이 이를 뒷받침하는 모습이다. 정치권력과 억압적 관료 기구, 그리고 주류 언론을 양 축으로 “‘죄 없는 이를 기소하는 권력’이자 동시에 ‘죄지은 이를 보호하는 권력’”(Gerbaudo, 2022)이 작동한다. 특히 주류 언론의 상당수가 이러한 메커니즘의 한 주체로 가담한다는 사실은 한국 언론과 민주주의의 오랜 관계를 다시금 문제시하고 있다. 그 가담의 수준은 이제, 단지 정치적 지지와 이득의 교환이라는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오랜 정치적 후견주의(clientelism)(Hallin & Mancini, 2009)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정치학자 나디아 우르비나티(Nadia Urbinati)의 지적처럼, 오늘날 민주주의의 체제 하에서도 관찰되는 정치권력의 억압성은 보통 직접적인 정치적 탄압 의혹을 자초하는 형태이기 보다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의 일자리나 복지를 위협하고 박탈하는 특징을 가진다(Urbinati, 2019). 2·3차 베를루스코니 내각 시기의 이탈리아 언론(Laudani, 2012. 9; Urbinati, 2019), 2012년 2차 아베 내각 수립 이후의 일본 언론(Kingston, 2017)이 대표적이고, 2010년대 초·중반 보수정권 하의 한국 언론에 대한 통제 역시 큰 틀에서는 이러한 맥락 안에 있다(김세은, 2017; 최영재, 2014; 조항제, 2020). 이러한 메커니즘에 참여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정치권

력이 직접 뉴스 생산 현장에 개입하거나, 사법적 대응이나 해고의 위협, 이를 통한 위축 효과 확산 및 자기 검열의 만연화를 유발한다. 규범적으로 언론에 부여되었던 감시의 기능과 언론 자유의 이념은 이를 정면으로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정치권력 및 우익 행동주의 시민사회 주도의 새로운 ‘문화전쟁(culture war)’ 국면에서 대단히 위축되고 있다.

언론 제도 내에서 주류의 위치를 차지하는 언론사들이 이 국면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대단히 모순적이다. 이는 언론과 정치에 대한 오랜 규범적 가정보다는 한참 거리가 있다. 한국언론정보학회(2022)의 저술(에 참여한 저자들)은 공통적으로 한국 언론에게 ‘언론 자유’란 자신들에게 사회적 책무가 부과될 때 이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동원되는 수사에 가까울 뿐, 실질적인 언론 자유의 위축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렇기에 이들은 주류 한국 언론에 대하여 시민적 기능의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언론 자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그에 연계된 이해관계의 원활한 확대 재생산을 위해 언론 자유라는 수단 혹은 명분이 필요한 것”이며, “그 이익을 해쳐서라도 언론 자유의 확대를 꾀하기보단 자유의 위축을 수용한 대가로 이해관계를 보장받는 길을 선택”(한국언론정보학회, 2022: 27)한다고 냉정하게 평가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성취 수준에 비추어 보건대, 언론 자유에 관한 논란이 다시금 불거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시대착오적이다. 하지만 이는 비단 특정 정치권력의 시대착오적인 속성에 의한 결과인 것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언론 산업의 경제적 위기 대응, 언론과 민주주의의 규범적 재구성, 혐오 표현과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대응과 같이 언론 환경이 해결하지 못한 오랜 과제들이 누적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박영흠·윤성인, 2023). 즉, 이 문제는 한국 사회가 민주화 이후 40년이란 기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정치권력과 언론의 관계라는 문제와 대면하지 않는 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과제이다. 그렇기에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는 여전히 필요하다.

2. 정치/언론에 대한 총체적 불신 : 상징적 지위의 추락

오늘날 정치/언론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진화한 양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현대 정치의 ‘포퓰리즘적 국면’, 이와 결부된 정치/언론에 대한 대중들의 총체적 불신은 대단히 문제적인 현상이다. 불신이라는 현상 자체는 물론 지금 시대만의 현상은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불신 현상의 저류에는 서로 다른 원인에서 유래하는 서로 다른 움직임이 분명하게 관찰되고 있다.

일단 의회 민주주의의 정치 현실에서 이른바 대중적인 ‘위임 거부’의 양상은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형식적·제도적·절차적 민주주의가 갖추어진 후기 산업사회에서 광범위하게 관찰되는 새로운 정치적 표현 방식이기도 하다(Gerbaudo, 2022). 즉 “대부분의 부유한 민주주의의 대중들 간에는 (...) 사실상 모든 오래된 위계적인 엘리트가 지도하는 기관들” 및 이들이 이끄는 정당이나 언론과 같은 제도적 권위, 정치적 권위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모습이 나타난다(Inglehart & Welzel, 2011).

언론에 대한 불신 역시 전 세계적인 공통 현상에 가깝다. 2016년부터 진행된 WJS(Worlds of Journalism Study) 조사는 ‘주류 미디어에 대한 불신’과 함께 ‘믿을 만한 정보(trustworthy information)’에 대한 합의의 결여를 세계적인 공통의 시대적 징후로 판단한다(Hanitzsch, van Dalen & Steindl, 2018; Hanitzsch, Hanusch, Ramaprasad, & De Beer, 2019). ‘믿을 만한 정보’의 유형과 구성 방식, 그리고 유통 방식에 대해 직업 언론인과 대중들의 생각과 기준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했으며,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어찌면 필연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진단이다. 그리고 언론 신뢰도 문제는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의 성숙도나 언론 자유의 정도, 가짜뉴스나 음모론 혹은 허위조작정보의 정도와 같은 맥락적 차별 요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반드시 민주주의 발전 수준이나 언론 자유의 수준이 높은 나라라고 해서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반드시 높은 것도 아니며 허위정보나 음모론의 영향력이 낮은 것도 아니다(Tsfati & Ariely, 2014). 이는 오늘날의 언론 신뢰도 문제 역시 대단히 복합적이며, 몇 가지

중요한 주제 영역에서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영역임을 시사한다(Heinecke, 2019). 특히 뉴스 그 자체의 신뢰 문제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며, 뉴스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뉴스 조직을 둘러싼 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는 개별 사회 전체가 직면한 정치, 경제, 사회 제도 전반에 걸친 신뢰의 차원과도 맞닿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적 불신을 이해하려면 새로운 정치적 메커니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우선 제도권 내의 대의제 정치 자체를 불신하는 이중적인 방식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예컨대 ‘극중주의’와 같은 반정치적 정치(anti-political politics), 그리고 ‘태극기 부대’처럼 극단적인 우익적 충동과 결부되어 정치의 실질적인 작동을 파괴하는 정치적 반정치(political anti-politics) 현상이 혼재되어 있다.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현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제도적 정당성의 원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배경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또한 그것은 보통 주류 언론의 보도에 대한 전면적인 불신을 집단 내적 동질성 확보의 중요한 자원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포퓰리즘의 국면(순간, moment)’이 도래하고 민주주의의 후퇴(democratic backsliding)가 전지구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현실과 절대 분리시킬 수 없다. 2008년 이후 세계 경제의 대침체를 겪으면서 지난 50년을 지배하였던 신자유주의적 세계관 및 신자유주의적 합의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포퓰리즘의 국면’이란 이러한 상황에서, 나아가 팬데믹이라는 글로벌 차원의 불평등이 표출되는 상황 속에서, 사회 내부의 계급 적대와 계급 연합을 정치적으로 재정렬시키는 계기가 된다(Gerbaudo, 2022). 정치와 언론을 지배하는 중요한 현실 논리가 진화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정치학자 얀베르너 뮐러(Jan-Werner Müller)가 언급한 ‘권위주의적 포퓰리즘 통치’의 주요한 작동 방식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즉, “대체로 인종주의적 색채를 띤 민족주의에 기반을 두고”(Müller, 2022) 장악한 국가라는 성격¹⁾, 이를 지령하는 열렬한 당파주의 조직²⁾, 자본에 대한 지속적인 탈규제와 이를 통한 상층

1) 이를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그 속에서 작동하는 차별과 배제의 지배 논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목해야 한다.

엘리트 계층의 부의 축적 기회 확대, 그리고 이 모두를 포괄하는 상징 투쟁이 전면화 되어 있다³⁾. 한마디로 이는 열렬한 당파적 시민사회의 행동주의 그리고 ‘가치’를 둘러싼 상징 투쟁이, 계급적 배제와 축적 확대를 목표로 새롭게 재구성된 언론/정치 관계의 구조적 압박 요인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새로운 관찰이 필요한 대목은 한국의 언론 제도가 이러한 구조적 압박 속에서 자신의 행위 전략을 재조정하는 양상일 것이다. 이는 언론에 대한 시민사회와 대중의 신뢰, 오랜 민주주의 규범에 입각한 자신의 정당성 주장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에 가까운 행위 전략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박진우, 2020; 박영흠·윤성인, 2023). 역사적으로 한국 언론이 대중들에게 신뢰받는 존재였던 적은 (거의) 없다. 이는 권위주의 체제하의 극단적인 언론 통제 및 탄압의 상황이 만들어낸 오랜 역사적 유산이다(강명구 외, 2001; 배정근 외, 2021). 하지만 이제 ‘기레기’라는 용어로 압축되는 언론에 대한 대중들의 전면적인 불신은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국면의 것이다.

1987년 이후 민주화 이행기 이후 이러한 국면은 한국 언론의 중요한 변화의 포인트이다. 이 시기에 언론은 숙명적으로 ‘스스로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권력을 감시할 만큼은 강해야 하는’ 모순적인 존재로 인식되었고, 또 자신을 그렇게 자리매김해 왔다(한국언론정보학회, 2020). 물론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 이는 민주화 이행의 과정에서 권력의 개입 약화, 정당 체제의 불안정성, 그리고 시민사회의 미성숙 등의 구조적 변수들이 결합된 일시적인 역사적 산물이었다(최장집, 1994). 하지만 이후 한국 언론은 어떤 사회적 정당성과도 무관한 ‘과잉 권력화’의 길이었다(조항제, 2020). 1990년대 이후

2) 최근에는 우익 행동주의 조직들이 특히 눈에 띈다.

3) 포퓰리즘의 국면을 구성하는 요소를 전면에 내세운 정치적 진단의 틀은 국내에서도 (그 내용에 대한 찬반 여부와는 별개로)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예컨대 다음과 같다. “그것[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은 진보와 보수 간의 극단적인 양극화와 더불어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왔다. 대통령으로의 권력 집중화는 강화됐고, 법의 지배는 위협에 놓였다.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은 위로부터 국가에 통합되면서 사회적 다원화와 정당의 발전에 부정적인 힘으로 등장했다. 한국에서도 포퓰리즘적 정치형태를 발견하게 된다”(최장집, 2020). 그리고 이는 집단적 열정 간의 충돌에서 발생한 ‘감정의 양극화’를 핵심적인 동력으로 삼는다.

과잉 권력화된 언론은 또한 시장에서도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양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류 보수 신문과 (정치권의 변화에 유별나게 취약한) 공영 방송 중심의 독과점적 시장의 형성으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정확성과 신뢰에 기반한 저널리즘 가치들은 그 과정에서 언론의 장 내에서 우선적으로 현실적인 구속력을 상실하였다.

단절의 지점은 그 과정에서 언론과 정치를 향한 대중들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대목에서 찾을 수 있다. 언론에 대한 불신과 정치에 대한 불신은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로 작동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불신의 폭과 밀도는 한층 강화되고 있다⁴⁾. 그리고 지금 ‘불신’이라는 척도는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진전의 정도, 또 그 속에서 한국 언론의 구조적 지위와 제도적 장을 평가하는 핵심적인 측정 단위로 부상하였다. 그것은 과거와 같은 ‘언론자유/언론탄압’의 시대, 정당·시민사회·공론장이 활성화되었던 역사적 국면, 그리고 디지털 시대 이후 기성 언론(소위 ‘레거시 미디어’)의 매개적·중재적 기능의 쇠퇴 국면을 겪어 온 역사적 축적의 산물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에 관해 1990년대 이후 설정하였던 이론적 모델은 이후 상당히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다.

3. 규범적 원칙의 붕괴 : ‘민주주의 없는 저널리즘’ 혹은 ‘저널리즘 없는 민주주의’

오늘날의 한국 정치와 언론의 문제를 논의하는 기존의 규범적 원칙 또한 근본적인 단절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는 언론이 원래 민주주의와는 별개의 것이고, 양자 간에 본질적인 연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대중들의 지극히 현실적인 관찰에 따른 것이다. 그런 면에서 언론에 대한 수많은 규범 이론의 역사적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인류학자 데이빗 그레이버

4) “한국 언론이 신뢰를 잃게 된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과 요인을 짚어볼 수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언론이 더 이상 권력에 맞서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됐기 때문이다. 언론이 자기네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확증편향, 정치권력을 비판하지만 자본권력을 비판하지 못하는 비참하고 고루한 현실을 독자들도 모두 알고 있다는 이야기이다”(이정환, 2022).

(D. Graber)의 지적대로 이는 민주주의와 미디어 간의 수많은 신화 혹은 고정관념이 현실을 이해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Graber, 2003). 따라서 특정 정치 체제의 고도화 과정에서 필연적인 몇 가지 민주주의적·규범적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제도로서의 임무를 언론이 할당받아 왔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는 일이 한층 중요해진다.

현대 정치와 민주주의에 있어 언론의 역할에 대한 거의 모든 규범적 논의들은 항상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과 발전 과정에서 언론이 수행하는, 혹은 ‘수행해야 하는’ 기능에 주목한다. 권력에 대한 감시,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통한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 및 여론 형성, 그리고 사회적 갈등의 중재자 역할 등이 그것이다. 언론이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의 왜곡이나 쇠퇴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다(Schudson, 2009). 이러한 논의들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라는 패러다임의 규범 속에 미디어의 기능을 내부적으로 배치하는 목적론적 형태를 취한다(조항제, 2020).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에 반드시 필요한 특정 기능을 상정하는 기능주의적 규범론 명제에, 이 역할에 가장 부합하는 행위자로 언론 제도를 상정하는 것이다.

주목할 대목은 원래 ‘언론’과 ‘민주주의’가 별개의 영역이었다는 언론학의 오랜 성찰이다(Pickard, 2014; 2019; Schudson, 2009). 이 연구들은 처음부터 양자가 반드시 서로에게 필수적인 요소이어야 할 명료한 내적 논리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단지 19세기 이래 서구의 자유주의 철학이 민주주의 체제를 설계하면서 권력과 정치 체제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라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기관으로 제도 외부에 존재하는 행위자들이 상정되었고, ‘스스로 이 역할을 맡겠다고 자처하고 나선 개인 혹은 사기업’이 때맞추어 등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외부자’의 역할은 20세기를 지나면서 차츰 민주주의의 작동 그 자체의 성패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제도로서 작동하는 현실의 언론 장에서 여전히 강력한 규범적 전제는 1940년대 이후 성립한 미국식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전통이다. 피카드(Pickard, 2014)는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규범 이론에 숨어 있는 4가지의 원칙을 지적한다. 그것은 ‘테크노 유토피아주의, 수정헌법 제1조 절대주의, 시장 근본주의,

그리고 기업적 자유 지상주의'이다. 여기서 생겨난 중요한 규범적 전제가 '미디어는 자율적으로 규제되어야 한다', '미디어는 (비록 명목상일지라도)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미디어는 언론의 소극적 자유(즉 정부의 불간섭)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19세기 말부터 미국에서는 지역 단위로 독점적이던 정당의 위세가 약화되면서, 많은 신문들이 해당 지역 내의 경쟁적 당파들 사이에서 '중립'을 선언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시장 내의 행위자로서의 당연한 합리적인 선택이다. 1차 대전 및 러시아혁명 당시의 수준 낮은 보도나 오보로 인해 추락한 독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역시 그들로서는 중요한 문제였다⁵⁾. 이후 전쟁 중에 숙련된 선전(프로파간다) 기술이 전후 민간 영역에 도입되면서 PR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자, 이와 구분되는 저널리즘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했다(Maras, 2013). 그리하여 언론사들은 통신사가 보내는 짧고 간결한 문체를 모범으로 삼아서, 팩트 위주의 중립적 보도가 독자들에게 한층 경쟁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쉽고 짧은 문체의 기사보다는 좀 더 취재원에게 목소리를 부여하는 기법들이 확산되었다⁶⁾. 언론 종사자들의 길드가 차츰 노조로 성장하자, 이들이 노동자가 아닌 '전문가'라는 이념적 공세에 필요한 이론적 자원(즉 '전문직주의(professionalism)'의 이론) 역시 필요하였다. 객관주의 저널리즘과 규범적 이론은 모두 이러한 시대적 요소들이 뒤섞인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다.

박진우(2015)는 이에 대해 미디어/민주주의의 규범적 가정은 바로 이러한 현실적인 전제를 획득하기 위한 행위 전략의 한 형태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규범적 이론은 궁극적으로 언론이 '어떠한 이상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으므로, 언론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5) 월터 리프만(Walter Lippman)의 〈여론〉(1922), 그리고 존 듀이(John Dewey)의 〈공공성과 그 문제들〉(1926)을 둘러싼 논의들은 바로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6) 이러한 취재원의 목소리를 강조하는 기법은 최초의 '인터뷰' 형식에서, 앵커쇼, 그리고 오늘날 폭스뉴스와 종편이 보급한 '패널 토크쇼'에까지 이르는 다양한 기법으로 발전하게 된다.

다하도록 항상 노력할 것을 전제한다. 하지만 언론 스스로는 그런 역할을 필요에 따라 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게 자신들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 그 자체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그러한 대의를 공유하면서 자신들의 지위를 정치적·경제적 권력과 결합된 한층 높은 지위의 권력으로 언론 장 내에서 한껏 끌어올리는 경우가 오히려 현실에서는 훨씬 빈번한 일이었다. 이러한 전략은 바로 20세기의 언론·미디어 산업이 자신의 자원과 이윤을 시장으로부터 얻는 메커니즘을 확고히 해 나갔던 과정의 산물이다. 오랫동안 뉴스의 품질이나 언론의 민주주의적 기능에 대한 끊임없는 사회적 논란이나 비판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매우 수익성 높은 산업이었던 것이다(Maras, 2013).

그 무엇도 언론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없고, 언론이 민주주의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미디어는 민주주의에 대해 조건에 따라 기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Josephi, 2013). 필연적인 관계가 아닌 것이다. 저널리즘과 민주주의라는 패러다임의 결합은 19~20세기 미국이라는 매우 특수한 컨텍스트의 산물일 뿐이다(Schudson, 2009). 피카드가 말한 ‘저널리즘 없는 민주주의(Journalism without democracy)(Pickard, 2019)’는 디지털로의 전환을 통해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규범적 이론이 현실성을 상실한 오늘날의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요약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접근이 그냥 민주주의의 문제를 완전히 도외시하고 언론이 무엇을 하든 내버려 두자는 말은 아니다. 그보다는 언론인 그리고 언론학자들이 중요시하는 모든 요소들이 항상 불변의 것으로 남을 거라는 기대에서 탈피해야 해답을 향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⁷⁾. 그래야만 현재 벌어

7) ‘언론 개혁’에 대하여 오랫동안 계속된 시도들이 좌절하는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밝혀진 것이지만 법적, 제도적인 어떤 형태로든 정치가 언론에 대한 개혁을 목적으로 언론 제도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나 강제력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사실상 거의 없다. 언론 개혁을 바라는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노릇이지만, 현실이 그러하다. 이 답답함의 상당 부분은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또 당연시한 전제 자체에서 비롯된다. 왜 정치(즉 현대적인 대의제 정치)는 비록 스스로는 매우 엄격한 법적·제도적 절차를 통해 어렵사리 성립하고 작동하면서, 왜 자신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들에게 떠맡기려 하는 것인지를 우선 물어야 한다.

지고 있는 저변에서의 더욱 심각한 변화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 언론의 민주주의에의 기여라는 사회적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지만, 언론 장 내의 행위자들에 대한 규범적 구속력은 점점 줄어들거나 사라지고 있다. 이는 오랜 실패의 경험이 누적되면서 벌어진,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가져 온 결과물이다. 규범적 원칙과 장기적 비전, 사회적 책무에 대한 회의 혹은 무지, 그리고 현재의 상황 극복을 위한 동기(motivation) 상실의 상태가 지금 한국 언론이 처해 있는 가장 중요한 위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III. 한국 언론의 제도적 장의 진화와 그 방향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한국 언론 장의 구조적 변동 그리고 정치권력과의 관계의 진화 양상을 살펴본다. 우선 한국 언론 장의 재구조화를 설명하는 데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존 논의들에 대한 재평가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어 1987년 이후 권력 구조의 성격 변화, 관료제와 신중관계급의 진화, 시장 질서의 확장, 중산층과 시민사회의 관계 변화와 같은 거대한 구조적 질서의 변화를 한층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이론적 단위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 과정에서 1990년대의 국가-시민사회-언론의 규범적 역할 모델과는 다른 차원의, 역사적으로 축적된 언론의 행위 전략의 전환 및 정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포스트 저널리즘 시대의 이념적 가치와 현실적 선택의 융합이 낳게 된 새로운 논리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 언론의 제도적 장의 진화 논리에 대한 이해 혹은 오해

앞서 언급한 규범 이론의 전제로부터 탈피하여 언론의 제도적 장을 보다 구조적인 차원의 논의로 이끌어가는 연구들은 그동안 적지 않았다. 특히

1990년대 시민사회 논의가 대표적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국가 시스템의 작동 방식이나 정당 체제의 운영이 불안정하고, 시민사회 역시 대중적인 기반을 결여한 ‘미성숙’ 상태에서 언론에 맡겨진 기능이 무엇인지를 묻는 논의들이었다. 최장집(1994; 2010)의 주장처럼 이는 제도로서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 과정에서 언론에 주어지는 위상의 문제였고, 동시에 그 위상은 민주주의 이행의 전진 혹은 후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한국 언론의 구조적 위상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역시 그렇기에 시민사회론과 결부되어 있다. 최장집(1994; 2010)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여기서 쟁점은 ‘과대성장한 국가’와 ‘성숙 단계에 접어든 시장경제’의 사이에 위치한 정당 및 시민사회의 역량 문제였다. 최장집의 이론은 국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의 삼각 구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화의 동력에 해당하는 ‘중재 혹은 매개(mediation)의 제도적 장치’, 즉 정당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1990년대까지 나타났던 사당화되고 비체계적인 정당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성숙한 정당 체제의 등장이, 그가 보기에는, 시장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즉각적으로 대중운동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도록 만드는 중요한 매개 장치였다. 그의 이론은 따라서 한국에서 정당이 아직 그 정도로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언론이 ‘민의를 매개 또는 중재 기능’의 담당자로 과대 표상되었다고 말한다. 이는 역설적으로 당시 한국 언론에 대해 정당을 대신하여 자신이 직접 정치에 진입하고 또 스스로 권력으로 진화할 수 있는 힘이 구조적으로 부여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의 해법으로는 정당 체제의 성숙만이 한국 언론의 지위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 이 논의에서 문제는 바로 그러한 이론화의 방식 자체에, 앞서 지적한 규범론적 전제가 한껏 작동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정치적·관료제적 장치들의 양적·질적인 경험과 그 계기들은 현실에서 점점 더 포착하기 어려워진다. 만약 한국의 정당 체제가 조금 더 성숙해지고, 시민사회의 참여 역량이 한층 강화되고, 나아가 국가 시스템의 작동이 그래도 정상적인 수준에 올라설 수 있었다면, 한국 언론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국가 체제와의 조합주의적 결탁’ 및 이를 통해

‘권력화된 언론’의 모습에서 탈피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다수 언론학자들이 그동안 진단했던 현실은 이와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조항제(2020)가 체계적으로 설명한 대로, 한국 언론은 실제 1990년대 이후의 짧았던 전성기를 보내면서, 지칠 줄 모르고 자신의 시장 내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넓혀 나갔다⁸⁾. 그리고 이는 민주화의 심화와 언론 산업의 성장이 정파성의 강화로 이어지는, 소위 ‘민주화의 역설’(최영재, 2014)로 귀결되었다. 민주주의의 이행 및 공고화에 대한 이론적 관점에 내재되어 있는 규범적인 가정 자체도 지난 30년 동안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부정되었다. 언론과 정치의 답합, 블록화, 언론의 권력화, 정치의 미디어화 등이 그러한 현실을 집약하는 용어들이다. 그것이 한국의 정치와 언론의 내부에 끼친 부정적인 유산은 너무나 넓고도 다양하다. 이제 윤석열 정부라는 새로운 권력 집단이 등장하면서, 여기에 포퓰리즘과 우익 행동주의, 뉴스 생산 과정과 관행에 대한 직간접적 통제와 조작이라는 새로운 층위의 변수가 전면화 되었다.

여기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결국 ‘저널리즘과 민주주의’의 규범적 전제들을 ‘언론/미디어와 정치’라는 보다 다양한 현실적 경험의 준거 속에서 살펴보는 노력이 오늘날 한층 중요해 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는 미디어가 정치의 장에서 매개자이면서 동시에 직접적인 행위자라는 관점 그 자체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무의미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치와 미디어가 나름의 방식으로 공생 혹은 연합 관계를 결성하고 있기에, 그것의 구체적인 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질적인 분석의 노력이 한층 더 요구된다.

2. 언론·정치 병행성 경험의 역사적 축적 : 정치적 층위와 경제적 층위

오랫동안 한국 언론과 정치의 구조적 유착을 설명하는데 대단히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정치 병행성(political parallelism)’(Arreto, 2015; Hallin & Mancini, 2009; Mancini, 2012; 조항제, 2020) 개념 문제 역시 역사적인

8) 그리고 양자는 정치권력이라는 매개를 통해 긴밀히 결합되었다.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질문에 부딪히고 있다. 즉 1987년 이후 권력 구조의 성격 변화, 관료제와 신중관계급의 진화, 시장 질서의 확장, 증산층과 시민사회의 관계 변화와 같은 거대한 구조적 질서의 변화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조적으로 변형되는지에 대한 질문 역시 새롭게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는 그 과정에서 한국의 지난 30년 동안의 언론·정치 병행성의 경험이 어떤 방식으로 축적되었고, 이제 이가 어떤 귀결로 향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 보겠다.

언론의 정치 병행성 개념은 ‘미디어의 권력화’ 명제와 더불어 서로 다른 이념과 정파 사이에서 정치 세력과 미디어가 일정한 병행 관계를 이루면서 경쟁하는 체제의 등장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적 자원이다(조항제, 2020). 역사적으로 이는 원래 정당과 신문 간의 특정한 세력 연계에서 출발하지만⁹⁾, 점차 정당을 둘러싼 정치적 성향과 특정 언론의 행위 전략이 조직적으로 연계되는 방식으로 확장되었다. 그 속에서 정치 이념의 공유, 정치적 의제와 행동 전략/전술의 공유, 지지자 혹은 독자의 공유, 양 조직 간 인물의 공유 현상이 나타난다(Hallin & Mancini, 2009; 이준웅 외, 2010).

민주화 이후 3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언론과 정치(정당)의 이념적 협력, 정치적 의제 설정과 행위 전략/전술의 공유, 독자와 지지자의 공유, 그리고 내부 인물들 간의 공유가 언론의 시장 경쟁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행위 전략이었다. 즉 언론·정치 병행성이란 한국의 주류 언론이 자신의 정치적 세력 연합과 시장 연합 전략을 가장 고도화된 형태로 통합시킨 구조적 형식이었다. 한국의 정치 저널리즘은 직접적으로 선거(대선, 총선)를 중심으로 한 정치 질서의 재배치, 특정 정당에 대한 선호와 불신의 체계적인 표출, 이를 위해 특정 정당의 입장에서 직접 정치과정에 개입하는 오랜 역사적 경험을 축적해 왔다. 이를 위한 인적 자원 마련을 위해 언론인의 정계 진출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널리 행해졌다. 김세은(2017)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특히 1987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대하여, 16대 국회의 경우 언론인

9) 따라서 처음에는 ‘정당·언론 병행성(party-press parallelism)’이었다.

출신의 비율이 전체 의원의 20.1%에까지 달하였다. 그리고 이는 언론 시장 자체의 왜곡, 즉 보수 일간지 중심의 시장 집중, 이들이 보유한 언론 장 내에서의 여론 영향력의 독과점 확산,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혹은 정책적 수단의 도입 과정과 체계적으로 결합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의 축적은 객관성, 독립성, 자율성과 같은 저널리즘의 장 내부의 규범적 원칙들이 탄탄하게 정착할 수 있는 여지를 대단히 협소하게 만들었다. 별로 신뢰받지도 못하는 언론이 과도하게 정치적 대표성을 발휘하면서 시장 지배력이 극대화된 구조가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동시에 이는 그 자체로 '불신'의 핵심 요인이자 동력으로서, 언론과 정치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서로 결합된 언론·정치의 관계가 더 이상 과거처럼 작동하기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기능하게 된다. 조항제(2020)는 이를 미디어화(mediatization)라는 이름으로, '정치와 미디어 논리의 결합'의 한 형태로 규정한다. 그의 주장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장기적으로 이러한 '논리적 결합'이 정당 체제, 정치적 장의 작동 방식은 물론 언론 장의 구조적 요인들 모두를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기능한다는 부분일 것이다. 정치적 병행성을 날로 심화시켜 나갔던 한국 정치와 언론이 진보-보수 성향 정권의 교체 시기마다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이는 그 자체로 미디어화로의 진화를 거쳐 민주주의 자체 붕괴가 한층 전면화되어 나가는 과정으로 요약해도 무리가 없는 듯 하다.

주류 언론은 이미 직접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대중운동을 무조건적인 적대시의 대상에 가깝게 설정하고 있다. 그 결과는 - 흡사 이탈리아 정치의 사례에서 관찰되었듯이(Mazzoleni & Schulz, 1999) - 사실상 미디어에 종속된 정치의 형태가 민주주의의 오랜 법칙을 파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정치적 극단화(polarization) 혹은 양극화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전개 방향 역시 이러한 붕괴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이행 혹은 공고화라는 관점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현대 정치의 파행적 상황이지만, 이는 이미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영국과 미국, 즉 자유주의적 정치와 양당제를

대표하는 (따라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저널리즘이라는 이념 자체를 낳을 수 있었던) 두 국가가 2016년 이후에 겪었던 극단적인 분열의 상황이 대표적이다. 탈진실(post-truth) 그리고 가짜뉴스 현상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의 뿌리는 바로 이러한 극단화의 경향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한국 정치에서는 양당제 하의 경쟁 정당들이 보여주는 ‘제로섬 게임’의 상황, 즉 상대방의 주도권을 결코 인정하지 않기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의 일상화, 극단적 양극화 및 ‘비토크라시(vetocracy)’의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 정치에 비해 훨씬 관습적인 ‘부정 편향(negative bias)’이 작동하는 역사적 경험 역시 매우 강력하다. 과거 권위주의 정치 하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특정 지도자 개인이나 지역 차원의 정당과 결부시켜 왔던 유권자 대중들의 실천 형태가 상당 기간 동안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10년 단위의 진보-보수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던 상황에서, 이는 제도권 언론이 자신들의 정파성을 눈에 보이지 않게 구조화시킬 수 있었던 좋은 ‘변명거리’였다. 그 속에서 언론이 주도하는 ‘초적대주의(hyper-adversarialism)’가 작동한다(조항제, 2020). 이는 “정치에 중요한 사실들을 분명히 밝히거나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극적(dramatic)이면서 균중유희용 경쟁을 추구하는 언론인들의 공격적이고 대립적인 입장”(McNair, 2009)을 뜻한다. 이는 오늘날 종이신문 지면은 물론 종편 채널에서 또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극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다(유용민, 2019; 홍남희, 2022). 한국 언론은 이러한 사회적 의견 표출의 양극화에 대해 결코 관찰자나 방관자의 입장을 취할 수 없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주체였던 역사적 구조와 경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적 위기, 민주주의의 토대의 위기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역량이 성숙할수록 언론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는 뿌리 깊은 믿음 역시 흔들리고 있다. 실제로 그러한 전체 시스템 차원의 통제에 성공한 것은 결국 시장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민주 정부 하의 국가 권력이나 시민사회의 개혁에 대한 노력 역시 사실상 와해된 상황에 가깝다. 지난 30년 이상 지속된 언론·정치 병행성은 언론(미디어) 기업이라는

하나의 세력 주체가 성공적으로 자신에 대한 일체의 제한 혹은 통제 요인들을 거부하거나 극복해 나갔던 결과물로 구축되었다. 국가 그리고 정치권력은 그동안 언론-미디어 기업이 직면하였거나 자초하였던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외환위기 상황에서의 구조조정, 디지털 혁신과 영향력 상실, 경제적 위기, 독자 신뢰도 위기 등)을 유예하거나 혹은 그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을 벌어주는 주요한 도구로 봉사하게끔 언론 장의 조건은 바뀌었다. 언론사의 신뢰도나 영향력이 바닥으로 추락하건 말건, 디지털 혁신에 뒤처지고 독자를 끊임없이 잃어버리건 말건, 아무튼 끊임없이 정치권력을 동원한 처방으로 위기를 끝없이 유예시킬 수 있는 자본 영역의 역량을 날로 확충시켜 나가는 존재가 바로 오늘날 한국 언론의 위상에 더 가까울 것이다.

3. 포스트 저널리즘 시대의 이념적 가치와 현실적 선택, 새로운 결합의 방식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나타나고 있는 정치/언론의 관계에 대한 관찰을 통해 던질 수 있는 또 다른 질문은, 언론 자유의 패러다임과 1987년 이후의 민주화가 가져온 중요한 현실 인식의 괴리일 것이다. 그 속에서 언론이 스스로 민주주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대중들 사이에서 강력하게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2010년대 이후 한국 언론 기업은 그들의 경제적 위기와 디지털 혁신의 과제 속에서 민주주의라는 언론의 기본 가치가 자신들의 선택지로 존중받았던 사례가 별달리 없었다. 이들 언론사들은 언론인과 그들의 실천 활동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적인 제약 조건들(언론 기업, 뉴스 소비와 시장, 디지털 기술과 혁신 등)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만약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때 민주주의에 대해 새로운 기대를 품을 수 있게 만드는 어떠한 요소도 일절 가지고 있지 않다. 신자유주의, 금융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배제해야만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상되었기에, 우리는 이를 ‘포스트 민주주의’의 핵심 구성

요소로 간주한다(Gerbaudo, 2022). 이와 유사한 형태로 언론(기업)과 언론인의 가치 및 실천 환경에서 이처럼 민주주의가 체계적으로 배제되어야만 저널리즘을 둘러싼 모든 요소들의 미래가 조금이라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담론 체계 역시 동일한 인식의 구조를 가진다. 여기서는 이를 ‘포스트 저널리즘’(Pickard, 2019)의 시대라고 부르코자 한다.

이 시점에 한국 언론의 제도적 장을 구성하는 또 다른 주체인 언론인들에게는 어떤 변화의 역사적 경험이 축적되었을까? 그것은 현실의 언론 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행위하게 되는 원동력으로 작동할까? 한국의 언론인들은 일단 1987년 이후 놀라울 정도로 직업적 자율성이 신장되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치권력에 의한 통제는 지속적으로 약화되었다. 그 흐름을 정면으로 거슬렀던 지난 9년간의 보수 정권, 그리고 새 정부의 존재가 있지만, 그것 또한 향후의 장기지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¹⁰⁾. 그렇다고 해서 정치권력의 문제가 장기적으로 자본(언론사주, 광고주 등)에 의한 통제라든가, 언론인 집단의 내적인 분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들만큼이나 그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가질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런 경우 쟁점은 권력이나 자본과 같은 외적 통제, 사주나 편집국 간부들에 의한 내적 통제가 결합되고, 이에 저항할 수 있는 언론인들이 점차 소수화되는 것에 대한 문제로 시급히 옮겨져야 할 것이다(박진우, 2015; 박영흠·윤성인, 2023). 언론의 기업적 성격, 특히 그것의 신자유주의적 지배 구조로서의 성격이 강화될수록, 언론인 개개인들은 점점 더 순응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변모하고 있다. 언론인의 ‘샐러리맨화’는 이미 1960년대부터 관찰되기 시작하였지만, 고도성장기의 샐러리맨과 신자유주의 시대의 샐러리맨은 그 성격이 다르다(박진우, 2015).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언론계가 처음으로 경험한 새로운 경향성(상시적 구조조정, 고용의 유연화, 무한 경쟁, 기업 종속적 샐러리맨 의식의 강화 등)이 그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주요한 매개 변수이다.

10) 물론 이는 저자의 희망 섞인 판단이다. 2012년 2차 아베 내각의 수립 이후 일본 언론에 대한 평가를 보노라면, 그러한 보수적이고 능동적인 통제의 흐름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구조화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Kingston, 2017).

많은 연구들이 한국 언론인들의 중요한 자기 정체성 표현의 방식, 즉 ‘전문직주의’의 현 단계에 대하여 대체로 회의적인 평가를 내렸다(김경모·신의경, 2013; 박진우, 2015). 실제로 한국 언론인들의 전반적인 사정이 전문직으로 규정되기에는 매우 취약한 제도화 성과 위에 놓여 있다. 전문직 저널리즘의 이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불완전하다¹¹⁾. 반대로 전문직 저널리즘을 지탱하는 제도나 정책 차원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미비하거나 혹은 직업 관료제에 의한 ‘침식’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그렇기에 전문직주의의 문제는 ‘규범적 기준에 대한 결여 혹은 미달’의 문제로 다루어지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한국 언론이 자신의 전문직주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관철시키고 있는지를 통해 파악되어야 하는 매우 구체적인 실천의 이슈이다.

쟁점은 역시 전문직주의 규범과 현실은 단절되었고, 후자에 대한 전자의 지속적인 침식 양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행위 주체들의 이중적 의식의 형성, 그러한 이중성에 대응하는 인식과 현실의 균열이 전면화되어 있다. 전문직주의가 전제하는 뚜렷한 규범적 지향들이 현실은 물론 의식 속에서도 급격히 단절된 것이다¹²⁾. 이 같은 규범 침식 현상은 언론인의 가치가 언론 조직의 경제적 전망과 충돌하는 경우에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다. 위기에 봉착할수록 저널리스트의 기업 조직에 대한 몰입도는 증가하였고, 그 결과 ‘기업 종사자’로서의 저널리스트의 직업적 정체성은 한층 더 강화되었다. 이는 곧 언론 기업의 경제적 성장이 언론인의 자율성 신장과 사실상 무관하였음을

11) 현실적으로도 언론인에 대한 법적 지위 규정의 결여, 공유된 직업 규범 혹은 문화적 가치의 결여, 전문직 제도(직능 단체, 언론인 교육 시스템 등)의 결여, 저널리즘 산업 위기 상황에 대한 공동 대처의 어려움(매체 간 및 매체 내부에서의 경쟁 구조, 이에 따른 공유된 가치의 전적인 결여, 디지털화에 대한 공동 대처의 부재 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12) 사실 필자가 보기에 한국 언론에서는 전문직주의 규범 자체도 위기에 처해 있다. 객관주의 보도와 자율성의 이념은 여전히 형식적인 차원의 가치로만 그치고, 심층적 해석보다 표피적 사실관계의 나열식 기술을 우월하게 간주하는 이른바 ‘탈정치적 사건 중심 보도 관행’이 지배적이며, 이를 통해 정권의 폭력이나 시장 논리와 쉽게 타협해 버리는 보도 태도의 문제 등은 지속적으로 연구자들에 의해 거론되었다. 이는 단지 가치의 미성숙 혹은 체화 수준의 미달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근본적으로 규범과 현실이 서로 다른 논리 속에 분할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보여준다. 언론 기업 종사자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전통적인) 유기적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숙명적으로 병행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양자가 갈등하는 상황이 체계적으로 창출되었고¹³⁾ 그 속에서 언론인들은 호황과 위기 국면을 가리지 않고 특정한 경향을 뚜렷하게 선택해 왔다. 전문직주의가 상정하는 동료 집단에 대한 신뢰와 유대감, 독자들에 대한 책무 의식이 이들의 이러한 선택을 가로막은 흔적은 (몇몇 희생적인 소수들을 제외한다면)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의 문제일 수 없다. 이미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조직적 일탈’의 형태이자, 어쩌면 그것이 현 단계에서는 ‘정상성’의 형태일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배경 하에서라면 언론인 스스로가 자신들의 직업적 가치와 위상에 대한 자부심을 사실상 ‘접어 버린’ 상황이라고 진단해야 하지 않을까? 즉 자신의 직업적 정체성이 민주주의·객관성·자율성의 규범에 근거한다는 확신 자체가 설 자리를 잃어버린 상황이라는 것이다. 일부 상층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그렇기에 정치 종속적인 집단적 특권의 취득이라는 행위 전략이 보편화되기 시작했고, 또 그것이 오랫동안 한국 언론인들의 대표적인 ‘선택’으로도 간주되게 되었다. 이는 한국 언론의 제도적 장 자체가 언론인들의 일탈적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 자율적 힘을 거의 가지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언론인 개개인이 차지하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합의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IV. 결론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연구는 한국 언론에 현재 나타나는 구조적 변동의 양상은 큰 틀에서 포스트 저널리즘 시대의 가치와 현실 간의 동요라고 요약해 보았다. 그리고 이는 핵심적으로 ‘저널리즘 없는 민주주의’의 확산 과정

13) 정치권력은 바로 이러한 창출 과정에 개입한다.

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것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은 사실 크게 마땅치는 않다. 하지만 이는 언론과 정치, 권력과 민주주의의 문제를 설명하는 한층 전통적이고 규범적인 이론적 전제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때에야 극복 가능한 문제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언론과 권력의 재구조화된 관계의 극복에 필요한 한층 현실적인 행위 전략을 마련하는 작업의 출발점을 마련하고자 시도해 보았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은 무엇보다, 한국 정치와 언론의 관계에 있어 1987년 민주화 국면이 시작된 이래, 그 오랜 관계 구조에 있어서 근본적인 진화 혹은 단절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언론과 정치의 맞물림, 그리고 언론의 권력화라는 현상은 21세기의 새로운 조건하에서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였지만 이러한 변화의 배경 속에는 미디어 산업 전체의 경제적 위기 또한 자리 잡고 있다. 각 언론사 별로, 그리고 매체 간에 치열한 경쟁과 상호 견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대중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정치와 언론 모두의 신뢰도 추락임을 지적하였다. 이는 언론 장 전체의 존재 양식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궁극적으로 언론 장의 제도적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중요한 배경으로 작동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정치와 언론, 권력과 민주주의의 작동을 정당화시켜 왔던 오랜 규범적 전제의 해체 혹은 소멸이 전면적으로 관찰되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등장 이래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표현의 자유’ 문제 역시 이러한 구조적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평가해야 할 주제일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오늘날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임은 물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보다 비민주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층동들이 보다 발달된 디지털 기술 문명의 도구들과 결합하여 민주주의 자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있는, 그런 모습이 곳곳에서 확인되는 그러한 시대이다. 이러한 위협은 해당 사회가 서구인가 아시아 지역인가, 혹은 미디어의 자유로운 활동에 손쉽게 제약을 가하려는 권위적인 정부의 통치 아래에서인가

아니면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독립적인 언론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정부 아래에서인가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따라 물론 서로 다른 형태를 보여준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지금 현대 사회는 모두 민주주의-포퓰리즘-디지털 테크놀로지의 관계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놓여 있지 않은, 전대미문의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이행’이 시작된 것도, 또 여기에 발맞추어 한국 언론과 정치의 장에 대한 구조적 인식의 틀이 마련된 것도 이제 30년이 지났다. 언론과 정치에 대한 많은 설명들은 이러한 인식에서 유래하였고, 또 그것은 한국 언론의 위상에 대한 무수한 찬반논란의 이론적 출발점으로 기능해 왔다. 하지만 지금도 민주주의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듯이, 언론과 정치 그리고 시장과 시민사회를 둘러싼 변화의 과정도 현재 진행형이다. 디지털 기술의 전면화는 여기에 종합적 인식과 이론화의 가능성을 한층 복잡하게 만들고, 또 그 방향 역시 미지의 곳으로 향하게 만들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언론과 정치에 부여하였던 오랜 규범적 기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연구가 시도하였던 것은 결국 그러한 변동의 분기점은 무엇인지, 지금 한국 언론과 정치의 미래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을 마련하는 일이다. 대중들의, 시민사회의 역할을 상정할 수 있다면, 이는 바로 그러한 변화의 국면에 대한 치밀한 추적과 해석을 통해서 가능한 일일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 전체가 맞닥뜨린 뜻밖의 거대한 소용돌이가 이와 같은 작업을 한 단계 진척시킬 수 있는 좋은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2024년 1월 31일 접수
2024년 2월 26일 수정 완료
2024년 2월 20일 게재 확정

참고문헌

- 강명구·양승목·엄기열. 2001. 『한국 언론의 신뢰도 : 위기 현황 분석과 극복 방안』. 서울: 한국언론재단.
- 김경모·신의경, 2013. “저널리즘의 환경 변화와 전문직주의 현실 : 반성적 시론.” 『언론과학연구』, 제13권 2호: 41-84.
- 김세은. 2017. “‘신’해직 언론인의 ‘압축적’ 생애사를 통해 본 한국 정치권력의 언론통제 : YTN과 MBC 사례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제25권 3호: 221-328.
- 뮐러(Müller, J.-W). 2022. 『민주주의 공부』. 권채령 역. (2022). 월북.
- 박영흠·윤성인. 2023. “대표(representative)로서의 저널리즘 : 저널리즘의 정당성 복원을 위한 시론.” 『언론과 사회』, 제31권 1호: 25-50.
- 박진우. 2015. 한국 언론의 전문직주의와 전문직 프로젝트의 특수성 : 언론-정치 병행관계의 한국적 맥락. 『한국언론정보학보』, 74호: 177-196.
- 박진우. 2020. 진실을 둘러싼 대중들의 문화정치 : 저널리즘과 정치의 구조 변동. 한국언론정보학회 (엮음). <저널리즘 모포시스>(320-353쪽). 서울 : 팬덤북스.
- 배정근·박진우·오현경. 2021. 『언론 신뢰 구축을 위한 새로운 접근』. 서울 : 한국언론진흥재단.
- 부르디외(Bourdieu, P). 1998. 『텔레비전에 대하여』. 현택수 역. 동문선.
- 쾨보르스키·마라발(Przeworski, A. & J. M. Maravall). 2008.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안규남·송호창 역. 후마니타스.
- 유용민. 2019. “유튜브 저널리즘 현상 논쟁하기 : 행동주의의 부상과 저널리즘의 새로운 탈경계화.” 『한국방송학보』, 제33권 6호: 5-38.
- 이준웅·조향제·송현주·정준희. 2010. “한국 사회 매체 체계의 특성 : ‘민주화 이행 모형’의 제안.” 『커뮤니케이션이론』, 제6권 1호: 87-143.
- 잉글하트·웰젤(Inglehart, R. and C. Welzel). 2011. 지은주 역. 『민주주의는 어떻게 오는가: 근대화, 문화적 이동, 가치관의 변화로 읽는 민주주의의

발전 지도』. 김영사.

제르바우도(Gerbaudo, P). 2022. 『거대한 반격: 포퓰리즘과 팬데믹 이후의 정치』. 남상백 역, 다른백년.

조항제. 2020. 『한국의 민주주의와 언론』. 서울 : 컬처룩.

최승영 (2023. 3. 7). “언론대응, 민주화 이전으로 회귀… 언론과 싸우는 대통령 되나”, 한국기자협회 ‘2023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를 말하다’ 토론회. <기자협회보>. http://m.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53176

최영재. 2014. “공영방송 보도국의 정파적 분열.” 『커뮤니케이션 이론』, 10권 4호: 476-510.

최장집. 1994.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 『언론과 사회』, 6호: 40-64.

최장집. 2010.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2판). 서울 : 후마니타스.

최장집. 2020.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 위기와 대안.” 『한국정치연구』, 제29집 2호: 1-26.

한국언론정보학회 (엮음). 2020. 『저널리즘 모포시스』. 서울 : 팬덤박스.

한국언론정보학회(정준희·이정훈·송현주·김영옥·채영길). 2022. 『언론 자유의 역설과 저널리즘의 딜레마』. 서울 : 멀리깊이.

הל린·만치니(Hallin, D. and P. Mancini). 2009. 김수정 외 역. 『미디어 시스템 형성과 진화 : 정치-미디어 3모델』. 한국언론재단.

홍남희. 2022. “소셜 미디어 시대 여론 극화와 상품으로서의 젠더 뉴스 : 디지털 저널리즘 생태계의 ‘독성화’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13호, 249-278.

Benson, R. 1999. “Field theory in comparative context : A new paradigm for media studies.” *Theory and Society*, 28(3): 463-498.

Couldry, N. 2003. “Media meta-capital : Extending the range of Bourdieu’s field theory.” *Theory and Society*, 32(5-6): 653-677.

Graber, D. 2003. “The media and democracy : Beyond myths and stereotype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6: 139-160.

- Hanitzsch, T., Hanusch, F., Ramaprasad, J., and A. S. De Beer. (Eds.). 2019. *Worlds of Journalism: Journalistic Cultures around the Glob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anitzsch, T., van Dalen, A., and N. Steindl. 2018. Caught in the nexus : A comparative and longitudinal analysis of public trust in the pres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23(1): 3-23.
- Heinecke, S. 2019. "The game of trust : Reflections on truth and trust in a shifting media ecosystem." pp. 3-13 in T. Osburg & S. Heinecke (eds.). *Media Trust in a Digital World : Communication at Crossroads*. Cham, Switzerland: Springer.
- Kingston, J. (ed.). 2017. *Press Freedom in Contemporary Japan*. London & New York : Routledge.
- Latour, B. 2005. "From *Realpolitik* to *Dingpolitik*, or how to make things public." pp. 14-41 in B. Latour & P. Weibel, (eds.). *Making Things Public : Atmospheres of Democracy*. Cambridge, MA: The MIT Press.
- Laudani, Raffaele. (2012. 9). Encore un homme providentiel pour l'Italie. *Le Monde Diplomatique*. Septembre 2012. <https://www.monde-diplomatique.fr/2012/09/LAUDANI/48139>
- Mancini, P. 2012. "Instrumentalization of the media vs. political parallelism." *Chinese Journal of Communication*, 5(3): 262-280.
- Maras, S. 2013. *Objectivity in Journalism*.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zzoleni, G. and W. Schulz. 1999. "'Mediatization' of politics : A challenge for democracy." *Political Communication*, 16(3): 247-261.
- Mnair, B. 2009. "Journalism and democracy." pp. 237-249 in Wahl-Jorgensen, K. & Hanitzsch, T. (eds.). *The Handbook of Journalism Studies*.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 Pickard, V. 2014. *America's Battle for Media Democracy: The Triumph of Corporate Libertarianism and the Future of Media Reform*.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ckard, V. 2019. *Democracy without Journalism?: Confronting the Misinformation Society*. Oxford and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 Przeworski, A. 2019. *Crises of Democracy*.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ese, S. D. 2021. *The Crisis of the Institutional Press*. Cambridge : Polity.
- Schudson, M. 2009. *Why Democracies Need an Unlovable Press*. Cambridge : Polity.
- Tsfati, Y., & Arely, G. 2014. "Individual and contextual correlates of trust in media across 44 countries." *Communication Research*, 41(6): 760-782.
- Urbinati, N. 2019. *Democracy Disfigured : Opinion, Truth, and the Peopl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Reassessment of the Empowerment and Crisis of the South Korean Press: Structural Evolution of Media-Politics Parallelism and the Retreat of Press Autonomy, 1987-2022

Jin-woo Park
Konkuk University

Soel-ah KIM
Hongik University

Abstract

This research examines the internal evolution and restructuring processes of South Korea's politics and media field since the democratization phase post-1987. Furthermore, it aims to scrutinize the contemporary crisis surrounding the South Korean media within the broader context of the internal transformations in Korean politics and the media environment. To achieve this, the study employs the conceptual framework of Bourdieu's field theory,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perspective of changes in power and inequality relations operating within a structured social space. The research specifically reviews the patterns of institutional field changes and ruptures within the Korean media, grounded in citizens' comprehensive expressions of distrust towards the institutional field surrounding media and politics. Firstly, the study asserts that the institutional field has entered a fundamental stage of evolution based on the citizens' collective expressions of skepticism toward the field surrounding media and politics. Secondly, it contends that these patterns of rupture demand a departure from existing theoretical frameworks concerning the parallelism of media and politics and the empowerment of the media. Thirdly, the research points out the initiation of the construction of a new normative order and boundaries of the field surrounding media, amid a heightened shift in public perception of the existing forms of media presence. This shift signifies the emergence of a

novel institutional structure heralding the era of “democracy without journalism” in the post-journalism age.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e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for the formulation of pragmatic strategies by the public to respond to the restructured relationship between media and politics in the future.

Key Words: media-politics parallelism, media power, journalistic field, populism, post-journalism

장애인의 가족 내 주변화 경험에 대한 연구*

정 지 연** · 김 정 석*** · 허 준 기****

요 약

장애가족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이들이 겪는 사회적 배제와 차별, 돌봄의 문제에 집중해 오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가족성원간의 일상적 상호작용이 사적인 삶의 영역으로 간주됨으로써, 가족내 갈등과 적응의 양상은 충분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자신의 가족 성원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차별경험과 이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장애인의 가족은 장애인을 지지하고 지원한다. 그러나 이들이 능력주의 가치관을 내면화하고 있을 때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행동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장애인의 가족은 장애를 가장 가까이 경험하는 집단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반면, 비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구조와 문화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장애인은 장애가 없는 가족성원과의 일상 관계에서 미세한 차별과 주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본 연구는 총9명의 지체, 시각장애인을 심층면접하여 주제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은 가족으로부터 결혼이나 진학, 연애, 독립 등 비장애인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며, 무능력하고 의존적인 존재, 가족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위치된다. 또한 장애인은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정이나 가족관련 의사결정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기도 하며, 장애를 부끄러워하는 가족들로부터 함께 외출을 거부당하기도 한다. 이 결과들은 장애인의 가족이 비장애 중심주의 가치관을 내면화할 때 장애인은 동등한 가족구성원이 아닌 '장애'인으로 주변화됨을 보여준다. 장애인이 사회참여를 시도할 때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비장애인 가족 구성원들에게서조차도 일상에서의 주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장애인이 겪는 사회적 배제가 가장 기초적이고 일상적인 부분에서조차 어떻게 나타나는지 장애차별의 양상을 다양하게 조명하여 설명하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장애인 가족, 주변화, 비장애 중심주의, 주제분석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3A2A01087152).

** 제1저자, 함께하는 연구 연구위원, sweney@hanmail.net

*** 교신저자,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chkim108@hanmail.net

**** 공동저자,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연구원, gjwnsr12000@hanmail.net

I.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장애인은 교육, 노동, 사회서비스,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와 차별, 소외와 같은 주변화를 경험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학이나 취업을 거부당하기도 하고, 입학이나 취업을 하더라도 친구들이나 동료들로부터 소외당하기도 한다(김성희 외, 2020; 이미림, 2021). 업무평가에서 배제당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주요한 프로젝트를 맡지 못해 학습의 기회를 놓치기도 한다(문영민 외, 2019; 차노휘, 2021).

외부 공간에서도 장애인은 주변화를 경험한다. 대중교통인 지하철과 버스는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며 때로 사고와 죽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한겨레, 2018.3.15.).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저상버스 역시 운행간격이 길어 장애인들의 이용이 쉽지 않다(한국일보, 2023.1.10.). 장애인은 비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간을 이용하지 못한다. 계단은 모든 사람들이 이용가능한 장소가 아니라 그것을 시각적으로 인지하고 자신의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장치이다(하홍규, 2023). 즉, 장애인들은 공공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배제된다.

그렇다면 사적인 장소인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장애인 가족들에 대한 연구는 자신들의 가족인 장애인을 지지하고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Birneanu & Baci, 2017; Friedman, 2019).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회가 조직되고 운영되어 온 것과 달리 가족은 사적영역이면서 비교적 친밀성이 높은 집단이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의 가족은 장애인 당사자의 주요 돌봄자로 전적으로 돌봄을 수행하며 일상이 피폐해지는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서원선·서옥영·이소원, 2019).

반면 장애인과 가족 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일상경험과 이로 인한 갈등은 사적 영역 또는 부차적 문제로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장애인과 가족들과의 상호작용 역시 사적영역인 동시에 사회구조와 문화, 그리고 개인

간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전지혜, 2009). 장애인의 가족은 장애를 저마다 다르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며 표현하는 정도도 다르다. 이를 받아들이는 장애인의 인식 또한 일관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없다. 때로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했던 가족의 언행은 장애인에게 자신의 장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비장애인 가족이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장애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나타나는가는 다른 문제이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이 다양한 입장과 정체성이 발현되고 충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공적 영역에서의 차별 해소를 위해 사회운동을 함께하는 관계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가족성원에 주목하기보다 일상생활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가족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가족의 상호작용을 이른바 ‘혼합된 접촉(mixed contact)’으로 볼 수 있는데, 비장애인 가족성원은 타인에 비해 장애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장애를 직접 경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장애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고프만, 2018). 따라서 장애가족의 비장애인 가족성원은 정상성 규범을 내면화한 채로 장애인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이들을 가족 구성원이 아닌 장애의 독특성에만 집중하여 비장애인 중심주의의 가치로 장애인을 볼 수 있다. 이는 장애인들이 가족 내에서 주변화-즉, 장애인의 특성이 부각되어 위계의 차이를 경험하는 그 순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가족과의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이 주변화된 존재가 되는 경험과 이에 대한 인식을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장애인의 가족 구성원은 비장애인으로서 주류집단의 가치인 능력주의(ableism)를 내면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인 구성원과 함께 지내면서 장애를 더 잘 이해하거나, 다른 사람에 비해 장애인을 배려할 가능성이 높다. 즉,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함으로써 서로 다른 두 개의 가치관이 공존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 때문에 가족 간 상호작용은 가치관의 중첩과 표류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 과정

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비장애인 가족과 생활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 가족구성원과 겪는 갈등경험을 ‘주변화’라는 이론적 자원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주변화는 중심을 차지하는 주류집단에 비해 비가시화되고 중심부의 주변에 배치되는 것을 의미한다. 소수집단의 주변화를 통해 소수집단의 의견과 상황은 차단되며 차별과 배제, 모욕과 무시와 상황이 발생한다. 거시구조나 중간정도의 집단을 보면 주변화는 소수집단에 대한 체계적인 차별과 배제를 야기한다. 이에 반해 가족과 같은 미시적 집단에서 주변화는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구성원들 간의 동학을 바탕으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적영역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장애인에 관한 주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주목한다.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가족 내 주변화 경험을 밝혀내려는 시도를 통해 장애인식에 관한 논의가 공적영역에서 사적영역으로 더욱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정책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능력주의에 기반하여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적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보다는 시혜적 지원에 그치는 것과 함께, 장애인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비장애인 가족성원들에게서조차도 일상에서의 주변화와 미세한 차별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가장 기초적이고 일상적인 부분에서조차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장애차별의 양상을 다양하게 조명하여 장애인식 개선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갈 수 있고 장애정치 전략의 근거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1) 주변화 개념과 장애인의 주변화 경험

‘주변화(marginalization)’란 ‘어떤 사회나 집단에 속하여 있으면서도 그

속에 동화되지 못하고 겉돌게 됨'을 의미한다(국립국어원). 주변화 개념은 사회학자인 Park의 '주변인(Marginal Man)'으로부터 발전하였다. Park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이질적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주변인(Marginal Man)'이라 지칭하였다(Park, 1928). 이후 주변화는 개인의 정체성, 사회적 관계, 공적·사적 경험이 중심에서 주변적 위치로 이동하는 과정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주변화는 소수 집단과 다수집단의 위계에 의해 배치되는 사회적 위치와 이와 관련된 소외, 배제, 차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Hall, Stevens, & Meleis, 1994; Messiou, 2006).

주변화 개념은 교육, 노동시장,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소수자들이 주변적인 위치로 밀려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준거틀로 사용된다. 예컨대, 노동 시장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여성은 교육이나 훈련, 승진 기회가 제한적이고 조직 내 다른 동료와의 관계에서 고립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신경아, 2015). 탈북학생들은 남한에서 북한의 학습경험을 인정받지 못하고 한국사회에서 어린시절부터 쌓아온 문화적·언어적 경험이 부재함으로 인해 남한 학교에서 반복된 좌절을 경험하고 주변화된다고(김지수·서경혜, 2019). 스포츠 분야에서 여성들의 주변화를 다루어왔다. 스포츠 중계 및 보도하는 매체는 여성선수들을 중심으로 다루지 않음으로써 남성선수들의 주변이나 보조적인 위치로 배치시킨다(Duncam 1990; 남상우, 2004).

한편 주변화는 소외나 배제, 차별과 같이 특정 집단이 주류사회 혹은 다수집단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구별짓기 혹은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Cuttler와 Malone은 보행자 사고 발생을 분석하면서 자동차 중심문화가 보행자를 주변화하는 것이 주요한 문제임을 지적한다(Cuttler & Malone, 2005). 이러한 사례는 주변화가 다수집단과 소수집단의 고정된 구별짓기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 대상 혹은 집단의 특성을 가지지 못한 개인이나 집단들을 주변으로 밀어내어 적절한 자원에 접근하지 못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장애인 역시 자신들의 일상생활 혹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다양한 주

변화 과정을 경험한다. 장애인이 경험하는 주변화는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 등 복지서비스 영역 뿐 아니라, 회사나 학교와 같이 개인이 대부분의 생활을 보내는 공적 영역에서도 나타난다(이복실·김용득, 2012; 문영민 외, 2019; 차노휘, 2021).

우선 장애인들은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소에서 주변화를 경험한다. 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의료진은 장애인 당사자와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보호자와만 의사소통을 하기도 한다. 때로 이들은 장애인이 혼자 병원을 찾을 때 보호자를 데려오라며 진료를 거부하거나 장애인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료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장애인을 의료서비스에서 타자화한다(이숙향 외, 2019; 이미림, 2021).

한편 장애인은 학교나 회사와 같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에서 주변화를 경험한다. 고용과 교육은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주변화를 경험하는 영역이다. 장애인들 중 일부는 일반학교에의 입학이나 진학을 거부당한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입학을 하거나 진학을 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장애인의 비율은 8.8%(대학교)에서 37.2%(초등학교)까지 다양하다(이미림, 2021; 김성희 외, 2020). 장애인들이 일반 학교에 입학하더라도 또래나 친구로부터 놀림을 받거나 적절한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는 방식으로 차별, 소외, 배제를 경험한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하는 고학력 장애인들 역시 주변화를 경험한다. 장애인 대학원생들은 프로젝트를 담당할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연구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기도 한다(문영민 외, 2019).

회사 역시 장애인이 주변화를 경험하는 영역이다. 장애인들은 학교에서 입학을 거부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취업을 거부당하기도 한다. 장애인들이 회사에 취업하여 일하더라도 회사의 공적 부문에서 주변화를 경험한다. 이들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다. 장애인들은 노동자임에도 노조가입을 거부당하기도 한다(이재관, 2019; 김성희 외, 2020). 또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회사업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며,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 참여, 교육

연수, 출장에서 배제되기도 한다(이재관, 2019; 차노휘, 2021). 장애인들은 공적 부문 뿐 아니라 조직 내 관계에서도 주변화를 경험한다. 이들의 자리는 이동이 어렵거나 복사기 옆과 같은 외진 곳에 배치된다.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자리에 배제당하여 회사 내 사정을 듣지 못하거나 장애와 관련된 욕설을 듣기도 한다(이재관, 2019; 차노휘, 2021).

장애인의 주변화는 일상공간에서도 쉽게 나타난다. 지체 장애인은 전동휠체어로 이동할 때 건물외 계단이나 문턱 때문에 출입의 어려움을 겪는다. 전동휠체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식당 출입을 금지당하는 사례도 있다(경향신문, 2024. 2. 4).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공간이다. 지하철은 많은 계단을 이용해야 하며 버스 역시 계단을 오르내리는 구조로 되어 있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물론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리프트를 타거나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저상버스는 운행간격이 길고 리프트는 사고 가능성이 높다(한겨레, 2018.3.15.; 한국일보, 2023.1.10.).

한편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쉽게 적용되는 기술 역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키오스크를 이용하고자 할 때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키오스크의 높이가 맞지 않고, 시각장애인들은 소리가 나오지 않는 키오스크를 이용하기 어렵다. 이와 더불어 금융서비스나 공공기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웹사이트나 앱도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시사위크, 2020.12.7.). 이상의 논의에서 보듯이 장애인들의 주변화 경험은 복지나 의료 서비스, 교육이나 노동시장, 교통, 공간,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점은 장애인이 공적 생활에서 주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적 생활에 해당하는 친밀한 관계인 가족 생활에서도 주변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2) 장애인의 가족생활에 대한 연구

장애인 가족의 삶은 비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족의 삶과는 다르다. 장애인

가족은 주로 비장애인 가족성원이 장애인의 돌봄자 역할을 하면서 이들의 필요를 가장 가까이서 채워주고 지원한다. 이들은 장애인 구성원이 출생하기 전까지 혹은 가족 중 누군가가 장애인이 되기 전까지 비장애인 가족 중심의 삶을 영위해 왔다. 따라서 대부분의 장애인 가족은 이전의 삶과는 달리 가족 간 관계와 이에 따른 일상생활을 총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새로운 가족동학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 가족생활에 대한 연구들은 비장애인 가족들이 장애인의 삶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장애인에게 필요한 돌봄과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을 지적한다(Birneanu & Baciu, 2017; Friedman, 2019). 소수자와 접촉이 높은 집단은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적응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장애인을 가장 잘 이해하는 집단은 장애인의 가족들일 수 있다(고프만, 2018). 예컨대, 장애를 지닌 어머니나 형제, 자매 등 장애인 가족이 있는 비장애인들은 장애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최복천·김유리, 2018; 송정문·양영희, 2021). 장애인들은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장애를 고려한 돌봄과 지원을 받고, 활동관리와 자기관리에 도움을 받기도 한다(Birneanu & Baciu, 2017; 최복천·김유리, 2018). 또한 비장애인 가족들로부터 장애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하지 않도록 보호받기도 한다(김교연, 2011).

다른 한편 비장애인 가족에게 장애는 낯선 경험일 가능성이 높다(Ederly, 2022). 따라서 비장애인 가족 구성원은 장애인을 가장 잘 지원하는 존재이기도 장애인 구성원을 지나치게 보호하거나 과하게 헌신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Birneanu & Baciu, 2017; 김교연, 2011). 예컨대, 부모들은 장애인 청소년의 캠프나 외부활동을 지나치게 반대하거나 과도한 보호의 차원에서 장애인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대신 해주려고 하는 등 장애인 자녀를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기도 한다(구정아·박은혜·이영선, 2014). 또한 장애인 형제·자매를 둔 비장애인은 자신의 형제·자매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지만, 장애인 형제·자매에게 쏟아지는 관심으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거나 장애인 형제·자매를 돌봐야 한다는 압력을 거부하기도 한다(Ederly, 2022). 이러한 사실은 가족 내에서 장애인 가족 구성원을 위한 돌봄과 지원의 범주가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며 비장애인 가족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애인의 가족생활은 가족 외부의 상호작용 혹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장애인 형제와 자매들은 장애인이 가족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결혼 상대자의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하기도 하며, 장애인 어머니의 비장애인 자녀들은 부모를 잘 돌보라는 타인의 조언을 듣기도 한다(최복천·김유리, 2018; 송정문·양영희, 2021). 이러한 사회적 편견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장애인 가족에게 영향을 미친다. 장애인 구성원이나 가족들이 친구나 지인 혹은 낯선 사람과 같은 외부인을 만날 때, 이 외부인이 장애인 구성원을 어색해하거나 부정적인 언어와 행동을 표현한다면 장애인 구성원과 그 가족은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되거나 죄책감과 수치심이 강화된다(Birneanu & Baci, 2017).

이와 같이 장애인 가족의 생활은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 가족성원의 이해와 지원 및 돌봄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지나친 보호와 간섭 등이 공존한다. 이 과정에서 가족의 친밀성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장애인 구성원에 대한 가족의 보호와 간섭, 갈등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의 결과일 수 있다. 장애인은 질병 혹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도움이 필요하며, 가장 친밀한 관계인 가족들의 도움이 절대적이기도 하다(박병선·배성우, 2019). 보호자의 관점에서 장애인이 무언가를 원할 때, 장애인의 안전이나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지나치게 벗어난 행동까지 지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 장애인 가족은 장애인이 식사조절을 하지 못하고 과식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식사를 통제한다고 하였다(유하얀·김미옥, 2017; 이아영, 2016). 반면, 이러한 갈등은 장애인 가족의 '내면화된 비장애인 중심주의(internalized abelism)'로 인해 나타나기도 한다(Friedman, 2019). 예컨대, 장애 아동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옷을 입히거나 특별한 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장애가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한다(Neely-Barnes et al., 2010). 이 과정에서 장애인의 욕구와 그의 가족의 욕구가 서로 다르게 작동하여 갈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하듯이 장애인의 가족 내 갈등은 가족과의 일상생활 혹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가족과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갈등 경험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많지 않다. 이는 비장애인 가족 구성원을 장애인의 돌봄자 혹은 보호자로 설정함으로 인해 갈등의 당사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김성희 외, 2020). 하지만 장애인과 그의 가족은 가족 내 구성원으로 일상생활의 여러 영역을 공유한다. 따라서 가족 혹은 친인척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장애인의 갈등 경험은 장애인 개인 뿐 아니라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가족생활과 갈등이 장애와 관련하여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과 갈등을 겪는 이유가 장애 때문이 아니라고 인지하더라도 장애인의 시각에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시각에서 장애인 가족이 원하지 않는 도움과 지원을 제공했을 때 이는 장애인의 독립성(independence), 의존성(dependence),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Dunér & Olin, 2017). 또한 장애인 가족에게 장애인을 차별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장애인은 이를 차별적 상황이라고 인지할 수 있다. 이는 차별이 개인 간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오랜시간 누적되고 개인에게 체화된 정상, 비정상의 문제이기 때문이다(전지혜, 2009).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들이 가족들과의 갈등을 통해 주변화되는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장애인들이 가족과 공유하는 일상생활에서 항상 주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 가족의 돌봄과 지원에 대한 논의에서 보듯이 장애인들은 자신들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가족들을 통해 더 나은 삶의 만족도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장애를 이유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가족 내 갈등과 관련하여 장애에 대한 장애인 자신의 인식과 가족의 인식의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장애인 당사자가 어떤 경우에 장애로 인한 차별이나 배제, 소외로 인지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II.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의 대상은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들 9명이다. 연구자들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장애인의 생활세계’라는 주제로 SSK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생애과정의 경험과 장애가 생애과정에 미친 영향에 대해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면접은 대면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 도착하기 편한 장소를 확인하여 해당 장소에서 진행하였으며, 연구참여자별로 각각 2-3회 진행되었다. 심층면접을 위해 연구참여자는 연구자 일인과 일대일로 만나거나 연구보조원을 포함하여 2명의 연구진과 만나 면접을 진행하였다. 각 면접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면접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다. 이후 녹취전사를 통해 문서화하였다.

심층면접의 주요 내용은 교육, 노동, 친밀성, 가족,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생애사이다. 이 논문과 관련있는 심층면접의 세부내용으로 연구자들은 가족과의 상호작용과 일상생활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들의 원가족 혹은 결혼하거나 독립한 이후 현재 가족과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우선 가족들이 연구참여자의 일상생활과 생애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연구참여자를 어떻게 돌보고 지원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다음으로 장애로 인해 나타난 갈등 혹은 차별이 있었는지, 갈등이나 차별경험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가족들이 연구참여자의 장애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연구참여자 중 장애로 인한 갈등경험을 명확하게 명시한 9명의 면접내용을 분석자료로 선택하였다.

가족생활과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가족이 장애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일상생활과 교육 등을 위한 지원을 잘 해주었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고자

할 때 격려해주기도 하였으며, 이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인정과 지지가 있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은 지속적으로 혹은 간헐적으로 자신의 장애로 인해 가족들과 갈등이 있었다고 하였다. 일부 연구참여자는 가족 중 일부 혹은 직계가족이 아닌 친척과의 상호작용에서 차별과 갈등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연구자가 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장애가 원인이라고 대답하였으며 가족들이 생각하고 있는 장애의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연구참여자의 특성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9명의 연구참여자 중 여성이 7명이었고, 남성이 2명이었다. 연령은 주로 40, 50대가 많고 60대가 한 명, 30대가 한 명이다. 장애발생시점은 6명이 선천 장애, 1명이 중도 장애로 구분하였다. 선천 장애는 출생 당시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기보다 영유아기에 장애가 심해지거나 발생한 경우 표기하였다. 생애발달 과정에서 영유아기까지는 가족에의 의존정도가 높고 개인의 기억이 희미하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에게 장애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물어 영유아기부터 장애가 있었고, 본인도 장애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선천 장애로 표기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성별	연령	장애유형	장애발생시점	가족 동거여부
가	여성	50대	지체장애인	중도	독거
나	여성	60대	지체장애인	선천	남편, 자녀
다	여성	40대	지체장애인	중도	독거
라	남성	40대	지체장애인	선천	독거
마	여성	40대	시각장애인	선천	독거
바	여성	50대	지체장애인	선천	남편, 자녀
사	남성	40대	지체장애인	선천	부모님
아	여성	30대	시각장애인	선천	남자친구
자	여성	40대	시각장애인	중도	어머니

2. 분석방법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하여 문서화한 자료를 활용하여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주제분석은 자료를 검토하여 주제를 확인하고, 주제의 의미를 식별, 분석 및 해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주제분석은 다른 질적 방법론에 비해 인식론적으로 더 자유로우며 체계적이고 정형화된 분석방법이다(Braun and Clark, 2006). 연구자들은 장애인들이 경험한 가족 내 갈등을 통해 자신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서로 관련있는 주제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제분석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우선 연구자들은 녹취전사된 면접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며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면접자료에서 연구주제에 적합한 내용을 발견하면 해당 내용의 의미에 맞게 코딩하였다. 이후 각 연구자가 코딩한 내용을 교차하여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들이 가족들과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경험했던 갈등과 이 갈등이 자신의 장애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를 부여하였다. 다음으로 주제를 찾는 단계로 넘어가 코드와 인용문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코드들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범주화하고 하위주제를 도출하였다. 이후 각 주제에 배치된 코드와 그 내용이 적절한지 검토한 후 하위주제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하위주제들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여 상위주제를 생성하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각각의 주제들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주제에 대한 정의와 이름을 생성하고 주제에 포함된 하위주제들과 내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제에 포함된 개념들과 내용을 분석하여 논문으로 기술하는 작업을 하였다.

Ⅲ. 분석결과

주제분석을 통해 장애인이 가족생활에서 주변화되는 경험과 이에 따른 장애인식과 관련하여 나타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총 15개의 내용을 생성하였

으며, 7개의 하위주제, 4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표 2〉 분석결과

주제	하위주제	내용
한계화되는 장애인 삶의 경험	비장애인의 삶의 방식이 불가능한 존재	• 비장애인 연인이 장애인인 면접자를 사랑하는지 의심함 • 친척들이 장애인인 자신만 제외하고 다른 형제들에게 교육, 독립, 결혼 등에 대해 물음
	장애인의 삶의 방식 불인정	• 가족과 친척들은 장애인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음
무능력 혹은 의존적 존재로의 각인	독립적이거나 능력있는 삶이 불가능한 존재	• 장애인은 혼자 살기 어렵다고 생각해 어머니가 독립을 반대함 • 부모님이 자신에게 성적이나 진학여부를 물어보지 않는 이유를 물었을 때 장애로 인해 학업을 잘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대답함. • 맹학교로 전학시켜 달라는 요청에 어머니가 맹학교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간다고 하며 거부함 • 일반학교에서 공부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함
	가족에게 피해를 끼치는 존재	• 나의 장애 때문에 엄마가 고생한다고 여겨 엄마랑 같이 사는 것을 형제·자매들이 반대함 • 부모님이 나의 결혼은 배우자에게 피해만 입히는 일이라 생각해 결혼자체를 반대함
선택과 결정 과정에서의 주변화	가족 대소사 결정과정에서의 배제	• 형제·자매들이 부모돌봄, 대소사 부조금, 가족휴가 등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배제함 • 친척이 장례식이나 결혼식에 찾아올 수 없을 거라고 여겨 연락하지 않음
	당사자의 선택기회 박탈	• 올케가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결혼여부를 가족들과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함 • 엄마가 자신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전공과에 넣음
장애인 가족의 동반낙인을 통한 주변화	외부자의 시선에 의해 가족의 '부끄러움'으로 확장되는 장애	• 엄마가 타인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겨 장애인인 나와 함께 외출하는 것을 거부함 • 장애인인 것이 부끄러워 언니의 결혼식에 데리고 가지 않음

1. 한계화 되는 장애인 삶의 경험

때로 장애인들은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삶이 온전하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가족들과의 갈등 과정에서 장애인들은 가족들이 자신은 비장애인과 동일한 삶이 불가능한 존재로 보고 있으며, 장애인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1) 비장애인의 삶의 방식이 불가능한 존재

우선 장애인들은 개인의 생애과정에서 장애인은 결혼, 교육, 취업이라는 경험을 비장애인과 같은 방식으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여기고 있음을 간파한다. 예를 들어 흔히 결혼 적령기에 받을 수 있는 결혼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해당 연령대에 속해 있는 장애인에게는 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 생애사건은 비장애인의 일대기라고 여겨지며, 장애인은 장애라는 독특성으로 인해 비장애인과 같은 삶의 경험이 어렵다고 여겨진다.

연구참여자들 역시 비장애인인 가족들이 보편적으로 이러한 생애사건 특히 결혼이나 이성교제의 경험이 가능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였다. 우선 비장애인 남성과 교제를 하고 있는 ‘다’는 남자친구를 공개한 이후 가족들과 친척들로부터 그 남자친구가 연구참여자에게 진심으로 대하는지 의심을 받았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우리 삼촌이...그러니까 갑자기 남자친구 진짜 사랑하는 거 맞냐? 이렇게 그래서...제가 이제 (장애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죠...(‘다’).

‘다’는 현재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와 연인으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꼭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고 하였다. ‘다’는 청년기부터 결혼과 연애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은 결혼을 할 수도 있지만, 결혼으로 매이지 않는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도 고려중이라고 하였다. 반면 ‘다’의 남자친구는 자신과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다’의 생각을 존중하는 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가족들에게 알렸을 때, 가족들은 ‘다’와 그의 남자친구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라기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연애가 그 원인이라고 단정짓는 것 같다고 하였다.

‘다’는 가족들로부터 자신의 남자친구가 진심으로 ‘다’와 연애를 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지 의심을 받았다고 하였다. 급기야 ‘다’의 올케는 연구참여자의 남자친구가 진심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두 사람이 헤어질 것을 종용하는 가족회의를 소집했다고 하였다. 한국사회에서 가족이나 친인척이 결혼적령기인 성인에게 결혼을 권유하거나 결혼의사를 묻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다’의 가족들 역시 ‘다’의 교제와 결혼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였는데, 이에 대해 ‘다’는 비장애인인 남자친구가 장애인인 자신과 결혼을 진심으로 바랄 것이라고 보기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다’는 남자친구에 대한 가족의 인식은 결혼은 선택 혹은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는 결혼 가치관의 차이로 여기기보다 비장애인 남성이 장애인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장애인의 결혼이나 연애가 비장애인과 같을 수 없다는 인식은 가족들의 무관심에서도 드러난다. 한국사회에서 명절과 같이 가족이나 친척이 모인 자리에서 진학이나 교육, 취업, 결혼, 출산 등에 대한 생애사건에 대한 질문은 때로는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고 질문의 당사자에게는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뉴시스, 2023.9.22.). 다른 한편 가족이나 친척들이 이러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질문의 당사자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애인들은 가족이나 친척들이 또래의 형제·자매, 사촌들에게는 질문하고 자신에게는 질문하지 않을 때 자신을 장애인으로 보고 있음을 느낀다고 하였다. ‘라’는 명절 혹은 결혼식 때문에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자친구’가 있는지 혹은 결혼은 언제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동생에게만 하고 자신에게는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한다거나 여자친구가 생길 만한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지 않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없을 거고,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안 될 거라고들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제 동생 같은 경우는 “결혼을 안 하니?” “여자친구 있니?”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에서 그냥 열외되어 버리는 그런 느낌...(‘라’)

연애 혹은 결혼과 마찬가지로 교육과 학교생활은 누구나 보편타당하게 경험할 수 있다. 더욱이 교육성취가 개인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들의 학업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높은 성적을 위해 경제적, 정서적 자원을 아끼지 않게 하는 요소로 작동한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이러한 기대에서도 소외되는 경험을 한다. ‘마’의 엄마는 동생들에게 좋은 성적을 받아오라고 한 것과는 달리 장애가 있는 ‘마’에게는 학교 성적으로 혼낸 적이 없는데, 이는 ‘마’가 장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근데 엄마는...내가 장애인이니까...동생들은 시험성적이 안 좋거나 뭐 그러면 막 혼냈거든요...근데 나한테는 너 이렇게 뭐냐 나쁘게 점수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이렇게 나한테 혼내고 그런적이 없어...내가 물어봐...‘엄마. 왜 나도 점수가 나쁘게 이렇게 나오는데 왜 나는 안 혼내?’ 그러니까 너는 엄마가 알고 있잖아...너는 장애인이고....좀 기억력도 많이 딸라고 뭐...(‘마’)

즉, ‘마’는 엄마로부터 ‘학업을 열심히 하는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고 공부하고 싶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 장애인으로 주변화된다. 이는 ‘바’도 마찬가지이다. ‘바’의 어머니는 ‘바’가 학교에 다니는 것에 대해 무관심하였다고 하였다. ‘바’가 초등학교(초등학교)에 다닐동안 다른 부모들과 달리 학교에 방문하거나 찾아온 적이 없다고 하였다. 이는 집안이 가난해서이기도 했지만, 자신이 장애가 있기 때문이라고도 하였다. ‘바’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다고 하였다.

가족들과 교육에 대한 갈등을 경험하는 것은 때로 학교제도와 교육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도 하다. 현재의 학교제도와 교육시스템은 비장애인 학생들에게 적용가능한 체계와 방식으로 구축되어 있다. 반면 시각장애가 있는 ‘마’는 자신이 볼 수 있는 교과서나 교재가 많지 않았다고 하였다. 자신도 공부를 하고 싶었으나 교과서나 학습교재의 글자는 너무 작고 많은 글씨가 있었다고 하였다. 교재의 면면을 확대복사하여 보기도 했

으나 비용 때문에 자신이 가진 주요 교제들만 확대했다고 하였다. 즉, ‘마’의 엄마는 비장애인에게 최적화된 학교를 고려하지 않고, 이를 시력이 나쁜 ‘마’ 개인의 문제로 한정지어 ‘마’의 교육경험을 한계화한다.

이와 같이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취업, 결혼 등의 생애사건은 비장애인의 시각에 맞춰져 있다. 장애인들은 이러한 시각이 자신과 가장 가까워서 상호작용하는 가족들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점에서 가족들은 장애인과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비장애인의 친밀성과 진정성을 의심한다. 실제로 비장애인과 결혼생활이 가능한가에 대한 가족들의 의심이 발현되는 순간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보통의 생애경험을 할 수 없는 집단으로 경계지워진다. 즉, 이들은 아들, 딸, 조카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 구성원의 위치에서 벗어나 ‘장애인’이라는 집단으로만 구별된다. 이들이 여태까지 경험했던 혹은 경험했을 수도 있는 연애, 결혼에 대한 고민, 학업의 어려움은 이들이 경험할 수 없거나 혹은 독특하거나 우수한 소수의 장애인만의 역경 극복담으로 재현된다(김세령·남세현, 2020; 나대웅, 2023).

2) 장애인의 삶의 방식 불인정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의 삶을 살수 없을 것이라는 가족의 인식을 알아차린다. 신체의 차이라는 측면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가족들과 비슷한 정도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기도 한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점에 있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구성과 생애사건, 생애과정은 비장애인과 다를 수 있으나 다른 자체가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별개의 정체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긴다(‘다’).

내가 장애가 있으면 자기네들하고 별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네들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는거지...비장애인으로서의 그 삶을 그대로...‘왜 재는 저런 식으로 안사니?’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잖아요(‘다’)

지체장애인인 ‘나’와 ‘다’ 역시 일상적인 이동이나 노동을 하는 측면에 있어 자신들이 비장애인만큼 빠르게 움직이거나 장시간 노동을 할만큼 체력이 강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이나 이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이는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들을 기준으로 돌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와 ‘라’는 가족들이 자신의 결혼이나 교육, 직업선택에 있어 묻지 않거나 비난하는 것은 자신들의 결혼과 교육, 직업생활이 장애인으로서의 신체 조건에 맞춰질 수 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노동이나 교육, 결혼 과정에 있어 장애인들의 정체성과 경험은 비장애인들과는 다르다(문영민·박성이·강혜린, 2019). Keller와 Galgay(2010)은 이에 대해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의 삶이 일반적(normal)이지 않고 오로지 장애인 부각해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장애인의 경험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개인 정체성 거부(denial of personal identity)’라고 명명하였다(Keller & Galgay, 2010). 장애인은 생애경험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내면화한 장애인의 가족들이 장애인의 삶과 정체성, 경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장애인들은 가족 내부에서 주변화되는 경험을 한다.

2. 무능력 혹은 의존적 존재로의 각인

위에서 기술한 장애인 삶 혹은 경험의 비가시화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신체 간 차이를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하지만 장애인의 삶이 비가시화되었다고 하여 단순히 이들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장애인은 장애가 부각되어 모든 면에서 무능력하다고 인식된다(Keller & Galgay, 2010; 웬텔, 2013). 무능력은 단순히 능력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음으로 독립적인 삶이 불가능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존재로 여겨진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장애인 가족은 장애인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여 때로 과도한 친절과 간섭을 베풀기도 한다.

1) 독립적이거나 능력있는 삶이 불가능한 존재

장애인의 가족이 장애인을 무능력한 존재로 본다는 것은 장애인의 어떤 시도들이 실패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의존적 존재이며,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존재로 주변화된다. 연구참여자들은 가족들이 자기 자신을 무능력한 존재로 보며, 이는 혼자 외출을 해야 하는 상황부터 결혼이나 진학과 같은 중요한 결정에까지 다양하게 적용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결혼을 결심하고 알렸을 때 제대로 결혼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인한 반대('나'), 자녀교육에 대한 무관심이나 독립의 반대('마'), 특수학교로의 전학 반대('아') 등으로 나타난다. 연구참여자 중 일부는 결혼을 하겠다고 알렸을 때 연구참여자가 결혼생활을 잘 해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개인은 결혼을 통해 배우자 혹은 배우자 가정과의 의견조율 및 가정관리, 생계부양, 가사관리, 자녀돌봄 등 그 동안 하지 않았던 다양한 역할을 새로 부여받는다. 연구참여자의 가족은 장애인인 '나'가 이러한 역할을 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하였다.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뭐...결혼을 하냐고....(결혼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더라는 얘기도 많이 하셨고('나')

어머니, 엄마가 '결혼을' 할 수 없을 거다' 막 이렇게 말하니까('마')

다른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가족들이 여행을 가거나 외출을 할 때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남아 있으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나', '라', '아'). 외출이나 이동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장애로 이동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비장애인의 신체를 따라가지 못하는 장애인의 신체에 대한 불편함을 먼저 지적한다는 것이다. 이 때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이 함께 가고 싶은지 아니면 남아 있고 싶은지에 대한 의견을

먼저 묻지 않았다고 하였다.

선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연구참여자 중 일반학교를 다닌 사람은 ‘라’, ‘바’, ‘사’, ‘아’였다. 이들 중 일반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가족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다고 한 사람은 ‘라’와 ‘사’이다. ‘아’는 그나마 어렸을 때는 시력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같이 논다거나 학업을 쫓아가는 것이 가능했으나 시력이 점점 낮아지고 더 많이 보이지 않게 되면서 학업을 따라가기가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하였다. 이에 맹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으나 ‘아’의 부모님은 맹학교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절당했다고 하였다.

저희 엄마도 그런 말실수를 하셨거든요. 이제 특수학교나 맹학교를 보내달라고 했을 때... 제가 중학생 때 엄마가 ‘그런 데는 모자란 애들만 가는 데야 그런 데는 너희 오빠처럼 의사소통 안 되고 바보들만 다니는 데야 네가 왜 거길 가.’(‘아’)

반면 맹학교를 다닌 ‘마’는 일반학교로 옮겨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하였다. ‘마’는 맹학교보다 일반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더 많다고 하였다. 자신은 공부 욕심이 있었고 좋은 대학교 가고 싶다고 생각해서, 부모님에게 일반학교로 옮겨달라고 했으나 부모님은 장애인인 ‘마’가 학업을 따라가기 힘들 것이므로 맹학교에 다니도록 권유했다고 응답하였다. 물론 시력이 나쁜 시각장애인이 상대적으로 시력이 좋은 비장애인에게 맞춰져 있는 교재를 읽거나 공부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는 장애인이 무능력해서라기보다 일반학교의 건물이나 시설이 비장애인의 신체적 조건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가족들이 이를 간과하는 순간 장애인은 가족들에 의해 무능력하거나 독립적인 삶이 불가능한 존재로 주변화됨을 경험한다. 이와 같이 장애인들은 장애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인생의 선택에 대해 비장애인 가족들과는 다르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신체의 차이로 인해 비장애인과 다른 것, 그래서 비장애

인에 적합한 생애 경험을 거치지 않는 것을 그저 신체의 차이로 인한 ‘불편함’이라고 호명하였다. 반면, 이들의 가족은 장애인들이 해당 사건을 잘 해낼 수 없을 것이라는 ‘무능력’을 장애인의 속성으로 본다고 하였다.

2) 가족에게 피해를 끼치는 존재

장애인 역시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도움은 가족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로 보이기도 한다. 장애인이 피해를 입힌다고 여겨지는 대상은 가족 뿐 아니라 이들의 친구, 결혼대상자 등 이들의 전 사회적 관계에 걸쳐 있다.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는 것은 그 가족 구성원의 신체적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피해를 준다는 부정적 이미지로 작동한다. 이러한 점에서 가족들은 장애인들이 가족들 혹은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도움이나 지원 받아야 할 상황을 말할 때 가족이나 타인이 장애인 때문에 ‘고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는 일로 표현하며 장애인의 외출과 친구들과의 교제를 제한하기도 한다.

특히 엄마 때문에 제일 그래요. ‘너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네 엄마만 되니?’....자기네들(형제,자매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면 당연히 싫어하죠.(‘가’)

내가 이제 20살 넘어서 친구들이 많이 사귀고 종교 생활하면서 치마 입고 다니면.... 너 귀걸이 같은 거 막하고 이제 이려고 다니잖아요. (엄마가) ‘그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하지 말라고 막 그러고 남한테 왜 신세 져가면서 다니냐고’... 막 이려고....(‘나’)

“가’는 교통사고 이후’ 지체장애인이 되었으며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어 혼자 생활하게 되자 어머니에게 같이 살자고 요청하였다. 이에 ‘가’

의 형제, 자매들은 ‘가’가 어머니를 고생시키고, 더 나아가 다른 가족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로 여긴다고 하였다. ‘나’ 역시 교회에 나가거나 친구들과 만나기 위해 외출하고 싶다고 어머니에게 요청하였으나 ‘나’의 이야기는 묵살된 채 남에게 신세지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다.

또한 ‘나’와 ‘바’는 비장애인과 결혼을 결정하고 부모님께 허락을 받는 과정에서 비장애인과 결혼하는 것은 상대와 그들의 가족에게 ‘신세’지는 일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장애인의 결혼 당사자로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을 권유하는 가족의 양상과는 다른 것들이다(송승연·배진영·윤삼호, 2018). 이와 같이 장애인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욕구를 표현할 때 가족들은 이것을 장애인의 욕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피해로 이해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으로 주변화한다.

3. 선택과 결정 과정에서의 주변화

1) 가족 대소사 결정과정에서의 배제

장애인들이 가족 내에서 종종 자신과 관련된 일이나 가족 전체와 관련된 일을 결정하는 데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배제는 가족 내 대소사를 결정하는데 장애인에게 알리지 않거나 친인척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공동으로 낼 부조금 금액을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의 결정이다. 이러한 결정과정은 일회성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선택과 결정과정에서 일회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배제되는 경험을 하며, 자신을 동등한 가족이 아닌 의사를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여겨진다고 하였다.

가족 단체로 계획을 짤 때 그럴 때 나를 배제하고...집안에 중요한 대소사가 있으면 나는 몰라요. 나중에 통보받고...이제 우리 친척들 누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얼마씩 내자 이것을 자기네들이 다 결정을 한 다음에

나한테 얼마 내라 통보가 되는 것도 있고....어쨌거나 자기네들끼리 단
합을 많이 해(‘가’)

물론 ‘가’와 같이 친척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부조를 얼마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혹은 그 밖의 문제들에 대해 가족 내 분위기에 따라 가족 일부가 결정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장남이나 장녀 혹은 부모님이 결정하는 것을 손밑 형제·자매들이나 자녀들이 그대로 따를 수도 있다. 하지만 ‘가’는 위와 같은 가족 대소사 결정에의 배제를 자신의 장애 때문이라고 하였다. ‘가’는 자신이 사고로 지체장애인이 되기 전까지 형제·자매들이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고, 자신 역시 결정을 하는데 의견을 낼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 다른 사례로는 친척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초대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친척이 자신의 동생에게 장례식을 알리면서 자신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라’는 자신의 친척이 자신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음에도 ‘마’는 당연히 올 수 없을 것이고 오더라도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하였다. ‘라’는 한편으로 친척의 배려라고 하면서도 그러한 방식의 배려는 장애인인 자신을 배제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최근에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건 뭐냐하면 음.... 결혼식이었는지 장례식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장례식이었던 것 같은데, 연락이 저희 막 내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누가 애기를 돌아가셨다고 하더라... “근데 (너는) 못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그 누님은 제 연락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하셔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애는 당연히 장례식 같은 데 오기 불편하고, 와서 하는 것도 불편하니까” 배제되는 듯한 느낌...(‘라’)

2) 당사자의 선택기회 박탈

선택과 결정과정에서의 배제는 가족의 대소사나 친인척과 관련된 일 뿐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된 켄대, 시각장애인인 ‘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하였다. 하지만 ‘마’의 엄마는 ‘마’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전공과¹⁾로 원서를 넣어 취업을 위한 공부를 하도록 하였다.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엄마가요. 그냥 전공과에 넣어버렸어요. (연구자: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네. 내 의사도 (상관)없이...그래서 전공과 그냥 입학을 시켜버리니까...‘너 정말 전공과 가야 돼’ 그러면서 입학을 시켜 버리고...나는 진짜 내 의사표현, 의사도 없이 막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니까(‘마’)

상급학교로의 진학은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건이다. 물론 부모들 중에는 교육이나 진학에 대해 자녀의 의사보다 부모로서의 결정을 더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마’의 경우 시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더 공부하고 싶은 욕구나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의사를 전달하고 부모를 설득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였다.

결혼 역시 개인의 생애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논의하는 자리에 장애인 당사자를 배제하기도 한다. ‘다’는 비장애인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고민하던 중 자신을 빼놓고 가족회의가 열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의 올케가 ‘다’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혼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가족들을 소집하였다. 이 회의를 하기 위해 가족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 ‘다’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 때 한번 가족회를 열었는데. 저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이제 소집해가지고... 남자친구를 못 사귀게 하던가 아니면 결혼을 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다’)

1) 전공과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맹학교 직업반으로서 시각중복장애인과 같은 중증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인 자립생활전공과, 중도 시각장애인들이 안마 분야로 직업재활을 달성하도록 하는 재활전공과, 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의료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인 전문전공과가 있다(서원선·김훈·서옥영, 2017). 즉, 맹학교에 다니던 전공과로 진학한다는 것은 자립생활교사나 직업으로서 안마사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는 결혼이 자신에게 더 좋은 선택일지 아니면 혼자 사는 것이 나을지 고민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며 자신의 남자친구는 단지 자신의 의사를 존중하는 편이라고 하였다. ‘마’는 결혼을 하고 안하고는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견은 지속적으로 묵살되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울케를 포함한 가족들의 의견이 ‘다’의 장애 때문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물었다. ‘다’는 자신의 가족들은 결혼을 필수라고 보는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 자신이 장애가 없었다면 자신의 의견에 심하게 반대하기보다 존중했을 것 같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면접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가족들이 가족과 관련된 일 혹은 자신의 일이라 하더라도 선택과 결정과정에서 자신은 동등한 권한을 가진 구성원으로 여기지 않으며, 좋은 결정 혹은 최선을 결정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주변화한다고 인식한다. 이들은 결정과정에서 자신들을 배제하는 이유로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이 더 낫다는 편견에 의한 것이며 따라서 의사결정이나 선택을 장애인보다 더 잘 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 더 나아가 장애인들은 자신의 가족들이 장애인인 자신의 일에 대해 간섭과 통제를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것처럼 여긴다고 하였다.

제일 먼저 더 느끼는 건 가족들에 대한 거...내가 장애를 겪었기 때문에 자기가 다르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가족들의 간섭과...나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런거 있잖아요.(‘가’)

장애인들은 가족 내 선택과 결정에서 주변화되는 이유로 가족들의 장애인에 대한 두 가지 편견이 작용함을 보여준다. 첫째,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장애인은 무능하거나 비장애인의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장애인과 관련된 사항을 의논하지 않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이 가족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들어보지 않고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하여 이들은 ‘내가 힘들까봐’ 혹은 ‘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을 하였다. 장애인들이 결혼이나 교육, 취업을 하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이며 역경을 극복한 몇 명 장애

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장애인 가족을 선택과 결정과정에서 주변화하는 요소로 작동한다. 둘째, 장애인들은 선택과 결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라는 인식이 있다. 가족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일부 연구 참여자의 경우 장애를 가지게 된 이후 가족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데 지속적으로 배제되어 왔으며, 장애를 유발하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가족들이 자신의 의견을 물었다고 한 부분에서도 알 수 있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지체 혹은 시각장애인으로서 신체장애가 있을 뿐 사고능력의 차이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결정과정에서 배제되는 방식으로 주변화된다. 이는 신체적 차이가 장애인의 지적 차이로 이어진다는 확산효과(spread effect)를 내면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Keller & Galgay, 2010).

4. 장애인 가족의 동반 낙인을 통한 주변화

1) 외부의 시선에 의해 가족의 '부끄러움'으로 확장되는 장애

장애는 종종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가족의 문제로 여겨진다. 이는 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때 이에 대한 시선은 장애인의 가족에게까지 따라붙는 경우가 생긴다. 상황에 따라 가족 내에 장애인이 있다는 것 자체는 가족의 문제, 부끄러움으로 전환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종종 가족들로부터 외출 혹은 타인과의 만남을 제제 받는데, 이는 가족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근데 자기 만딸이 장애인이다... 업고 나가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것도 싫었을 거 아니예요. 얼마나 자존심에 금이 갔겠어... 참 매력있다...멋있다... 막 이런 말만 듣다가..우리 엄마가(‘나’).

그때 이제 한참 그 당시 때는 장애가 있는 집안의 사람들을 숨기고 막 이럴 때라 언니 결혼식에 못 갔어요. 언니가 결혼한 것도 나중에 알고, 비디오로만 봤어요.(‘아’)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다는 것은 이들 가족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장애인 자녀 혹은 형제자매는 다른 가족 구성원에 비해 더 많은 돌봄과 지원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때로 장애인 구성원을 중심으로 가족의 삶이 재구성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가족 역시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예컨대, 장애인 자녀를 데리고 카페에 들어갈 때 ‘영업에 방해 된다’며 나갈 것을 요청받거나 학교에서 장애인 학생과 비장애인 학생 간 폭력이 발생할 경우 장애인 학생에게 전학을 권유하기도 한다(한국일보 2018.6.5.). 장애를 가진 자녀 출산은 가족의 잘못, 특히 출산관리를 잘못한 어머니의 잘못이라는 담론은 가족의 장애에 대한 책임을 가족에게 지우기도 한다(이동옥, 2010).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의 가족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서기도 한다. 하지만 장애인 가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가족의 단위로 넘어오며 장애인 구성원을 부끄러워하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IV. 결론

이 연구는 사적 공간인 가족 내에서 장애인이 주변화되는 경험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분석결과, 장애인의 가족 내 주변화는 비장애인의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라는 편견, 장애인의 무능력, 가족 대소사 혹은 장애인과 관련된 선택과 결정에서의 배제, 외부자에 의한 가족의 부끄러움으로 여겨짐 등으로 나타난다. 장애인은 가족으로부터 결혼이나 진학, 연애, 독립 등 비장애인과의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며, 무능력하고 의존적인 존재, 가족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위치된다. 또한 장애인은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정이나 가족관련 의사결정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기도 하며, 장애를 부끄러워하는 가족들로부터 함께 외출을 거부당하기도 한다. 이 결과들은 장애인의 가족이 비장애 중심주의(ableism) 가치관을 내면화할 때 장애인은 동등한 가족구성원이 아닌 ‘장애인’으로 주변화됨을 보여

준다. 가족들은 장애인을 가장 가까이서 보며 이들을 잘 이해하는 집단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장애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장애인들은 가족들에 의해 무능력하고 피해 입히는 존재로 주변화 될 때, 가족들이 자신에게 무관심하며 고립된 존재로 여긴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가족으로부터 주변화 되는 경험을 할 때 고립감, 자신을 이해하기 못함,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사적 영역인 가족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장애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을 경험한 장애인 당사자의 인식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장애인 차별에 대한 연구의 관점을 확장하였다. 대부분의 장애인 차별에 관한 연구는 양적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이 차별받는 정도를 측정하거나 차별이 장애인의 정신건강이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다(노승현·황환, 2010; 서원선·김훈·서옥영, 2017; 김성희 외, 2020). 장애인의 차별을 다룬 질적 연구들은 학교, 복지서비스, 의료,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차별을 깊이있게 분석하였으나 사적영역인 가족 내에서의 갈등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장애인 가족은 장애인을 열심히 돌보는 사람들로 자원화되거나 혹은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낙인의 대상이 되거나 피해자화되기도 한다(이복실·김용득, 2012; 이아영, 2016; 최복천·김유리, 2018; Ederly, 2022). 반면 이 연구는 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가족과의 동학과 경험을 분석하여 갈등을 자신의 장애와 어떻게 연관지어 생각했는지 밝혀냈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물론 가족 내 주변화 경험을 장애인 당사자만의 관점에서 기술하였기에 실제 상황에서 상호작용한 가족들의 의도는 장애에 대한 차별이나 배제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에 의해 지각된 차별이나 배제 혹은 주변화 경험은 사회적, 문화적,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하며, 장애인 스스로 차별이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전지혜, 2009). 장애인 당사자가 미시적 상호작용 중에 차별이나 배제를 인지하고 주변화된다고 느꼈을 때, 그것이 차별이나 배제가 아니며 주변화되지 않았다고 반박할 근거 역시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누군가의 주장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연구가 장애인 당사자

관점을 활용할 때 장애인에 의해 지각된 차별과 배제를 분석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둘째, 장애인의 가족 내 주변화 경험을 통해 장애인 가족 특성의 다양성을 고찰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장애인 가족은 거시적인 사회구조와 문화의 영향을 받은 존재로서 장애인에게 도움과 지원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장애인의 주변화를 야기하거나 갈등을 겪는 존재이기도 하다. 고프만은 소수자를 많이 접한 사람일수록 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소수자를 잘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장애인 가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고프만의 관점을 지지한다(고프만, 2018; 최복천·김유리, 2018; 서원선·서옥영·이소원, 2019; Ederly, 2022). 동시에 사회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 존재로서 장애인들의 가족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 지나친 간섭 등을 통해 장애인의 주변화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는 가족이라는 친밀한 관계가 지지와 인정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삶을 지원하는 존재인 동시에 내면화된 장애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소외와 배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이중적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미시적인 차원에서 장애인의 주변화를 야기하는 사회적 가치관이 개인의 인식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인식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가족과의 갈등을 분석하고 장애인의 가족 내 주변화 경험을 통해 가족의 이중적 인식을 보여주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가족 내 갈등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음에도 가족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관점이 반영되었다면 당사자들 간의 의견의 차이 혹은 인식의 차이가 더 명확하게 드러났을 것이다.

둘째, 장애인의 가족 내 주변화 경험을 드러내고 있으나 면접 대상자의 한계로 지체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을 뿐 다른 장애유형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 장애라는 큰 틀에서 대상자들은 분석의 대상이 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나 지체장애인이거나 시각장애인 혹은 청각장애인이 경

험하는 주변화 경험은 다를 수 있다. 또한 정신장애인이거나 뇌병변 장애인 혹은 단일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역시 가족 내 주변화 경험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장애의 유형이나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주변화 경험을 다루고 있지 못하며, 추후 과제를 통해 연구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2024년 2월 8일 접수
2024년 2월 27일 수정 완료
2024년 2월 20일 게재 확정

참고문헌

- 구정아·박은혜·이영선, 2014. “지체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고찰: 주거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7(2): 93-112.
- 김교연, 2011. “장애청소년의 자기결정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3(4): 5-31.
- 김성희 외, 2020.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 김세령·남세현, 2020. “영화 <말아톤>에 재현된 자폐성 장애인 연구.” 이화
어문학회 51: 440-477.
- 김지수·서경혜, 2019. “탈북학생이 남한학교의 학습과정에서 겪는 주변화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교육연구논총 40(3): 131-160.
- 나대웅, 2023. “영상 미디어에서의 장애에 대한 상품화와 인권문제: 영웅적
장애인 재현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연구 14(2): 98-123.
- 남상우, 2004. “일간신문 스포츠 지면에 나타난 여성선수 사진의 내용 및 의
미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3(4): 101-114.
- 노승현·황환, 2010. “자기선택과 지역사회통합의 기회가 성인 지적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연구 17(2): 233-257.
- 문영민·박송이·강혜린, 2019. “장애인 대학원생의 차별 및 대처 경험 연구:
성과주의 공간의 미시적 차별에 살아남기.”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3(3): 123-150.
- 박병선·배성우, 2019.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정신건강 전문가가 인식하는
자기결정과 동기에 관한 연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7(1): 89-118.
- 박종은·강상경, 2021. “장애인의 일상생활 차별경험 궤적과 관련 요인에 대
한 연구.”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8(1): 157-185.
- 서원선·서옥영·이소원, 2019.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장애인복지연구 10(2): 85-114.
- 서원선·김훈·서옥영, 2017.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송승연·배진영·윤삼호. 2018.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 차별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학 3(1): 97-132.
- 신경아. 2015. “시간선택제 여성노동자의 조직 내 주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학 31(2): 131-179.
- 신유리·김정석. 2015.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30: 97-115.
- 신유리·김정석·허준기. 2017. “장애인 복지에서 사회적시민권의 이론적 적용 가능성 고찰: 자기결정권, 사회적배제, 사회적 포함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18(1): 43-75.
- 신은희·이영철. 2008. “장애인의 자기결정: 의미와 오해” 정신지체연구 10(1): 131-159.
- 유하얀·김미옥. 2017. “장애인거주시설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지원경험”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1(3): 69-94.
- 이동옥. 2010. “한국의 장애인 돌봄제도와 모성담론에 관한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14. 111-140.
- 이미림. 2021. “장애인의 차별경험과 대처경험에 대한 탐색 연구” 공공사회연구 11(1): 85-124.
- 이복실·김용득. 2012. “생활시설 성인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장애인복지학 18: 65-84.
- 이숙향·안혜신·송명숙·홍주희. 2019. “지체 및 시각·청각 장애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및 자기결정 경험을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 및 지원요구 고찰”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2(4): 67-101.
- 이아영. 2016. “중증 지적장애인 자기결정 과정의 다양성: 주요돌봄자와의 상호작용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33: 35-66.
- 이채식·이성규·김명식. 2009.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이 자기결정권에 미치는 영향” 재활복지 13(1): 111-134.
- 전지혜. 2009. “장애인에 의해 ‘지각된 차별’의 개념화와 법적 적용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0(2): 399-425.

- 차노휘. 2021. “시시포스의 일상, 지체장애인의 내재화된 낙인 견디기” 문화와융합 43(6): 845-864.
- 최복천·김유리. 2018. “성인기 장애인의 형제자매가 인식하는 형제관계 및 그 의미”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1(2): 159-183.
- 하홍규. 2023. “시각과 혐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위반실험” 사회와이론 46: 423.454.
- 고프만(Erving Goffman). 2018. 「스티그마: 장애의 세계와 사회적응」 윤선길·정기현 역. 한신대학교출판부.
- 웬델(Susan Wendell). 2013. 「거부당한 몸」. 강진영·김은정·황진영 역. 그린비.
- Birneanu, A. and E Baciuc. 2017. “Disabled individuals’ family relationships: practical, social and emotional perspectiv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Science and Humanity 7(9):655-660.
- Braun, V. and V. Clark.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 Cook, C. C., E. J. Erwin, and C. J. Weigel. 2008. “Understanding self-determination and families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home environments”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31(1): 22-43.
- Cuttler, S. J. and Malone, R. W, 2005. “Using marginalization theory to examine pedestrian injury” Advanced in Nursing Science 28(3): 278-286.
- Duncan, M. C. 1990. “Sports photographs and sexual difference: Images of women and men in the 1984 and 1988 Olympic Games” Sociology of Sport Journal 5: 1-21.
- Dunér, A. and Olin, E. 2017. “Personal assistance from family members as an unwanted situation, an optional solution or an additional

- good? The Swedish example” *Disability & Society* 33(1): 1-19.
- Edery, C. 2022. Putting the pieces together: An adult perspective on growing up with a sibling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Master of Arts in Clinical Psychology. University of the Withwatersrand (Unpublished).
- Friedman, C. 2019. “Mapping ableism: A two-dimensional model of explicit and implicit disability attitudes” *Canadian Journal of Disability Studies* 8(3): 95-120.
- Hall, J. M., Stevens, P. E., and Meleis, A. I. 1994. “Marginalization: A guiding concept for valuing diversity in nursing knowledge development” *Advanced in Nursing Science* 16(4): 23-41.
- Keller R. M. and Galgay. 2010. “Microaggressive experienc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edited by Sue, D. W. *Microaggressions and Marginality*. John Wiley & Sons, inc.,: New Jersey.
- Martin, J. and L. Marshall. 1995. “Choicemaker: A comprehensive self-determination transition program” *Intervention in School and Clinic* 30: 147-156.
- Messiou, K. 2006. “Understanding marginalization in education: The voice of children” *European Journal of Phychology of Education*. 21(3): 305-318.
- Park, R. E. 1928. “Human migration and the marginal man”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33(6): 881-893.
- Wehmeyer. L. M. 2014. “Self-Determination: A family affair” *Family Relations* 63: 178-184.
- 경향신문(2024.2.4.). “아직도 이런 일이...” 휠체어 못 들어와 “출입 거부한 음식점”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2041518001#c2b>).

- 국립국어원 홈페이지(<https://www.korean.go.kr/front/search/searchAllList.do>).
뉴시스(2023.9.22.). “추석 ‘취업·결혼’ 언급 금지…10명 중 3명 “스트레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30922_0002461092).
- 시사위크(2020.12.7.). “편리한 디지털 세상?...소외된 장애인들 어쩌나” (<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901>).
- 한겨레(2018.3.15.).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에서 또 사망사고...유족 “공사 책임 물어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6231.html).
- 한국일보(2018.6.5.). ““발달장애인을 왜 데리고 나와서...” 가족에게 쏟아지는 핀잔과 눈총”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6031926750172>).
- 한국일보(2023.1.10.). ““저상버스’도 ‘장애인 콜택시’도 여전히 갈 길이 멍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10916330005812>).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marginalization within the family of people with disability

Jeoung Jiyoun
research fellow, co-research coop

Kim, Cheong-Seok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Dongguk University

Heo JunGi
Researcher, Gwangju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Abstract

Previous literature on the famili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has focused on the problems of social exclusion, discrimination, and care that they experience. As the daily interactions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family members are considered a private sphere of life, aspects of conflict and adaptation within the family have not received sufficient social and academic attenti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discrimin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family members in their daily lives. Famili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help and support the disabled person. However, when they internalize meritocratic values, discriminatory attitudes and behavior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sometimes appear at the same time. This is because the family of a disabled person is the group that experiences disability most closely and has a rich understanding of disability but is also influenced by the social structure and culture that operates around non-disabled people. Within this, people with disabilities experience subtle discrimination and marginalization in their daily relationships with non-disabled family members. This study conducted a thematic analysis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nine physically and visually impaired people. The analysis revealed that disabled people are

not recognized by their families as capable of leading the same lives as non-disabled people, such as marriage, higher education, dating, and independence, and are positioned as incompetent and dependent beings who need to be helped by their families. In addition, disabled people are constantly excluded from decisions that affect them or their families and are sometimes refused permission to go out with their families, who are ashamed of their disabilities. These findings show that when the family of a disabled person internalizes non-disability-centered values, the disabled person is marginalized as a 'disabled' person rather than as an equal family member. By showing that when disabled people try to participate in society, marginalization occurs in everyday life, even among non-disabled family members to whom they are most closely related, it shows how the social exclusion experienced by disabled people is manifested in even the most basic and everyday aspects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Key Words: disability family, marginalization, Ableism, thematic analysis

『한국사회』 투고 및 발행규정

제 1 조 (발간)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는 사회과학 분야 전문학술지인 <한국사회>라는 학술지를 발간한다.

제 2 조 (목적) <한국사회>는 한국사회가 지니는 다양한 접근방법에 입각하여 학제간의 유기적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사회과학 기초이론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한국 사회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공헌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발간회수 및 일자) <한국사회>는 연 2회, 2월 28일과 8월 30일에 발간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특집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 4 조 (편집위원회) 본 학술지의 발행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5 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편집위원장은 한국사회연구소 운영위원 중 1인이 겸임하며, 10여명 내외의 편집위원을 둔다. 편집위원회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 6 조 (편집위원회의 위촉) 편집위원은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업적에 있어서 탁월하며,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의 제반학술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공로가 많은 사람을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7 조 (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학술지의 편집방향의 결정 및 발행과 관련한 예산의 집회
2. 논문심사의 방법 및 논문심사위원의 결정, 최종 게재여부의 결정
3. 특집호의 발행 및 내용의 결정
4. 본 학술지의 대내외적 홍보

제 8 조 (편집위원회의 개최) 편집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논문 심사) 편집위원회에서 수행하는 논문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원고접수는 연중 수시로 실시하나, 발행일로부터 3개월 전 원고모

- 집 및 발행과 관련된 공고를 한다.
- 2.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독창성을 갖는 원고이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에 투고되거나 발표된 원고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해 유관분야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위촉한다. 심사의 위촉은 연중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 4. 신청된 논문은 3인 이상의 전문영역 학자들에 의하여 게재 여부가 결정된다. 심사위원은 게재 가(O), 재심(△), 게재 부적합(X) 등으로 논문을 평가한다.
 - 5. 심사위원의 세부 심사기준은 ① 연구목적의 명료성, ② 분석의 엄밀성, ③ 이론적용의 타당성, ④ 연구방법의 타당성, ⑤ 논의 및 구성의 논리성, ⑥ 관련문헌의 취급, ⑦ 연구결과의 의의, ⑧ 문장의 가독성, ⑨ 논문의 독창성, ⑩ 논문제목의 적합성, ⑪ 연구주제의 중요성, ⑫ 이론적 기여도, ⑬ 방법론적 기여도, ⑭ 연구결과의 실용성 등으로 나뉘어진다.
 - 6. 투고 원고에 대한 최종판정은 아래의 심사판정기준을 따라 게재 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초심결과			판정	게재 및 재심 과정
○	○	○		게재확정
○	○	△	게재가능	수정권고후 게재
○	○	X		수정을 전제로 게재
○	△	△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1인 이상이 게재 가이면 게재가능
○	△	X	재심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게재 가이면 게재가능
△	△	X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2인 모두가 게재 가이면 게재
X	X	X		
X	X	△	게재불가	
X	X	○		

7. 재심 판정된 논문의 투고자가 재심에 응하지 않기로 알려진 경우 또는 재심용 원고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기한(재심판정일로부터 최대 1년) 내에 투고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8. 논문의 접수, 심사의뢰, 최종원고 제출 등은 모두 전자메일을 이용한다.

제 10 조 (이의신청)

1. 논문 투고자가 게재불가 판정 결과에 불응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2.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이의 제기된 심사논문의 원문, 심사 의견, 이의 제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편집위원회는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을 대신하여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사를 진행한다. 이때 다시 한번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지면 저자는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제 11 조 (투고 규정) <한국사회>에 게재될 논문은 ‘<한국사회> 원고 작성 및 제출요강’에 맞추어 작성되어야 한다.

제 12 조 (게재) 원고분량은 원고지 150매 내외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 13 조 (저작권 활용동의 절차 및 권한명세)

1. 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규정을 확인하여 이를 준수하고 연구윤리준수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게재확정이 된 논문의 경우, 최종 수정본을 제출할 때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사회연구소에 속한다. 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한

국사회연구소에 귀속되며, 원고의 투고로서 논문의 저작권을 한국 사회연구소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제 14 조 (표절 방지)

논문 투고자는 논문 게재 확정 시, 최종본을 제출하기 전에 표절방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논문의 표절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표절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15 조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1/3이상의 발의와 편집위원회 재직위원 2/3의 찬성으로 한다.

『한국사회』 연구윤리규정

2008. 7. 1 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의 목적은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전문학술지인 한국사회 (이하 본 학술지)에 투고되었거나 게재된 논문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시 이에 대한 검증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연구윤리)

1. (연구의 객관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학문적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의도적으로 연구결과 등을 누락, 추가, 변형해서는 안 된다.
2. (연구의 독창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타인의 연구업적을 존중하여야 하며, 투고 논문은 저자 본인의 것을 비롯한 기존의 연구 성과물과 차별되는 학문적 독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연구의 정직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과정이나 연구결과물의 출판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연구수행과정에서의 정직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2) (연구출판과정에서의 정직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기, 이중 투고, 중복 게재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연구의 공개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저자는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상의 제약이나 기타 연구와 관련된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한, 관련 자료와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해당 연구자가 연구결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2 장 연구부정행위

제 3 조 (위조) 위조라 함은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단,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가상의 자료를 생성하여 분석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논문에 밝힌 경우, 이를 위조로 보지 않는다.

제 4 조 (변조) 변조라 함은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자료 내에 왜곡된 수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믿을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제거하고, 이러한 사실을 논문에 밝힌 경우, 이를 변조로 보지 않는다.

제 5 조 (표절)

1. 표절이라 함은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 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상의 문서 등을 통해 공개된 타인의 아이디어나 견해, 표현,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인용 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자기 논문의 표현이나 연구내용, 결과 등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절로 본다(자기 표절). 그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단어 등은 인용 없이 사용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3. 국·내외 학술지 이외의 매체를 통해 공개된 자기 글이나 논문 등을 기초로 논문을 작성하였고, 이를 논문에 밝혔을 경우 인용 없이 아이디어, 표현, 연구내용, 결과 등을 사용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4.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에 해당하는 글이나 그림,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은 인용 없이 이를 기술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제 6 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란 논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일정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논문저자로 표기하지 않거나, 반대로 논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일정한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저자로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 7 조 (이중 투고) 이중 투고란 본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을 다른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을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도 이중 투고에 해당한다.

제 8 조 (중복 게재)

중복 게재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동일한 논문을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반대로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도 중복 게재에 해당한다.

제 9 조 (재투고)

1. 본 학술지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 (1)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

에 있어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2) 사용 언어의 차이는 차별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 3 장 연구부정행위의 처리절차

제 10 조 (편집위원회의 연구부정행위 조사)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해야 한다.
2.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본 연구소 소장에게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하고, 연구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제 11 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1. 편집위원장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할 경우, 본 연구소 소장은 즉각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의 안전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 5명으로 구성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심의하여,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결정한다. 의결은 의원의 2/3 이상 출석에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추가 조사를 할 수가 있으며,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다.
5.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안전이 상정되는 대로 수시로 구성, 개최한다.

제 12 조 (이의 신청)

1.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1회에 한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 신청을 받은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 신청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 내용을 수정 또 재확인할 수 있다.

제 13 조 (비밀보장의 의무)

1.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단, 허위에 의해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사람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저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비밀보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인지된 날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을 정지시킨다.

제 4 장 별 칙

제 14 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1.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이 제3조 내지 제8조에 9조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1) 해당 논문의 심사를 거부 또는 중단한다.
 - (2) 이중 투고의 경우, 해당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이중 투고 사실을 통보한다.
 - (3) 해당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시점으로부터 3년간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2.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제3조 내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다

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1) 본 연구소 홈페이지에 이러한 사실을 공지한다.
- (2) 해당 논문을 해당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 (3) 해당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시점으로부터 3년간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

제 3 조 (규칙 재·개정)

1. 이 규약은 1998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제1차 개정에 의한 새로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제2차 개정에 의한 새로운 규정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원고제출 및 작성 요강

원고제출

1. 투고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것이면서 학술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2. 제출된 논문은 익명의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거치며 평가자가 수정을 요청할 경우 원고 제출자는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심사결과 부적격 판정이 내려질 경우 또는 수정 제의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게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원고는 수시로 접수합니다. 당해 원고마감은 발행일 30일전이며 발간예정일은 당해 6월 30일, 12월 30일입니다. 게재 원고에 대해서는 내규에 따라 게재료를 납부합니다.
4. 원고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원고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백색 A4 용지에 단면으로 출력한 원고 4부를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편집위원회로 우송합니다.

보낼 곳: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우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Tel: 02) 3290-1651 / Fax: 02) 924-4365

E-mail: socialresearchku@gmail.com

Homepage: <https://socialresearch.korea.ac.kr/>

원고작성

1. 원고분량은 각주, 참고문헌, 도표, 부록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20매 (흔글 97 기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초과시 추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원고작성의 기본적인 형식요건은 다음과 같다.

글자크기: 본문 10p, 각주 9p, 인용문단 9p

줄 간격: 170%

여백 주기: 좌우 3cm, 위 2cm, 아래 1.5cm, 머리말 · 꼬리말 각 1.5cm

3.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자 표기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속에 넣어서 쓸 수 있다. 기타 외국어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 뒤의 괄호 속에 넣어 쓴다.

4. 원고는 표지, 국문요약, 영문 주제어(Key Words) 순서로 구성한다.

5. 표지에는 논문제목, 필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이메일 · 전화 · 팩스)가 명기 되어야 한다. 필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횡렬로 기재하되, 1명의 ‘제1저자’ (교신저자)를 지정하여 명시하고 다른 저자들은 ‘공동저자’로 표기한다. 감사의 말이나 연구비 수령 사실은 각주로 기재한다.

6. 국문요약은 200자 원고지 5매 또는 A4용지 1/2장 이내 분량으로 작성 한다.

7. 본문은 논문 제목을 첫머리에 기재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필자를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표시나 서술은 삼가야 한다.

8. 본문 서술의 세부적인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장 · 절 · 항 · 목의 번호는 “I”, “1”, “1)”, “(1)”의 순서로 매긴다.

2) 강조어는 ‘ ’, 인용구는 “ ”로 둘러싼다.

3) 전거는 저자명과 간행연도를 반드시 표기하고, 필요시 인용 페이지를 덧붙여 기재한다. 같은 저술을 되풀이 이용할 때도 그 방식은 같다.

구체적인 전거표기의 예는 아래와 같다.

(1) 저자명은 서술의 흐름에 따라 논문에 노출시킬 수도 있고, 괄호속에 넣어야 할 경우도 있다.

[예1] “...홍승직(1994: 23)은 ...”;

[예2] “...라 했다(홍승직, 1994: 23).”

(2) 외국인 저자명은 한글로 먼저 표기한 후 괄호 속에 원어로 표기한다.

[예1] “...밀즈(Mills, 1956)”

- (3) 2인 공동저술일 경우, 두 저자명을 가운데점으로 구분하고 항상 병기한다.

[예] “...(김용학 · 임현진, 2000)”

- (4)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일 경우, 첫 번째 전거표기에서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제시하고 그 다음부터는 “외”(et al.)를 사용한다.

[예] “...(양춘 · 김문조 · 손장권 · 박길성 · 김철규, 2001)”; “...(양춘 외, 2001)”

- (5) 출간예정인 저술은 “출간예정”(forthcoming)을, 미간행물은 “미간행”(unpublished)을 명기한다.

[예] “...(현영석, 2003 출간예정)”; “...(Lee, forthcoming)”

9. 각주는 꼭 필요한 것만 달도록 하여, 가급적 10개 내외로 최소화시킨다.

10. 참고문헌의 나열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만으로 제한한다. 먼저한 국어 문헌을 저자명의 가나다순으로 제시하고, 이어서 동양어 문헌을, 마지막으로 서양어 문헌을 알파벳 순으로 제시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 표기를 한다.

- 1) 동일 저자의 저술을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연도 순으로 나열한다.
- 2) 동일 저자의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간되어 두 편 이상일 때는 제목의 가나다 또는 알파벳 순으로 나열하되, 연도표기 뒤에 a, b, c...를 부가하여 구별하도록 한다.
- 3)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 4) 학술회의 발표문은 발표 장소와 날짜를 명기한다.
- 5) 참고문헌 기재의 구체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1) 서적

최재석. 1990. 「현대가족연구」. 일지사.

임희섭. 1987a. “한국정치체계의 위기구조와 정책정향: 1961-86.”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한국사회개발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pp. 193-218

_____. 1987b. “정보사회에서의 커뮤니케이션정책의 과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한국사회개발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pp. 125-149.

菅谷章(스가라 아기라). 1988. 「日本社會政策史論」. 東京: 日本評論社.

Berger, P. L. and H. M. Hsiao (eds.). 1988. *In Search of an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New Brunswick: Transaction.

Cannell, C. F., P. Miller and L. Oksenkerg. 1981. “Research on Interviewing Techniques.” pp. 389-437 in S. Leinhardt(ed.). *Sociological Methodology*. San Francisco: Jossey-Bass.

Amsden, A. H. 1989. *Asian's Next Giants: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인근달 역. 1990. 「아시아의 다음 거인: 한국의 후발 공업화」. 시사영어사).

(2) 학술지, 학위논문, 보고서, 인터넷문서

손장권. 2001. “정보사회의 환경과 조직변화.” 「한국사회」 4: 147-172.

Heckman, James. 1979.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47(1): 153-162.

Shin, Ho Hyun. 1990. “Shooling and Employment of Married Women in Korea.” Unpublished of Hawaii.

Krafcik, J. F. and J. D. Macduffie. 1989. “Explaining High Performance Manufacturing.” *Working Paper of IMVP*. MIT.

Kollock, P. and M. Smith. 1994. “Managing the Virtual Commons: Cooperation and Conflic in Computer Communities.”

<http://www.sscnet.ucla.edu/soc/csoc/vcommons.htm>.

(3) 번역서

휴이트(John P. Hewitt). 2001. 「자아와 사회: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사회심리학」. 윤인진 역. 학지사.

클레크 · 히긴스 · 스파이비(S. R. Clegg, W. Higgins and T. Spybey).

1994. “경제문화: 포스트 유교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공유식 · 김

혁래 · 박길성 · 유홍준 편. 「신경제사회학의 이해」. 역사비평사. pp. 195-210.

Weber, Max. 1951(1920). The Region of China translated by Hans H. Gerth. New York: Free Press.

11. 표와 그림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 1) 하나씩 별지에 작성하되 본문 속에 들어갈 자리를 지정하여 “〈표 1〉 여기에 제시”와 같이 표시한다.
- 2) 제목은 “〈표 1〉...”과 같은 형식으로 표나 그림의 위에 적는다.
- 3) 설명주는 “주”로 시작하고 출처는 “자료: ”로 시작하여, 표나 그림의 아래에 적어 놓는다. 범례도 그림의 하단에 표시한다.
- 4) 표 속에 칸과 행에는 적절한 범주명을 반드시 넣어주어야 한다.
- 5) 표의 선은 맨 위에 맨 아래 선 및 첫 번째 열의 밑선 까지만 굵도록 한다.
- 6) 그림은 색을 넣어 그려도 좋으나, 인쇄시에는 흑백으로 표현됨을 유의한다.
- 7) 그림에는 x축과 y축과 곡선 · 면적 등으로 표현된 각 부분의 명칭을 반드시 붙여주어야 한다.
- 8) 통계적 유의도는 “* $p < .05$.” “* $p < .01$.” “*** $p < .001$ ”과 같이 표기한다.

편집위원 명단

편집위원장: 송효종(고려대 사회학과)

편 집 위 원: 강동훈(선문대 사회복지학과)	김지훈(인하대 사회교육학과)
사영준(서강대 커뮤니케이션대학)	신은경(고려대 사회학과)
신인철(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윤상우(동아대 사회학과)
이해진(충북대 사회학과)	장안식(케이스탯 리서치)
정고운(경희대 사회학과)	조정우(경남대 사회학과)
황선재(충남대 사회학과)	황희영(동의대 행정학과)
	(이상 가나다순)

편 집 간 사: 이진영(고려대 사회학과)

한국사회 제25집 1호

2024년 2월 26일 · 인쇄

2024년 2월 29일 · 발행

편집 · 발행/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전화: 02-3290-1651 팩스: 02-924-4365

E-mail: lab050@korea.ac.kr

한국사회 투고: socialresearchku@gmail.com

Homepage: <https://socialresearch.korea.ac.kr/>

인쇄 · 출판/도서출판 새로문화

전화: 02-313-1431 팩스: 02-313-1434

ISSN 1229-036X

Journal of Social Research

Vol.25 No.1 / June 2024

* 이 책은 한국리서치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Institute of Social Research, Korea University
ISSN 1229-036X